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447-10



- 제주인의 성장과 가치를 창출하는 평생학습사회 구축 -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2018. 4.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 목 차 •

## 제1부 도민 중심의 평생학습

1. 계획수립의 주안점	3
2. 2017년 주요성과 및 시사점	10
3.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9
4. 추진체계 및 주요 추진과제	21
5. 계획의 범위 및 주요영역	25

## 제2부 2018년 영역별 추진과제

제1장 [유연화] 도민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39
제2장 [차별화] 학습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117
제3장 [특성화]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평생학습	199
제4장 [공고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기반 평생학습	275

## 부록

【부록 1】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주요 계획	303
【부록 2】 관련 법령	
■ 참고 1) 평생교육법	364
■ 참고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388
■ 참고 3)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397
■ 참고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400



## **제1부 도민 중심의 평생학습**

- 1. 계획 수립의 주안점**
- 2. 2017년 주요성과 및 시사점**
- 3.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4. 추진체계 및 주요 추진과제**
- 5. 계획의 범위 및 주요영역**



# 1. 계획 수립의 주안점

## 1-1.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 방향 급전환

- 4차산업혁명은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독일의 산학연구 전문가들이 제시한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통해 모든 생산과정을 연결하고 소비자와 소통을 통한 제품의 개발, 소비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혁신적 움직임을 의미함
  - WEF(2016)는 4차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주요 변화요인(drivers of changes)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업무환경 및 방식의 변화’, ‘신흥시장에서 중산층 등장’, ‘기후변화’ 등이며, 기술적 측면에서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지목
- 4차산업혁명을 야기하는 과학기술적 주요 변화요인이 미래사회의 고용구조인 일자리 지형 변화는 물론 직무역량 또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와 관련, 2020년 업무수행시 필요한 핵심스킬의 비중은 ‘능력(ability)’에서는 육체적 능력(4%)보다 인지적 능력(15%)이 더 중요하고, ‘기초스킬(basic skills)’에서는 콘텐츠 스킬(10%)보다는 프로세스 스킬(18%)의 중요성이 더 클 것이며, ‘복합기능적 스킬(cross-functional skills)’에서는 기술적 스킬(12%), 자원관리 스킬(13%)보다는 복잡한 문제의 해결능력(36%), 사회적 스킬(19%)의 중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WEF, 2016)

<표 1> 4차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업무관련 핵심기술

능력(abilities)	기초스킬(basic skills)
<p style="text-align: center;"><b>&lt;인지능력&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li> <li>- 창의력(creativity)</li> <li>- 논리적 추론(logical reasoning)</li> <li>- 문제 민감도(problem sensitivity)</li> <li>- 수학적 추론(mathematical reasoning)</li> <li>- 심상(visualization)</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콘텐츠 기술(contents skills)&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li> <li>- 구두 표현력(oral expression)</li> <li>- 독해력(reading comprehension)</li> <li>- 문장 표현력(written expression)</li> <li>- ICT 활용 능력(ICT literacy)</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체적 능력(physical abilities)&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힘(physical strength)</li> <li>- 육체적 민첩성과 정밀도 (manual dexterity and precision)</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프로세스 기술(process skills)&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li> <li>-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li> <li>- 자기와 타인에 대한 관찰 (monitoring self and others)</li> </ul>

다기능적 스킬(cross-functional skills)	
<p style="text-align: center;"><b>&lt;사회적 기술(social skills)&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과 협력(coordinating with others)</li> <li>-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li> <li>- 협상(negotiation)</li> <li>- 설득(persuasion)</li> <li>- 서비스 지향성(service orientation)</li> <li>- 교육과 훈련(training and teaching others)</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자원관리 기술(resource management skills)&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적 자원의 관리 (management of financial resources)</li> <li>- 물적자원의 관리 (management of material resources)</li> <li>- 사람관리(people management)</li> <li>- 시간관리(time management)</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시스템 기술(systems skills)&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단과 결정(judgement and decision-making)</li> <li>- 시스템 분석(systems analysis)</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전문적 기술(technical skills)&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비의 유지와 수리 (equipment maintenance and repair)</li> <li>- 장비 운영과 통제(equipment operation and control)</li> <li>- 프로그래밍(programming)</li> <li>- 품질통제(quality control)</li> <li>- 기술 및 사용자 경험 디자인 (technology and user experience design)</li> <li>- 문제해결(trouble shooting)</li> </ul>
<p><b>&lt;복잡한 문제의 해결 기술(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잡한 문제의 해결(complex problem solving)</li> </ul>	

\* 출처 : 김봄이(2017. 12. 22),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비즈니스 분야 핵심역량 분석 및 인재육성 방안”, 「3차 미래인재포럼」, 주제발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69.

- 특히, 지역현안이자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청년층 역할이 급부상 중이며, 신성장 동력 육성 및 산업변화에 맞춘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함. 따라서 지역단위의 평생 학습에서는 주민들이 재학습을 통해 이를 생활 또는 일자리와 연계해 나가는 실질적 학습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를, 단기적으로는 현재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 지역의 주요산업에 대하여 끊임없이 재교육을 통한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며, 평생 직업능력개발교육 차원에서 변화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 정보화 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해 온 청년층 실업 해소대책은 주로 단기적 일자리 확대로 일부 성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청년층 고용대책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는 형편임. 장수사회의 시작세대인 현재의 청년층 세대부터가 가장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절실하며,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지식의 생산자를 양성해 나가야 함. 이는 국가와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성장·발전시키는 산업경제정책과 연계, 동시적 추진이 필요함
  - 이에 제주지역의 학습과 일자리 연계는 노동 및 자본의 양적 투입이 아닌 인적자원의 질적 투입에 의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강조됨

## 1-2. 사회투자 차원의 지역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통합적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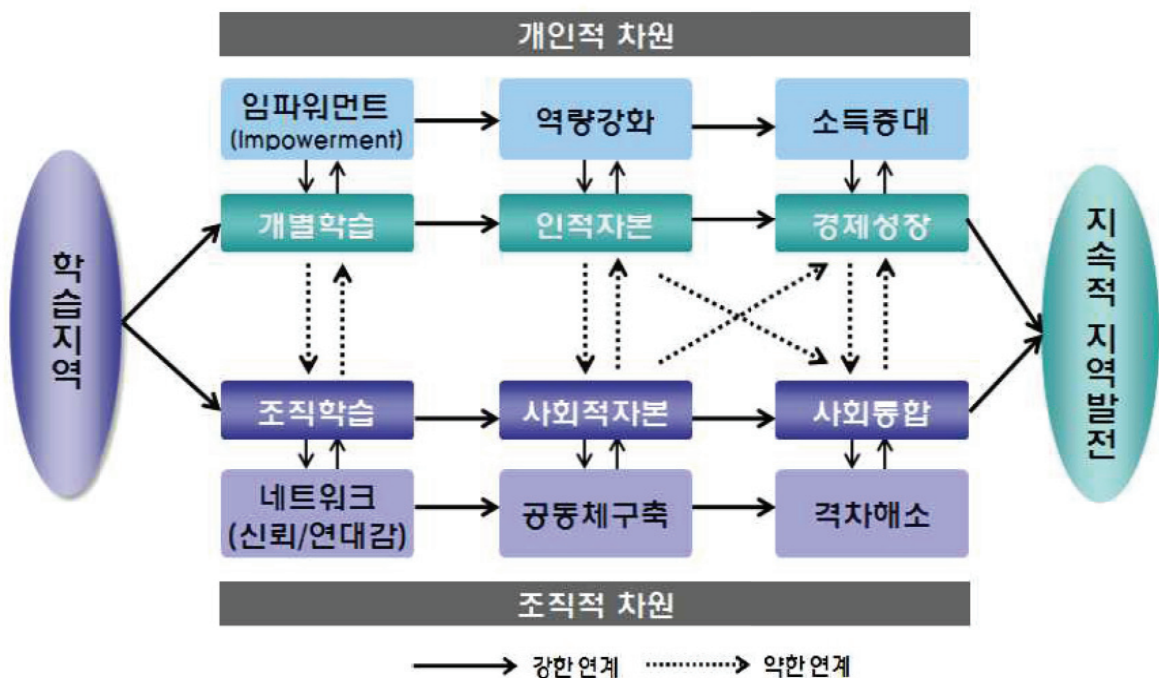
-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는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사회투자국가는 경제 뿐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 문화, 교육, 산업, 고용, 복지, 여성 등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가능하다는 철학임
  -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빛을 보는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 과 사회투자 정책으로, 지난 참여정부 때 사회투자정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핵심정책으로 채택하면서 장기국가재정계획인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 과 연동
  - 종래 참여정부의 멘토로 불리는 기든스(Giddens, 1998)의 제3의길(The third way)에서 변화하는 세계에 사회민주주의를 적응시키고자 하는 미래복지국가의 청사진으로서의 사회투자국가에 이념적 기반



[그림 1] 사회투자국가와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투자

- 사회투자 정책의 핵심은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투자라는 적극적 정책으로 인적 자원개발의 체계적 재구축을 포함, 새로운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진흥이 요구
  - 사회투자국가에서 복지지출은 명확한 수익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경제 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성을 강조함
  - 사회투자의 핵심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며, 시민권을 ‘권리’ 로 간주한 전통적 복지국가와 달리 사회투자국가론에서 시민의 권리는 의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결과의 평등’ 보다 ‘기회의 평등’ 을 중시함

- 더불어 「평생교육법」 개정(2007. 12월)과 더불어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강화되었으며, 2002년부터 추진되는 기초 중심의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운영」에 따른 시너지 확보, 평생교육기관들간의 정책네트워크 구성, 협력적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차별화된 평생교육 확립이 가능해졌음
  - 특히, 광역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사회 구현 시스템 구축은 평생 학습 생활화와 개인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역의 발전과 학습공동체 형성, 평생 교육 활성화 위한 참여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
- 평생교육은 지역주민의 ‘지적능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충족되어야 함. 이는 지식기반 산업 체제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제논리의 영역 속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핵심과제로 부상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학습도구와 조직화된 틀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속한 사회변동에 대한 적응과 나아가서는 지역성의 확립에 동참할 수 있는 광역 차원의 평생교육체계를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는 것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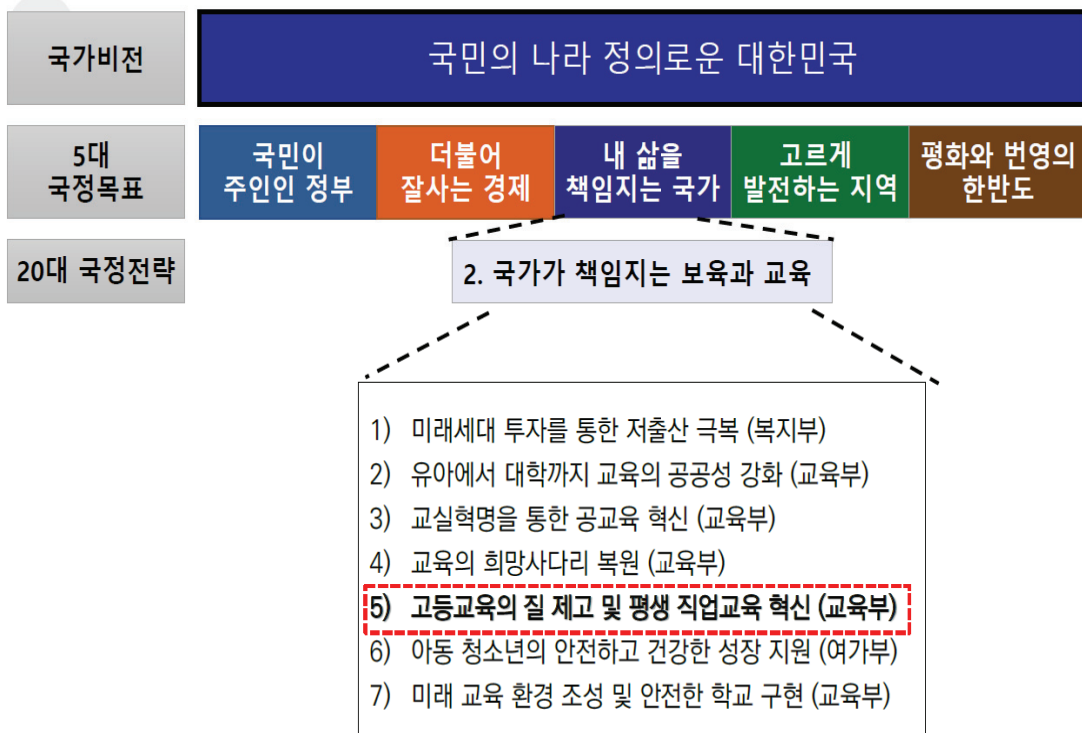


\* 출처 : 권인탁(2014),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광역수준 지역평생교육체제화의 분석과 발전과제”, 「교육종합연구」, 제12권 1호, 교육종합연구소, p.142

[그림 2] 광역적 평생학습의 발전모형

### 1-3. 미래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 학습기반으로서의 평생교육 추진

- 미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며,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자를 양성 및 활용해 나가야 함. 특히 창의융합적 사고를 가진 학습자 양성을 위해 의사소통, 협력, 주도성, 도전 의식, 적응력, 리더십 등이 ‘사회정서학습’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kills)으로 간주,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는 바, 이에 지역평생교육 패러다임의 능동적·대응적 변화가 요구됨
- 이처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으로 인해 종래의 “학교교육 중심 패러다임”에서 “평생학습 중심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 그리하여 일터는 “학습조직”을, 지방정부는 “학습도시”를, 사회는 “학습사회”를, 경제는 “학습경제”를, 문화는 “학습문화”를, 그리고 국가는 “학습강국”의 건설을 본격 추진하면서 사회 각 부문이 “학습활동”을 적극 강조하고 있음
-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교육내용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으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으로 강조, 제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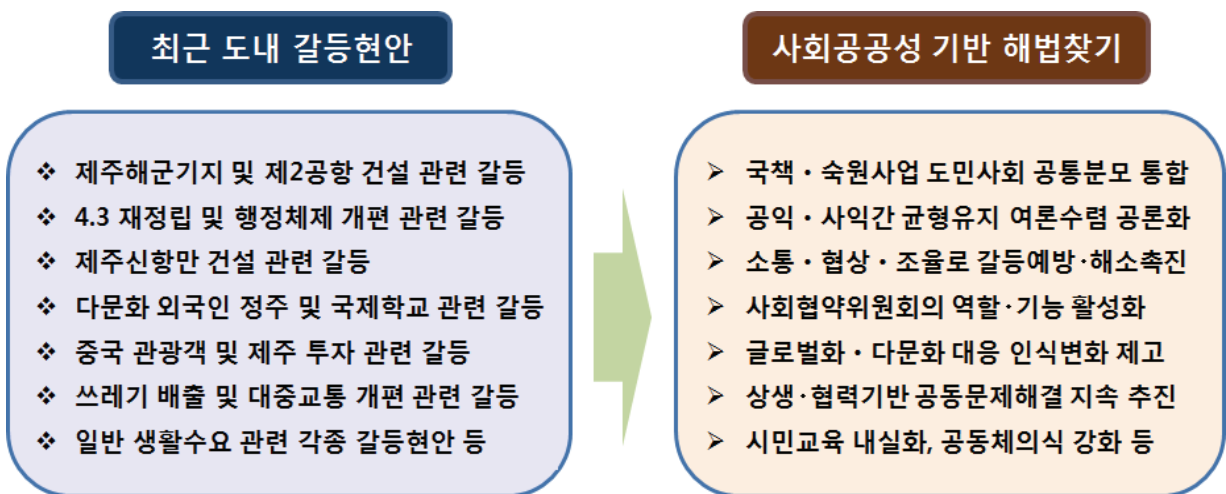
[그림 3]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교육내용

- 또한 현대사회의 ‘신(新)유목민적 특성’ 이 강해짐에 따라 시·공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으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경력·역량 중심의 평생직업으로 확산되고 있음. 최근 제주지역은 신규인구 유입 및 경기불황에 따른 창업과 폐업의 증가, 기업 유치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증대 등 개인 차원을 넘어 지역 차원에서도 유연하고 개방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증대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에 이어 지식기반형 산업으로의 전환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국가와 지역 모두 새로운 학습정책의 수요 및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 따라서 일(활동)과 학습의 연계를 통한 미래창조적 성장동력 확보 및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학습생태계 조성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 성패를 좌우하게 됨
- 지속가능발전(ESSD)이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 환경의 보전, 문화의 정립 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에서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역량을 개발하자는 것이며, 이로써 지역평생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성장과 발전시스템 및 지식사회형 체계구축과 서로 긴밀히 연계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평생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더불어 국가적, 지역적으로는 국민(주민)의 정보공유, 지식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을 널리 아우르는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함

#### 1-4. 공존·공생 기반 제주의 가치 실현과 사회공공성 강화

- 이미 유네스코가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을 주창한 이래 평생학습은 개인성장을 넘어 사회통합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 간주되고 있음
  - 현대사회는 다양한 신념과 의견, 가치, 경제와 교육수준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배려와 나눔, 일치를 중요한 덕목으로 생활해 왔음, 특히 전통의 두레, 향약은 물론 특히 제주지역의 미덕인 아름다운 전통인 ‘수눌음’ 은 사회통합을 위한 기층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처럼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소통과 화합은 국민·주민 모두가 차별과 소외 없는 사회로 함께 갈 수 있는 공통분모라 할 수 있음
- 유럽연합(EU)의 평생학습은 ‘사회통합’ 과 함께 ‘학습복지’ 를 추구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초기학습의 강조, 국가자격체계 설정, 소외계층의 학습 지원, 모든 학습결과의 호환(互換)시스템 구축, 평생학습 재정 확충,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에 역점을 기울여 왔음

- 평균수명 100세의 ‘호모 헨드레드’ 시대에서 한국은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확실시되며, 이에 따른 고령인구의 재교육과 사회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별히 장수(長壽)지역인 제주지역은 장년층, 고령층의 건강하고 유익한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와 여유로운 개인적 삶의 영유를 위한 새로운 지식·정보의 습득과 학습기회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 인생 100세 시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이 아니라 평생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것’ 으로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시대 변화가 빨라진 만큼 직업·직종의 트렌드도 빠르게 변해가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습과정, 즉 평생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
- 평생교육은 21세기에 지역, 국가, 네트워크 사회의 ‘범용(汎用)’ 교육시스템 모델인 지역교육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의 ‘잃어버린 교육기반’ (lost education foundation)을 복원하자는 지역사회 교육의 부활적 성격을 지님. 따라서 과거 지역은 사람이 머물고 떠나는 공간적 개념으로만 이해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공동체로서 직접적인 발전의 주체이자 교류의 주체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잃어버린 공동체’ (lost community)를 복원, 재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평생교육은 제주 지역사회의 사회통합과 갈등구조 해소를 위한 매개체로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과 자생력 확보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제주지역 평생교육이 요구 받는 사회공공성의 맥락 : 문제인식과 해법찾기 예시

## 2. 2017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

### 2-1. 주요 성과

- 다음은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해 보았음. 하지만 시기적으로 사업 실적 및 정산 등 일정과 차이가 있어 실제 집행예산과 운영회수, 참여인원(중복 가능)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제주지역에서 이뤄진 평생학습 지원 및 운영실태의 집계를 통해 잠정적으로나마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자 함

#### (1)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에 따른 지역 평생학습의 인프라 및 저변 확대

-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과 함께 평생교육(학습)에 대한 정책적 접근 강화, 해당 세부 사업별 인프라 기반 조성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평생학습 참여 기회 및 다양성 확대 주력
  -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사업 확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정례적 프로그램들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음. 이러한 영향으로 지역내 평생학습 유관기관들의 역할 증대와 함께 노하우 확보 등의 초석을 마련
-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 주요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 성인친화형 열린대학 구축 및 평생학습 역할강화 차원의 유림대학, 미술관 대학, 박물관대학, 환경대학, 농업마이스터대학,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단위: 개, 백만원, 명)

구 분	계 획		(추정)실적			비고
	사업량	소요예산	운영 강좌 수	집행금액	참여인원	
- 도민 친화형 학습 체계 구축 및 평생학습 역할 강화	32	2,147	185	1,653	5,933	

- 지역의 대학교를 활용해서 지식창조형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해 풍력 전문 인력 양성 지원, 현장기반형 에너지 융복합 전문기업 인력 양성 사업,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실시

(단위: 개, 백만원, 명)

구 분	계 획		(추정)실적			비고
	사업량	소요예산	운영 강좌수	집행금액	참여인원	
- 대학과 협업을 통한 지식창조형 프로그램 운영	5	2,855	9	2,855	320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제주형 평생교육 브랜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해녀문화 아카데미,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 꽃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제주올레아카데미 등 실시

(단위: 개, 백만원, 명)

구 분	계 획		(추정)실적			비고
	사업량	소요예산	운영 강좌수	집행금액	참여인원	
- 제주형 평생교육 브랜드 구축 및 운영	10	775	23	778	1,025	

(2)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서비스 향상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과 함께 평생학습 소외계층 대상으로 서비스 확장에 주력
  - 2개 행정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평생학습관에서는 도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홍보 및 박람회 운영과 함께,
  - 문해교육,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을 비롯하여 청소년층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확대시켜 나감
-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 주요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 ON-OFF라인 연계의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온라인상의 평생교육 정보 시스템 운영을 비롯하여 행복학습센터 네트워크 구축, 전국평생학습박람회 합동 홍보체험관 운영,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
  -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초석 마련을 위해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사업,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청소년 정서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단위: 개, 백만원, 명)

구 분	계 획		(추정)실적			비고
	사업량	소요예산	운영 강좌수	집행금액	참여인원	
-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성장 지원	63	5,767	2,871	6,331	168,227	

- 제주도민들의 평생학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코딩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지역 정보화교육 강사 파견, 대학전공 탐색하기,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단위: 개, 백만원, 명)

구 분	계 획		(추정)실적			비고
	사업량	소요예산	운영 강좌수	집행금액	참여인원	
- 평생학습 서비스 향상	16	1,506	908	1,986	78,005	

(3)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관련 세대별, 대상별, 소외계층 등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 직종별, 직능별 종사자들의 현장 보수교육 및 학습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학습에 따른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

○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 주요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에 따라 마을자원 전문가 양성,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여성농업인 제주농업발전 교육, 예비교사 다문화 이해교육, 수산기술 전문교육, 카지노 종사원 윤리의식 강화 교육 등 운영

(단위: 개, 백만원, 명)

구 분	계 획		(추정)실적			비고
	사업량	소요예산	운영 강좌수	집행금액	참여인원	
-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101	7,356	2,592	7,598	160,296	

- 소외계층 및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확장된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북한이탈주민 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 고령자 정보화 교육, 다문화가정 제주 바로 알기, 발달 장애인 예술교육, 장애인 정보화 교육, 경로당 순회교육 등 운영

(단위: 개, 백만원, 명)

구 분	계 획		(추정)실적			비고
	사업량	소요예산	운영 강좌수	집행금액	참여인원	
- 소외계층 및 경력단절 극복 지원	47	3,462	4,803	1,995	60,247	

- 도민 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평생학습으로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질병 방역교육, 소통프로그램 등 운영

(단위: 개, 백만원, 명)

구 분	계 획		(추정)실적			비고
	사업량	소요예산	운영 강좌수	집행금액	참여인원	
-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평생학습	13	1,172	422	844	22,479	

- 제주지역내 틈새와 특화를 위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으로 간판디자인 학교, 청년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제주형인력양성과정,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승마아카데미, 쓰레기 줄이기 강사 교육 등 운영

(단위: 개, 백만원, 명)

구 분	계 획		(추정)실적			비고
	사업량	소요예산	운영 강좌수	집행금액	참여인원	
- 제주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39	15,963	437	15,376	16,080	

**(4)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에 따른 민주시민으로서 역량 강화 및 지역공동체 조성**

-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인해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상생·협력하고자 하는 도민사회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수요 맞춤형으로 이와 연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시
  - 최근, 지역내 인구 급증 및 세방화(Glocalization)에 따른 영향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지역사회(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율적, 자생적 학습 참여 및 공동체 활동이 증가 추세
-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 주요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에 따라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초등학력 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학교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단위: 개, 백만원, 명)

구 분	계 획		(추정)실적			비고
	사업량	소요예산	운영 강좌수	집행금액	참여인원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및 민주시민의 역량 강화	16	843	795	735	21,489	

- 지역사회 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지역 주민의 인문·외국어 역량 강화로서 삼양동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탐라의 얼 아카데미, 탐라문화 아카데미, 맞춤형 도민 외국어 교육, 도민 중국어아카데미 등 운영

(단위: 개, 백만원, 명)

구 분	계 획		(추정)실적			비고
	사업량	소요예산	운영 강좌수	집행금액	참여인원	
- 도민 수요형 인문, 외국어 프로그램 지원	13	737	401	822	19,943	

- 마을학습문화 조성 및 학습경제 공동체 활성화로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미래후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교육, 농촌지도자 교육, 농어촌 민박업체 교육,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등 운영

(단위: 개, 백만원, 명)

구 분	계 획		(추정)실적			비고
	사업량	소요예산	운영 강좌수	집행금액	참여인원	
- 학습문화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24	1,364	937	1,212	26,229	

## 2-2. 시사점

-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를 개략적으로 추정한 결과, 총 379개 사업에 대하여 14,383개의 세부강좌 및 단위 사업(학습 관련 행사 포함)이 운영되었고 약 58만 여명(중복인원 포함) 제주도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4개 영역별로도 평생교육 운영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 맞는 주제를 통해 도민 역량강화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음
  - 특히, 지역의 평생교육의 인프라 측면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인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와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2개 영역의 추진은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단위: 개, 백만원, 명)

구 분	계 획		(추정)성과		
	단위사업	소요예산	운영강좌수	참여인원	집행금액
I.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47	5,777	217	7,278	5,286
II.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계 구축	79	7,273	3,779	246,232	8,317
III.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 학습 지원	200	27,953	8,254	259,102	25,813
IV.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53	2,944	2,133	67,661	2,769
<b>합 계</b>	<b>379</b>	<b>43,947</b>	<b>14,383</b>	<b>580,273</b>	<b>42,185</b>

- 이에 각 영역별로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를 위한 추진과제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고정적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인프라 확보 및 저변 확대의 지속화
  -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계 구축 관련 추진과제에서는 소수 사업이지만 온라인 정보 서비스 제공과 함께 도민들이 지역 어디서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였음. 더불어 평생학습 홍보를 통해 미래의 학습고객인 청소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도 실시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추진과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학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이와 더불어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수요 충족과 함께 전문역량 강화에 기여
  -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추진과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인문교양 및 시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지역 공동체와 상생·협력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 2-3. 고려사항

- 반면,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시행계획」에서는 제주도민의 인적·사회적 자본의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으로서의 평생학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2017년의 성과를 토대로 사회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1) 평생학습 도민참여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

- 2017년 제주지역 도민 평생학습 전체 참여율은 전국(34.4%)보다 낮은 27.8%로 나타났으며, 남자(23.4%)가 여자(32.4%)보다 9.0%p 낮았음. 연령별로는 45~54세(34.0%) 및 25~34세(33.3%)에서 비교적 높았으며, 55세 이상부터 참여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음
  - 특히, 소규모 영세자영업체, 다문화가족 등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계층 및 생활 권역별로도 여건 격차가 있어 학습편차가 큰 실정임
    -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47.1%), 월 평균 가구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34.3%)의 집단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았음
    - ▶ 고용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 정규직(39.4%)이 임금근로자 비정규직(26.7%) 대비 12.7%p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시간형태별로는 전일제 근로자(38.3%)가 시간제 근로자(25.5%) 대비 12.8%p 높았음
    - ▶ 직장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0명~99명에서 참여율이 가장 참여율이 높았던 반면, 종업원 수가 10명 이하인 그룹의 참여율은 16.8%로 타 그룹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났음
    - ▶ 평생학습(비형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①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이 7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②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24.2%)임

\* 「2017년 제주지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2017. 12)

### (2)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수요 대응력 강화

- 지역내 평생교육 유관기관들이 소수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비정기적, 한시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따라서 아직도 현실적으로 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운영상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즉, 평생교육 유관기관의 경우 비정기적, 부수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미약하며, 따라서 현장 협력체계 미구축 및 온라인상 평생교육정보망 연계성 부족으로 상호 교류 및 지역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에 제약이 발생
- 아울러 현행 「평생교육법」상 지자체·교육청 간의 역할분담 및 책임한계가 불명확하여 지역평생교육 추진주체는 물론 역할·책임 등에 대한 혼선 발생
  - 중앙정부 및 타시·도와 지속적 협의 및 공조를 통해 법령 개정 및 광역·기초에 부합하는 기능 및 역할 협의로 지속적 조정·보완이 필요
- 향후 주민학습권 확대 및 지역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관 기능 및 역할 확대 방안이 필요함
  - 지역의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도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제공. 이를 통해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의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도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

### (3) 지속적·자생적 기반의 평생학습 단체(동아리) 활동 활성화 독려

- 도민들이 평생학습 참여를 지속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일궈 나가는 학습공동체 문화 조성이 중요. 이를 통해 자체적 학습과 함께 도민들의 학습 후 활동으로 지역사회내 사회적자본 확충의 원동력으로 활용
    - 현장수요형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및 ‘재능기부’, ‘배달강좌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 향후에도 도민들의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원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 동아리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학습과 지역사회 봉사(참여)를 추구하는 단위로서 각 분야에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음
      - ▶ 더불어 긴 시간동안 활동한 조직은 지역내 정착 비율도 높은 실정임. 조사한 평생학습동아리 중 2010년 이전부터 활동한 학습동아리 비율은 38.6%임. 또한 학습동아리 활동 시에 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종합점유율 결과로는, ‘잘 몰라서’(39.5%)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생력 확보’(18.4%), ‘보고 및 정산 절차 복잡해서’(14.2%) 순임
- \* 「2016년 제주지역 평생학습 동아리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2016. 12)

#### (4) 4차산업혁명 맞춤형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실시

- 4차산업혁명시대에 STEAM' 으로 표현되는 “융합인재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 수학(Mathematics)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학습자가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 제시, 학습자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론을 찾아가는 창의적 설계,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성공 경험을 그 준거로 하고 있음
- 실용적 평생교육을 통한 창조적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역량기반사회를 구축하고, 일-학습-역량의 연계와 통합을 통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고용(사회참여 포함)-학습복지의 연계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확충 및 복지서비스 확대 효과를 동시에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직업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 전국(14.1%), 제주(15.6%)
  - ▶ 자격증 취득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 전국(15.1%), 제주(15.6%)
  - ▶ 평생학습 참여목적은 직업능력향상교육(전국 15.4%, 제주 15.6%),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전국 13.8%, 제주 7.7%), 인문교양교육(전국 7.4%, 제주 9.3%) 순
  - \* 비형식교육 부문, 2017년 통계와 자체 지역 조사결과 대비
- 또한 4차산업혁명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와 연계한 새로운 교수·학습 모델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일선의 평생학습 종사자들이 변화를 숙지하고 기술의 발전과 연계한 융복합형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 IT기술 발전에 따라 학습 수요자들이 지식(정보) 취득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공급자 또한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과정을 선보이고 있음. 하지만 학습자들은 기술발전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학습기회 접근에 대한 요구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학습방법론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함
  - 더불어 제주지역은 전국 대비 정보접근 후 학습참여가 높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평생학습 참여 목적의 정보 접근율 : 전국(40.1%), 제주(43.8%)
    - ▶ 정보 접근 후 평생학습 참여율 : 전국(26.7%), 제주(32.1%)
    - ▶ 인터넷 강의 또는 컴퓨터 이용 학습매체 및 방법 선호도 : 전국(36.9%), 제주(27.4%)

### (5) 지역내 다양한 교육자원 활용을 통한 평생교육 질적 성장 유인

- 지역사회와 상생·통합 지향형의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2의 교육기회'(Second Chance)의 제공과 함께 이를 통한 사회통합 및 상생·협력 증진에 지속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함
  - 이에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기회 확대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운영 및 저학력 성인 대상 성인문해교육 및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과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하지만 향후 이와 관련하여 체계성 및 선진성을 토대로 확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유럽연합(EU)의 평생학습은 '사회통합' 과 함께 '학습복지' 를 추구하는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학습의 강조, 국가자격체계 설정, 소외계층의 학습지원, 모든 학습결과의 호환(互換)시스템 구축에 주력해 왔음
- 더불어 성인 및 재직자 재교육 수요 충족도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전문교육기관인 대학교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도민들의 사회변화 대응력 향상 및 전문 역량 강화,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사회통합 및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지역내 교육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시너지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 3.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3-1. 비전 및 목표

비 전	제주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
-----	-------------------------------

목 표	제주인의 성장과 가치를 창출하는 평생학습사회 구축
-----	-----------------------------

추진 전략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ople) 학습자(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li> <li>▶ (Participation)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확대</li> <li>▶ (Prosperity) 개인과 제주사회의 동반 번영 지원</li> <li>▶ (Partnership) 기관 및 제도 간 연계·협력 강화</li> </ul>
------------	---

주요 과제	<p><b>[유연화]</b> 도민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도민 평생학습 참여 가능성 확대</li> <li>▶ 소외계층 평생학습 서비스 강화</li> </ul>	<p><b>[차별화]</b> 학습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평생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li> <li>▶ 산업맞춤형 평생교육 확대</li> <li>▶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li> </ul>
	<p><b>[특성화]</b>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풀뿌리 평생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뿌리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확산</li> <li>▶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li> </ul>	<p><b>[공고화]</b>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기반 평생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 기반 강화</li> <li>▶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li> </ul>

### 3-2. 추진전략

❖ 4P전략을 향후 5년간 평생교육정책의 계획수립 및 설계, 추진, 환류의 모든 과정에 제주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내실있게 반영

#### ① (People) 학습자(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과거** 프로그램 공급자와 수요자의 명확한 분리, 학습자의 수동적 학습
- **미래** 학습자 교육수요가 다양화되고, 학습과정 설계, 결과활용 및 지식창출에 학습자가 과거에 비해 폭넓게 참여

→ 평생학습 정책 패러다임을 프로그램→“사람(학습자)”으로 전환

#### ② (Participation)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확대

- **과거** 자발적 동기 부족으로 일회성 학습 다수, 참여의 지속성 부족
- **미래** 관심 있는 분야에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에 체계적 학습 실시

→ 학습의 지속성, 자발성 등을 함양하기 위한 정책수단 마련

#### ③ (Prosperity) 개인과 사회의 동반 번영 지원

- **과거** 평생교육을 여가 선용, 노후 생활 및 복지 관점에서 접근
- **미래** 개인의 사회변화 대응, 역량 개발 수단으로 평생학습을 활용하여, 양질의 인적자원 축적,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관점으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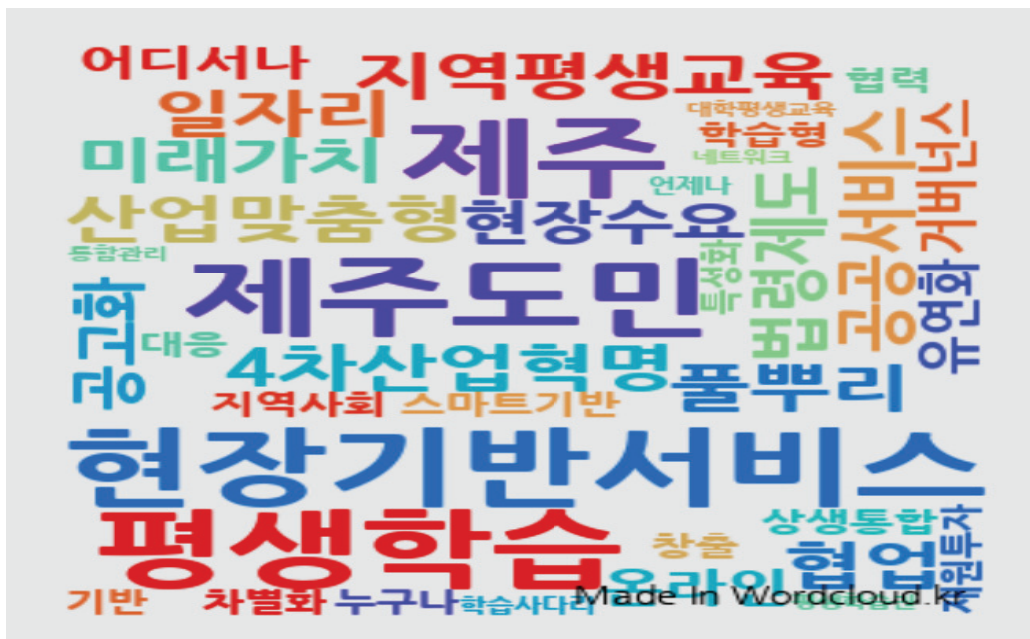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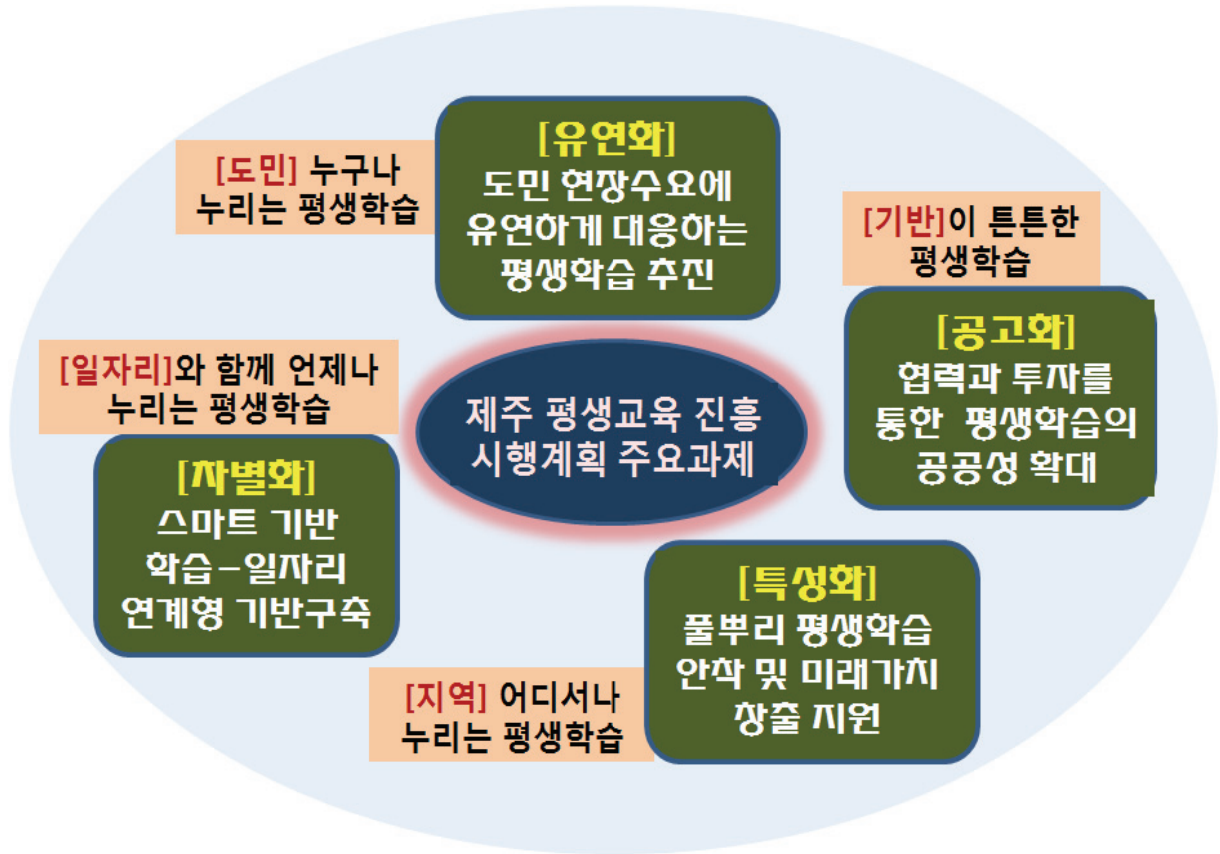
#### ④ (Partnership) 기관 및 제도 간 연계·협력 강화

- **과거** 평생교육기관별 독립적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제도간 장벽
- **미래** 중앙-지방간, 지자체간,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습자 수요에 대응, 제도 간 연계를 통해 학습-능력-자격 간 상호 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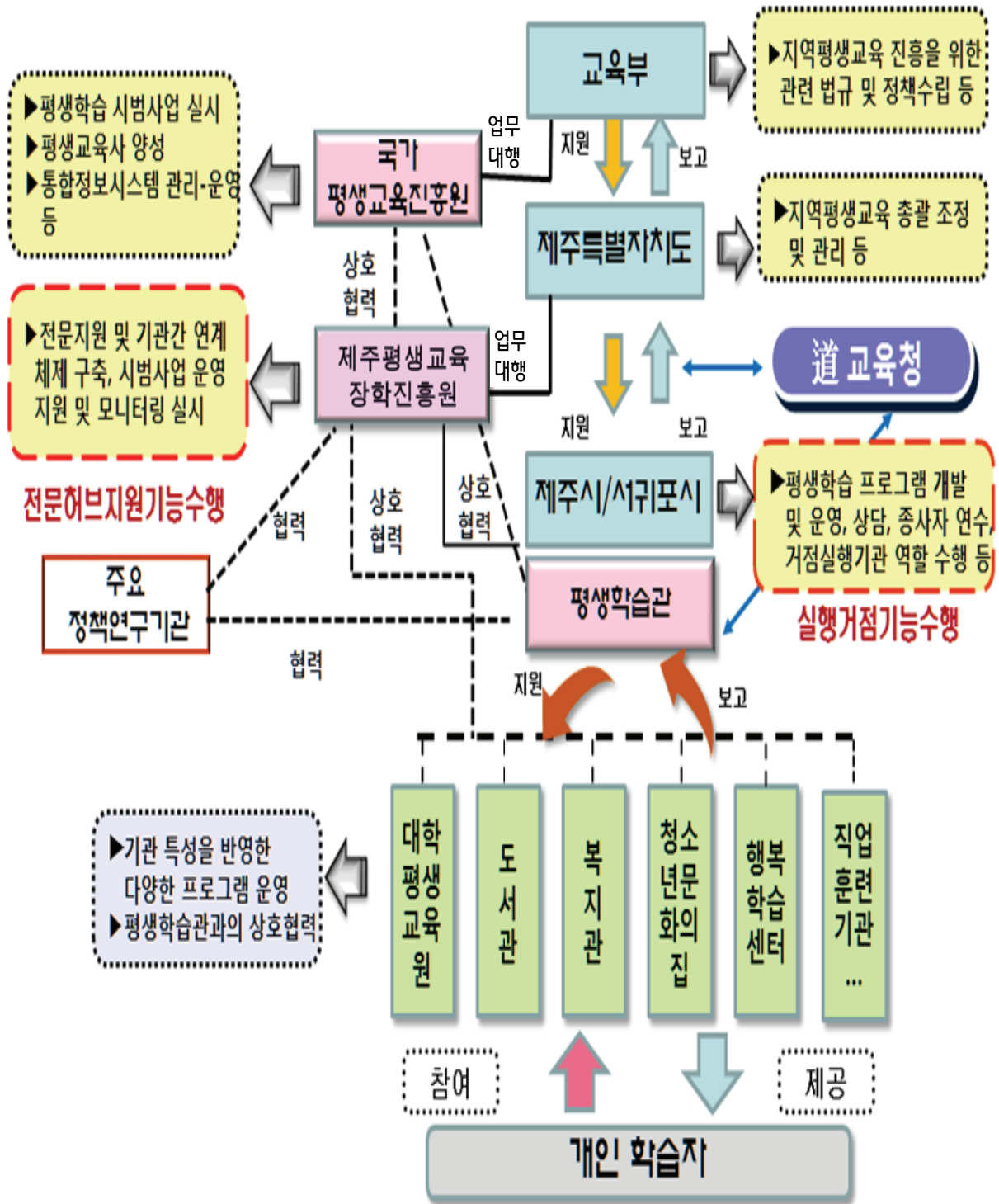
→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제도간 연계를 전제로 정책 설계·추진

## 4. 추진체계 및 주요 추진과제

### 4-1. 추진중점 및 키워드(Word Cloud)



### 4-2. 추진체계



### 4-3. 추진과제 구성체계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세부사업내용	
I. [유연화] 도민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① 전도민 평생학습 참여 가능성 확대	가) 재직자 등 성인의 자발적 평생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대상별 평생학습 운영</li> <li>■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사업</li> <li>■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li> </ul>	
		나) 학습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맞춤형 학습지원</li> <li>■ 고졸 취업자 후진학, 경력개발 선지원</li> <li>■ 맞춤형 다문화 및 이주민 대상 학습 지원</li> </ul>	
	② 소외계층 평생학습 서비스 강화	가) 문해 및 학력보완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하는 모든 도민에 생활 및 문해교육 지원 확대</li> <li>■ 비정규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보육 지원 확대</li> <li>■ 건강가정지원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li> </ul>	
		나) 소외계층 실질적 평생학습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추진체계 구축</li> <li>■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강화</li> <li>■ 취약계층 아동 지원 활성화</li> </ul>	
	II. [차별화] 학습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①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가) 4차산업혁명 대비 온라인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온라인 서비스망 구축 및 운영</li> <li>■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li> <li>■ 정보화 교육 확대</li> </ul>
			나) 개인맞춤형 교육을 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구축</li> <li>■ 개인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능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li> <li>■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제공</li> </ul>
② 산업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가) 지역산업 연계 및 특화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산업 특화 인력양성 사업 추진</li> <li>■ 직업 재활교육 확대 실시</li> <li>■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li> </ul>	
		가) 대학등 성인친화적 교육 제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맞춤형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li> <li>■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활성화</li> <li>■ 청년 고용창출 및 역량강화 지원</li> </ul>	
③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나) 대학의 직업 평생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li> <li>■ 진로 체험기회 제공 확산</li> <li>■ 취업 희망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li> </ul>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세부사업내용
<b>III.</b> <b>[특성화]</b> <b>미래</b> <b>가치를</b> <b>창출하는</b> <b>풀뿌리</b> <b>평생학습</b>	<b>1</b> 지역 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축적	가) 지역 단위 평생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추진</li> <li>■ 읍·면·동별 평생학습 확대 등 주민의 접근성 · 효능감 제고</li> <li>■ 평생학습기관(단체) 특화교육 운영 활성화</li> </ul>
		나) 지역의 자생적 평생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li> <li>■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전문성 제고 지원</li> </ul>
	<b>2</b>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지원	가) 지역 단위 시민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시민대학(원) 운영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li> <li>■ 수요자 맞춤형 인문강좌, 시민교육, 성·안전 교육 확대</li> </ul>
		나) 지역사회를 살리는 평생교육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미래 리더 및 지도자 양성 지원</li> <li>■ 지역의 특화 인재, 전승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li> </ul>
<b>IV.</b> <b>[공고화]</b> <b>지역과</b> <b>상생하는</b> <b>협력기반</b> <b>평생학습</b>	<b>1</b> 평생학습 기반 강화	가) 지역협력 평생학습 기반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관련 대외 홍보활동 확대</li> <li>■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원조직 운영</li> <li>■ 평생교육기관(단체)간 협력 사업 활성화</li> </ul>
		나) 평생학습 국제협력 및 글로벌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단체)와의 평생교육 협력 확대</li> <li>■ 국제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 사업 운영</li> <li>■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다양화</li> </ul>
	<b>2</b>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가) 지역공동체를 위한 평생학습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마을)과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li> <li>■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ul>
		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능·교육기부 등을 활용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li> <li>■ 자발적 학습동아리 육성 및 우수 학습모임 성장 지원</li> </ul>

## 5. 계획의 범위 및 주요 영역

### 5-1. 계획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2018년(1개년 시행계획 중심)

#### 2)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3) 내용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개 교육지원청(제주시,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진흥 관련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업의 경우, 지역연계 특성을 가진 사업에 한정함

### 5-2. 계획의 주요 영역 및 과제

#### 1) 사업 총괄현황

구 분	단위사업(개)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	교육청	소계
I. [유연화] 도민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34	37	39	9	119
II. [차별화] 학습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97	7	14	-	118
III. [특성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풀뿌리 평생학습	78	18	21	1	118
IV. [공고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기반 평생학습	25	4	4	-	33
합 계	234	66	78	10	388

#### 2) 사업비 총괄현황

구 분	소요예산(백만원)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소 계
I. [유연화] 도민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2,236	7,517	4,540	1,131	15,424
II. [차별화] 학습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16,136	474	678	-	17,288
III. [특성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풀뿌리 평생학습	5,840	1,613	735	20	8,208
IV. [공고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기반 평생학습	4,962	120	358	-	5,440
합 계	29,174	9,724	6,311	1,151	46,360

### 3) 세부 영역별 과제 현황

구 분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 (천원)		
I. [유연화] 도민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b>1] 전도민 평생학습 참여 가능성 확대</b>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1.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25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2. 노인대학원 운영	75,000	
		노인장애인복지과	3. 노인대학원 강의 지원	11,000	
		노인장애인복지과	4.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25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5. 노인보호전문기관 효문화 교육 및 홍보	30,000	
		여성가족과	6.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사업	20,000	
		여성가족과	7. 중도입국 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40,000	
		여성가족과	8. 거주외국인 대상 제주문화 이해교육	20,000	
		여성가족과	9.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80,000	
		지역공동체발전과	10.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생애스포츠 프로그램 사업(남원읍)	136,500	
		지역공동체발전과	11.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00	
		평생교육과	12.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운영	100,000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13. 늘푸른대학(노인교실) 기능보강	10,000	
		경로장애인지원과	14.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4개소)	140,000	
		경로장애인지원과	15.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	15,200	
		경로장애인지원과	16.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비	18,000	
		관광진흥과	17.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10,000	
		여성가족과	18. 어린이집 이용 아동(만 0~2세) 학부모 부모역할 교육	30,000	
		여성가족과	19.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3,606	
		여성가족과	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03,064	
		여성가족과	21.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60,000	
		여성가족과	2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79,833	
		여성가족과	2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20,000	
		여성가족과	24.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15,000	
		여성가족과	25.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문학 특강	15,000	
		제주보건소	26.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	10,000	
		주민복지과	27.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	50,000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28. 노인지도자 양성교육 참가지원	9,180
			경로장애인지원과	29. 노인대학원 운영	78,000
	경로장애인지원과		30. 노인교실 운영	21,600	
	경로장애인지원과		31. 노인대학원 운영 지원	177,000	
	경로장애인지원과		32.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	57,000	
	경로장애인지원과		33.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30,000	
	동흥동		34. 노인회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22,000	
	여성가족과		35.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2,000	
	여성가족과		36. 청소년수련시설 주5일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40,000	
	여성가족과		3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9,734	
	여성가족과	38.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26,900		
평생교육지원과	39.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20,000			

구 분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 (천원)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평생교육지원과	40. 청소년 대중문화캠프 운영	4,750	
	평생교육지원과	41. 청소년 리더십 캠프	20,000	
	평생교육지원과	42. 청소년 차세대 통일리더 아카데미	15,000	
	평생교육지원과	43.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	20,000	
	평생교육지원과	44. 방과후 교육 특화 프로그램 지원	1,065,000	
	평생교육지원과	45.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학생과정 운영	190,000	
	평생교육지원과	46.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학부모과정 운영	55,000	
	평생교육지원과	47. 외국문화체험 프로그램	50,000	
	미래인재교육과	48.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190,000	
	<b>2 소외계층 평생학습 서비스 강화</b>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45,000
		노인장애인복지과	2.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4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3. 지체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2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상담지원	74,100
		노인장애인복지과	5. 제주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 지원	46,000
		노인장애인복지과	6.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120,121
		노인장애인복지과	7.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체험 확대사업 지원	5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8.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18,000
		노인장애인복지과	9.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128,375
		노인장애인복지과	1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11.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31,000
		노인장애인복지과	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엘린)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사업	5,000
노인장애인복지과		13. 새날도서관 운영	26,500	
노인장애인복지과		1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함양 연수	30,000	
농업기술원		15. 취약계층을 위한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	30,000	
문화정책과		16. 장애인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350,000	
복지청소년과		17. 게이트키퍼(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	-	
복지청소년과		18.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77,000	
복지청소년과		19.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	19,000	
복지청소년과		20.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마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	10,000	
체육진흥과		21.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사업	13,500	
평생교육과		22. 문해교육 지원사업	20,000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23. 지체장애인 사회학습 훈련	12,000	
	경로장애인지원과	24. 농아인협회 사회적응프로그램 (일반인 수화교실) 참여지원	18,500	
	경로장애인지원과	2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25,000	
	경로장애인지원과	26.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합 프로그램 지원	10,000	
	경로장애인지원과	27. 장애인 연합 프로그램 지원	10,000	
	경로장애인지원과	28.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가족치료 프로그램	10,000	
	경로장애인지원과	29. 장애인복지관 조기 특수교육 사업 지원	220,640	
	경로장애인지원과	3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964,343	
	경로장애인지원과	31.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지원	12,700	
	동부보건소	32. 어르신 생활습관병 탈출 프로그램	30,000	
	서부보건소	33. 보건진료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15,000	
	여성가족과	3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00	
	여성가족과	35.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10,000	
	여성가족과	36.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197,640	
	여성가족과	37.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80,000	

구 분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 (천원)	
	자치행정과	38.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243,469	
		39. 비정규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44,000	
		40. 비정규학교 성인문해교육지원	13,020	
		41. 비정규학교(제주장애인야간학교)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49,160	
		42. 지역아동센터 운영	2,473,440	
		43.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97,920	
		44.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토요일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0,000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45.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53,950
		경로장애인지원과	4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어울림터, 평화의마을, 에코소랑)	15,000
		경로장애인지원과	47.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운영	50,000
		경로장애인지원과	48.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501,307
		경로장애인지원과	49.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사업	51,340
		동부보건소	50. 장애인 체험교실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000
		서귀포보건소	51.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	4,000
		여성가족과	52. 지역아동센터 운영	1,489,920
		여성가족과	53. 우수 지역아동센터	57,600
		여성가족과	5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10,000
		여성가족과	55.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비	49,200
		여성가족과	56.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	70,000
		여성가족과	57.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46,000
		여성가족과	58.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0,000
		주민복지과	59.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발달장애 치료 프로그램 운영	15,000
		평생교육지원과	60.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성인문해교육 지원	10,000
		평생교육지원과	61.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성인, 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 지원	23,000
		평생교육지원과	62.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운영 지원	73,000
	평생교육지원과	63.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13,400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64.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331,000
		제주학생문화원	65. 제주학생문화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9,000
		미래인재교육과	66. 평생학습관 운영	161,000
		미래인재교육과	67.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7,000
		미래인재교육과	68.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172,000
미래인재교육과		69. 검정고시 시행	166,000	
학교교육과		70.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5,000	
학교교육과	71.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0		

부서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천 원)	
II. [차별화] 학습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b>①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b>			
	제주특별 자치도	ICT융합담당관	1. ICT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운영	300,000
		ICT융합담당관	2. 코딩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500,000
		ICT융합담당관	3.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 상담	50,000
		ICT융합담당관	4.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지원(5개소)	110,476

부서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천 원)	
평생학습	ICT융합담당관	5.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12,800	
		ICT융합담당관	6. 지역 S·W 성장지원사업	448,000
		노인장애인복지과	7.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 구입	10,000
		고용센터	8.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72,000
		고용센터	9.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지원	155,000
		고용센터	10.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446,000
		노인장애인복지과	11. 장애인 정보 격차해소 사업	12,000
		노인장애인복지과	12.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운영	247,773
		농업기술원	13. e-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6,000
		문화정책과	14.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지원사업	40,000
		문화정책과	15.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운영	50,000
		문화정책과	16.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통신비	10,000
		인재개발원	17.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	107,030
		평생교육과	18. 4차산업혁명 선도 창의적 프로그램 공모사업	100,000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19. 시각장애인 제주점자도서관 운영	46,160
		정보화지원과	2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8개 마을)	143,246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21.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15,000
		정보화지원과	2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43,246
		정보화지원과	23.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23,400
	<b>② 산업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b>			
	제주특별 자치도	관광정책과	1. 제주관광서비스아카데미 운영	250,000
			2.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사업	100,000
			교통정책과	3.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
4.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				10,500
경제일자리정책과			5.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아카데미 사업	100,000
			6. 대규모 투자사업 연계 인력양성 지원사업	50,000
경제일자리정책과			7.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193,000
			노인장애인복지과	8.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
노인장애인복지과			9.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5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10. 안마사 교육사업 운영	90,000
농업기술원		11.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지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13,000	
		12.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제주농업기술센터)	64,000	
		13.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교육 지원 (제주농업기술센터)	16,000	
		14.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30,000	
		15.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45,000	
		16.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600,000	
		17. 미래인력육성 프로그램 운영	118,000	
		18. 농어촌관광경영자 과정 운영	50,000	
		19. 강소농 육성 교육 교재	16,000	
		20.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지원	15,400	
		21.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451,432	
		22.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118,000	
		23.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및 현장교육 운영	10,000	

부서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천 원)	
	농업기술원	24. 여성농업인·소비자단체 교육 운영	20,000	
	농업기술원	25. 농산물 가공교육 지원	14,000	
	농업기술원	26.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지원	30,000	
	농업기술원	27. 농가수요 대비 교육용 드론 구입	85,000	
	농업기술원	28.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품목교육 교육지원	143,000	
	농업기술원	29. 기초 영농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15,000	
	농업기술원	30. 원예치료사 양성과정 운영	30,000	
	농업기술원	31. 우리쌀 활용교육 운영	21,000	
	농업기술원	32.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30,000	
	농업기술원	33. 농업인단체 현장시찰 및 교육	136,080	
	농업기술원	34. 농업인단체 교육지원(동부)	46,400	
	농업기술원	35. 농업인단체 교육 및 활동지원	14,400	
	농업기술원	36.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교육 지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20,000	
	대중교통과	37. 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지원	15,800	
	대중교통과	38. 버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110,000	
	대중교통과	39.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지원	20,000	
	대중교통과	40.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100,000	
	디자인건축지적과	41. 제주청소년 건축학교 운영	10,000	
	복지청소년과	42. 세월호피해자 직업재활훈련 지원	52,800	
	세계유산본부	43.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프로그램운영 및 전승 활성화 사업	242,500	
	수산정책과	44. 어선 안전조업 체험교육 운영	30,000	
	식품원예특작과	45. 제주 향토음식 창업 요리교실 운영	12,000	
	여성가족과	4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보강 사업	40,000	
	여성가족과	47. WISSET(이공계여성 인재육성지원)사업	27,000	
	여성가족과	48.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지원	150,000	
	전기자동차과	49.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운영	50,000	
	체육진흥과	50. 미래꿈나무 아카데미 운영	150,000	
	친환경농정과	51.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	36,000	
	친환경농정과	52.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43,000	
	친환경농정과	53.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33,000	
	해양산업과	54. 해양구조물관리 취업지원사업	200,000	
	해양수산연구원	55.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103,300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56. 노숙인 자활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0,000
		기초생활보장과	57.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10,000
		농정과	58.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	200,000
		농정과	59.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 교육 사업	10,000
		여성가족과	60. 여성단체 능력개발 사업	15,00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61.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50,000
		마을활력과	62. 귀농·귀촌 창업연계 교육과정 운영	30,000
		지역경제과	63.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운영 위탁	130,000
		지역경제과	64. 지역경제 활성화 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33,500

부서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천 원)	
	<b>③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b>			
	제주특별 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	1.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770,000
		경제일자리정책과	2.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130,000
		경제일자리정책과	3.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30,000
		경제일자리정책과	4.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200,000
		경제일자리정책과	5.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	270,000
		고용센터	6.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지원	29,520
		고용센터	7. 성장프로그램 지원	13,100
		고용센터	8.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57,060
		고용센터	9. 취업희망프로그램 지원	28,500
		인재개발원	10. 제우리더스아카데미 운영	25,000
		기업통상지원과	1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400,000
		기업통상지원과	12.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지원	80,000
		문화정책과	13.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0,000
		축산과	14.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600,000
		축산과	15.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50,000
		평생교육과	16.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1,100,000
		평생교육과	17.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60,000
		평생교육과	18.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	30,000
		평생교육과	19. 제주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추진	300,000
		평생교육과	20. 청년 자기개발 지원금 지원	500,000
	평생교육과	21.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60,000	
	해양산업과	22.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운영	64,000	
	해양산업과	23. 크루즈산업 청년일자리 및 서포터즈 운영	100,000	
	환경정책과	24. 고급 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25,0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5.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7,404
		지역경제과	26.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18,000
		지역경제과	27. 청·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50,000
		평생교육지원과	28. 대학전공 탐색하기 운영	15,000
		평생교육지원과	29. 진로체험 캠프 운영	30,000
		평생교육지원과	30. 진로멘토단 운영 지원	12,000
	평생교육지원과	31. 진로·진학프로그램	120,000	

구 분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 (천 원)	
III. [특성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풀뿌리 평생학습	<b>① 지역 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b>			
	제주특별 자치도	4·3지원과	1. 4·3 70주년기념 제주4·3길 역사 탐방	250,000
		관광정책과	2.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50,000
		농업기술원	3. 전통 식문화 계승교육 운영	40,000
		농업기술원	4. 4-H본부 교육지원 사업	16,000
		농업기술원	5. 여성농업인 및 소비자 교육	20,000

구 분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 (천 원)
	농업기술원	6.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25,000
	농업기술원	7.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30,000
	농업기술원	8. 여성농업인, 소비자단체 교육 운영	20,000
	농업기술원	9. 4-H본부 교육지원(1개회)	20,000
	농업기술원	10. 도시농업 및 현장 활성화 교육	2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11. 전통공예 배우기 프로그램 운영	4,000
	문화정책과	12.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190,000
	문화정책과	13.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150,000
	문화정책과	14. 제주어 교육 지원사업	100,000
	문화정책과	15.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200,000
	문화정책과	16. 도민문학학교 운영	108,000
	문화정책과	17. 찾아가는 제주문화아카데미	20,000
	문화정책과	18.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200,000
	문화정책과	19. 제주문화예술 교육센터지원 사업	300,000
	민속자연사박물관	20. 박물관 제주학 아카데미 운영	25,000
	민속자연사박물관	21. 역사기행교실	15,000
	민속자연사박물관	22. 창의 마당·생태교실 운영	13,634
	보건건강위생과	23. 청소년 등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및 운영 사업	25,000
	보건건강위생과	24.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89,320
	보훈청	25.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30,000
	복지청소년과	26.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사업	30,000
	복지청소년과	27.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10,000
	복지청소년과	28. 가정위탁아동 체험활동 지원	10,000
	복지청소년과	29. 어린이집 원장교사 역량강화사업	15,000
	복지청소년과	30.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	60,000
	복지청소년과	31.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15,000
	복지청소년과	32.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사업	10,000
	산림휴양과	33. 유아숲 생태교육 운영사업	30,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4. 복합문화 융성을 위한 문화교육 운영	100,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5. 설문대 행복특강 운영	20,000
	식품원예특작과	36. 식생활교육 지원	200,000
	여성가족과	37.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교육	50,000
	여성가족과	38.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40,000
	여성가족과	39. 안전 프로그램 지원	28,760
	여성가족과	40.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12,000
	여성가족과	41.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	30,000
	여성가족과	42.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20,000
	여성가족과	43.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41,020
	인재개발원	44. 친절콘서트 및 찾아가는 교육 운영	70,000
	자치행정과	45. 신규 새마을작은도서관 개관	50,000
	자치행정과	46.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0
	자치행정과	47. 인권교육 운영	25,000

구 분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 (천 원)		
		자치행정과	48.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실 운영	13,000	
		특별자치법무과	49. 도민 법교육 운영	18,000	
		평생교육과	50. 인문학 최고지도자 과정 지원사업	20,000	
		지역공동체발전과	51. 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50,000	
		평화대외협력과	52. 재외도민 역량강화 지원사업	15,000	
		한라도서관	53.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	97,500	
		환경정책과	54.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지원	20,000	
		환경정책과	55.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 과정 운영	40,000	
		환경정책과	56.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	150,000	
		환경정책과	57.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285,714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58. 취미교실 운영비	66,000	
		경로장애인지원과	59. 노인교실 운영비	100,800	
		문화예술과	60. 제주문화원 육성사업 지원	182,000	
		여성가족과	61. 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77,000	
		여성가족과	62.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12,000	
		여성가족과	63. 한국어교육	22,162	
		읍면동	64.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 사업	600,000	
		자치행정과	65.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100,000	
		자치행정과	66. 4·3 바로알기 체험인문학 운영	10,000	
		자치행정과	67. 행복학습센터 운영	120,032	
		자치행정과	68.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85,000	
		자치행정과	69. 시민인문학 운영	70,000	
		자치행정과	70. 명사초청 시민행복 강좌 운영	40,000	
		서귀포시	대천동	71. 주민참여형 생활환경 교실운영	12,500
			마을활력과	72.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35,000
	문화예술과		73. 서귀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15,000	
	문화예술과		74.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15,000	
	문화예술과		75. 문화의 집 운영	34,000	
	서홍동		76. 국화분재교실	10,000	
	여성가족과		77.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51,232	
	여성가족과		78. 읍·면어린이집프로그램 운영	53,300	
	여성가족과		79.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비	49,200	
	여성가족과		80. 한국어교육 운영	22,162	
	예래동		81. 행복나눔 폐가구 리폼 프로그램	13,000	
	읍면동		8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29,310	
	자치행정과		83.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40,000	
자치행정과	8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84,850		
자치행정과	85. 우수 새마을작은도서관 독서문화교실 운영		20,000		
자치행정과	86. 저소득층 새마을작은도서관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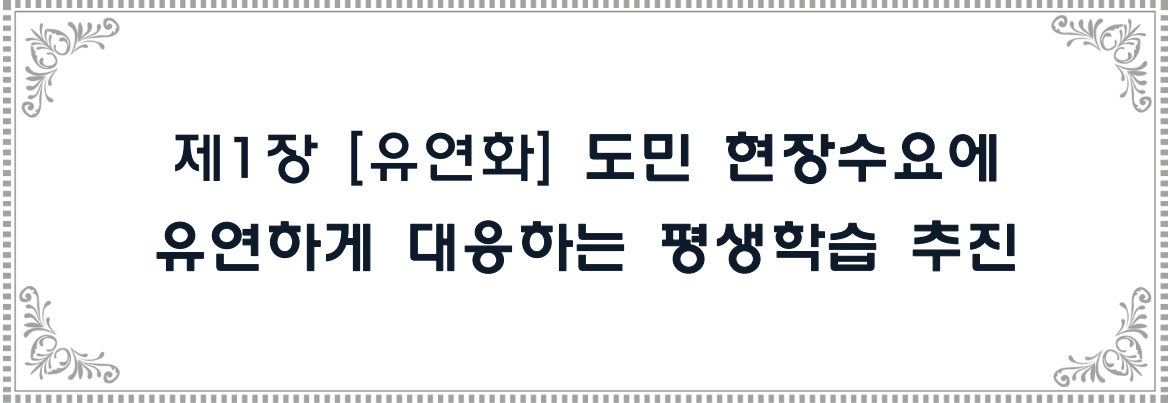
구 분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 (천 원)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평생교육지원과	87. 외국문화체험 프로그램	50,000	
	평생교육지원과	88.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20,000	
	학교교육과	89. 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 운영지원	20,000	
	<b>②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b>			
	제주특별 자치도	문화정책과	1. 토요일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	702,000
		문화정책과	2.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	90,000
		복지청소년과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26,262
		복지청소년과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10,000
		복지청소년과	5.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230,000
		복지청소년과	6.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40,000
		복지청소년과	7.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	25,000
		세계유산본부	8. 살아 숨쉬는 향교활용사업 지원	228,000
		세계유산본부	9. 향교재단 평생교육 유림대학 운영지원	10,000
		세계유산본부	1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및 전승 활성화 사업	242,500
		세계유산본부	11. 탐라중요문화재단 탐라문화아카데미 교육	15,000
		세계유산본부	12.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효문화 진흥 활성화 사업	14,000
		여성가족과	13.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20,000
		인재개발원	14. 탐라의 얼 아카데미 운영	20,000
		지역공동체발전과	15. 일도1동 예술주민자치학교 사업(일도1동)	60,000
		평생교육과	16. 글로벌 챌린지 퀴즈챌프 방송운영사업	230,000
		해녀문화유산과	17. 제주해녀 역량강화사업	10,000
		해녀문화유산과	18. 제주해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00
		해녀문화유산과	19. 제주해녀문화 아카데미 운영	10,000
		해녀문화유산과	20.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80,000
		해녀문화유산과	21. 해녀양성 교재개발 사업	30,000
	제주시	문화예술과	22. 문화대학 운영	18,000
		문화예술과	23. 읍면동 기량향상 풍물 교육 운영지원	10,000
		문화예술과	24. 역사박물관대학 운영	30,000
		여성가족과	25.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35,000
지역경제과		26. 시민경제대학 운영	35,00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7.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	10,000	
	서귀포예술의전당	28. 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0	
	평생교육지원과	29. 시민대학 운영 (글로벌 및 인문학 아카데미)	30,000	

구 분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 (천 원)	
IV. [공고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기반 평생학습	<b>① 평생학습 기반 강화</b>			
	제주특별 자치도	농업기술원	1. 21세기 시민그린대학 운영	25,000
		복지청소년과	2. 글로벌 인재육성 교류사업	15,000
		인재개발원	3. 맞춤형 도민외국어 교육	111,000
		인재개발원	4. 도민 중국어아카데미	270,000
		인재개발원	5.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90,000
		인재개발원	6. 도민 사이버 외국어 교육 운영	20,000
		평생교육과	7.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1,485,000
		평생교육과	8.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	-
		평생교육과	9. 전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20,000
		평생교육과	10.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50,000
		평생교육과	11.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750,000
		평생교육과	12.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강좌	30,000
		평생교육과	13.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477,000
		평화대외협력과	14.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1,000,000
		평화대외협력과	15.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운영	4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16.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0,000
		자치행정과	17. 제주시 평생학습대회 개최	20,000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18.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90,000
		평생교육지원과	19.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2,000
		평생교육지원과	20. 서귀포시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26,000
	<b>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b>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1. 재능기부 강사(1경로당 1강사)양성 프로그램 보급	80,000
		문화정책과	2. 작은도서관 상호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90,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 여성전문교육 운영	189,5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 여성역량강화 지원-설문대여성학교	26,000
		세계문화유산본부	5.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5,000
인재개발원		6. 제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연·문화체험 교육 운영	16,000	
인재개발원		7. 도민역량 강화 교육 과정 운영	30,000	
지역공동체발전과		8. 교육과 여가가 공존하는 누리터 사업 (애월읍)	32,600	
평생교육과		9. 청년강사를 응원합니다	60,000	
협치정책기획관		10. 도민 협치 퍼실리테이터 교육	30,000	
제주시	마을활력과	11. 주민 역량강화 사업	40,000	
	마을활력과	12.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50,000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13.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30,000	



## **제2부 2018년도 영역별 추진과제**





**제1장 [유연화] 도민 현장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평생학습 추진**



## (1) [유연화] 도민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 I. 유연화 도민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의 의** 제주도민의 현장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제주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

**방 향** 도민 평생학습 참여 가능성 확대 및 소외계층 평생학습 서비스 강화

**중 점** 재직자 등 성인의 자발적 평생학습 지원, 학습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원, 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기회확대, 소외계층의 실질적 평생 학습 기회 확대

**내 용** 생애주기별 및 대상별 평생학습 운영, 다문화 이해 교육지원 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고령자 맞춤형 학습지원, 고졸 취업자 후진학, 경력개발 지원, 다문화 및 이주민 대상 학습 지원, 희망하는 모든 도민에 생활 및 문해교육 지원 확대, 비정규학교 및 지역아동 센터, 보육 지원 확대, 건강가정 지원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추진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강화,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

→ 도민 실생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 I-1. 전도민 평생학습 참여 가능성 확대

### I-1-1.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베이비부머세대의 후반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변화 이해와 인생비전 수립을 위한 인생재설계 교육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조례」 제7조

#### 사업개요

-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 위 치 : 제주시 연오로 140(연동)
- 사 업 량 : 인생학교 입문과정, 진로설계과정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도 과정 설계 및 운영(3단계 과정) : 2018년 3월 ~ 12월

#### 기대효과

- 베이비부머세대의 사회변화 적응, 직업전환 및 취업 성공을 위한 준비와 실행 전략 구체화 교육 통한 노후설계 지원 및 사회통합에 기여

### I-1-2. 노인대학원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노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지도자 배출에 중점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업개요

- 건 명 : 노인대학원 운영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 7길 3(삼도2동)
- 사 업 량 : 1개소 · 300명(1년 100명, 2년 100명, 3년 100명)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사업주체 :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경화)
- 사업내용 : 강사료, 교육운영비 등
- 총사업비 : 7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 변화를 통한 평생교육 강화

**기대효과**

- 노인대학원 운영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여가선용

### I-1-3. 노인대학원 강의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노인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강의 프로그램 내용을 교육 교재로 발간·제공하여 수강생 편의제공 및 교육효과를 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비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7길 4(삼도2동)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수행주체 :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경화)
- 총사업비 : 11,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새로운 지식 및 교양을 업그레이드한 교육교재 발간

**기대효과**

- 새로운 지식함양으로 변화되는 시대의 적응능력 배양 및 어르신 평생교육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I-1-4.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사업의 필요성**

-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등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등 맞춤형 복지시책 필요

※ 사업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항

사업개요

- 건 명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 사업량 : 프로그램 증회 및 대상 경로당 확대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수행주체 :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경로당광역지원센터)
- 총사업비 : 2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실태 및 설문조사(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통한 프로그램 보급 경로당 선정 및 추진

기대효과

- 맞춤형 프로그램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I-1-5. 노인보호전문기관 효문화 교육 및 홍보

사업의 필요성

- 효행장려 및 노인공경에 대한 효행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적 가치관인 경로효친사상 고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업개요

- 건 명 : 노인보호전문기관 효문화 교육 및 홍보
- 총사업비 : 30,000천원
- 사업내용 : 효문화 교육 운영 및 홍보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향후 추진계획

- 효행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학교방문 효행교육 추진

기대효과

- 효행장려 및 노인공경에 대한 효행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 I-1-6.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 이해교육을 예비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직과목으로 지정·운영하여 향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시 학생들에게 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증진 및 상호공존 분위기 조성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 사업개요

- 건 명 :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사업
- 위 치 : 도 전역
- 사업내용 : 교육대학교 다문화 이해과목 전공필수화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신청 접수 및 심사 : 2018년 2월 ~ 3월
- 사업추진 : 2018년 3월 ~ 12월(2학기 ‘다문화 이해’ 교직과목 개설)
- 정산 및 사업평가 : 2019년 1월 ~ 3월

#### 기대효과

- 예비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현장의 다문화 인식개선 확산
- 학령기 아동들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통합 기풍 조성

### I-1-7. 중도입국 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들의 재혼으로 인한 중간입국 자녀와 지역사회 및 학교부적응에 따른 학교이탈 자녀에 대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자아실현 및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교육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 비행예방 문제 해소를 건강한 청소년 육성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중도입국 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도 전역
-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인성교육 캠프 운영, 특기적성교육, 직업체험교육 등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신청 접수 및 보조금 교부 : 2018년 2월 ~ 3월
-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3월 ~ 12월
- 정산 및 사업평가 : 2019년 1월 ~ 3월

기대효과

-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중도입국 자녀의 학교이탈 방지
-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진로탐색 등 교육 지원을 통해 자아 존중감 향상 및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 육성 도모
- 중도입국 자녀가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I-1-8. 거주외국인 대상 제주문화 이해교육**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및 제주문화 이해교육 필요
-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문화 이해교육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거주 외국인 대상 제주문화 이해교육
- 위 치 : 도 전역
-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을 위한 주·야간, 주말 한국어·문화교실 운영
- 사업기간 : 연 2학기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신청 접수 및 심사 : 2018년 2월 ~ 3월
- 사업추진 : 2018년 3월 ~ 12월(연중 2학기)
- 정산 및 사업평가 : 2019년 1월 ~ 3월

**기대효과**

- 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이들의 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문화 이해 계기를 마련하여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I-1-9.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문화적 이질감, 언어문제 등으로 입국 후 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정착을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도 전역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문화·역사·언어교육,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신청 접수 및 심사 : 2018년 2월 ~ 3월
- 사업추진 : 2018년 3월 ~ 12월
- 정산 및 사업평가 : 2019년 1월 ~ 3월

**기대효과**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결혼이민자 당사자 및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토대로 한 지역사회 통합 및 함께 하는 다문화사회 조성

## I-1-10.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생태스포츠 프로그램 사업(남원읍)

### 사업의 필요성

-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특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지역적 편중 완화를 위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 추진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23조

### 사업개요

- 건 명 : (남원읍)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생태스포츠 프로그램 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돈야로 83
- 사 업 량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생태스포츠 프로그램 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36,5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2018년 1월 ~ 12월  
- (2018년 제도개선) 강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사업별 강사 지원 추진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컨설팅 및 지도 : 2018년 3월 ~ 12월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마무리 및 정산 : 2018년 12월

### 기대효과

-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 충족으로 지역간 불균형 완화 및 주민주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별 삶의 질 향상

## I-1-11.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정착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 등 독특한 제주문화에 익숙지 않아 지역 주민과의 교류 및 경제활동 등 정착 과정에 어려움을 호소
- 제주문화를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의 심리적 괴리감 등을 해소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정착주민 제주이해하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량 : 제주이해하기 교육 1식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18년 2월
- 정착주민 대상 제주이해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제주문화 이해를 통한 정착주민 안정적 정착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강화

**I-1-12.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인생 100세시대와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민역량강화 및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수혜기회 균등 보장
- 장애 유형별, 개인 수요별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사업개요**

- 사업명 :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운영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사업량 :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공모 등 3개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 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 : 2018년 2월
- 노인평생교육 자원활동가 등 학습지도사 양성과정 계획 수립 : 2018년 2월

- 학습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 2018년 3월 ~ 11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평가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생애단계별 학습욕구를 충족하는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확대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평생교육 추진
-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도모

**I-1-13. 늘푸른대학(노인교실) 기능 보강**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교양, 오락 등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한 노인교실 기능 보강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사업개요

- 사업량 : 노인교실 14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3월 : 노인교실 기능 보강 공모 및 보조금 교부

기대효과

- 노인교실 기능보강을 통한 노인교실 활성화

**I-1-14.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4개소)**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교양, 오락 등 배움의 기회제공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비로써 운영에 필요한 교육교재, 강사료 등 필요경비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소 (노인대학 3개소, 대학원 1개소)  
- 제주시노인대학, 동부노인대학, 서부노인대학, 제주시노인대학원
- 운영주체 :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운영비 보조금 교부

기대효과

- 고령시대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 I-1-15.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전문적인 노인대학 및 대학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문화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 노인대학 기능 혁신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전담관리자 1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2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비 교부

기대효과

- 노인대학 및 대학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 I-1-16.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노인의 건강증진과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당별 순회교육을 통한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방안 강구 및 노인복지시책 반영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비
- 사 업 량 : 145개소 경로당(287개 경로당 중 격년 실시)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2017년 순회교육 미실시 경로당 대상)

### 기대효과

- 노인들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기회 제공

## I-1-17.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가족이 다함께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별빛누리공원 운영의 다양성 추구

### 사업개요

- 건 명 :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선돌목동길 60, 제주별빛누리공원 세미나실
- 사 업 량 :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12월 : 2018년도 가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기대효과

- 자녀의 창의적·과학적 사고방식에 대한 부모의 이해 및 가족애 확립
- 별빛누리공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질적 성장

**I-1-18. 어린이집 이용아동(만 0~2세) 학부모 부모역할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육아관련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육아고충 해소 및 바람직한 부모역할 제시
- 어린이집의 교육·지도 방침 공유로 일관성 있는 자녀양육은 물론 부모와 보육교사가 서로 신뢰하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

사업개요

- 사업량 : 어린이집 재원 만 0~2세 영아 학부모 2,00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교육강사 섭외 및 부모역할교육 계획 수립
- 2018년 3월 ~ 11월 : 사업추진(5회) 및 만족도 조사
- 2018년 12월 : 사업평가

기대효과

- 자녀와 부모 간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 미성숙한 부모의식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집 교사 인권침해 해소 및 어린이집과 상호교감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

**I-1-19.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동반자)가 직접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 정서적 지원 및 필요기관 연계 등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중앙로 94, 3층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사업량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3,606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대효과

- 위기청소년들에게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일원으로 건강한 성장 도모

### I -1-2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업·특별활동 등 종합적 공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사업개요

- 사업량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3개소) 청소년지도사 9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3,064천원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방과 후 학습지원 및 다양한 체험활동 지속 지원

기대효과

-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비행 노출을 예방함은 물론, 학업 성적 향상 도모 및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I-1-21.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제공 및 문화·체험 활동 기회제공
-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전성장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

#### 사업개요

- 사업량 :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6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성화청소년공부방 등 6개소
- 총사업비 : 6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사회와 연계 공교육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 기대효과

- 지역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생활상담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

### I-1-2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제1호

#### 사업개요

- 사업량 : 언어발달지도사 3명(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9,833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홍보 및 초기 언어평가 확대

기대효과

- 아동의 언어발달능력 향상으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자신감 증진에 기여

**I-1-2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국제결혼 관련 법률교육 및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을 통해 부부 간의 사고 및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연계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화합 분위기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8조의2

사업개요

- 사업량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4개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 가정 부부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부부간의 감정을 공유하고 친밀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I-1-24.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33%이며 한국어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 2, 3호

사업개요

- 사업량 :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한국어교실 등) 3개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결혼이주민의 한국어 교육 시행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실시

**기대효과**

○ 지리적 문제로 인하여 소외된 읍면지역 다문화가정에게 자녀교육,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가족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I-1-25.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문학 특강**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 가족들이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의 활동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인문학의 세계를 만나고 자신을 표현하여 자존감과 성취감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2, 2·4호

**사업개요**

○ 사업량 :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1개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인문학 특강 참여자 만족도 조사(사업평가)를 통한 피드백 실시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존감 향상을 통한 가족관계 개선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 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I-1-26.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재활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2,753명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재활치료,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식개선사업 및 재활사업 홍보

기대효과

-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 최소화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

### I-1-27.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방학중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공백 해소 및 건전아동 육성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59조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프로그램비 지원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지역아동센터 25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25개소에 대한 방학 중 프로그램비 지속 지원

기대효과

- 방학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공백 해소 및 건전아동 육성 도모

### I-1-28. 노인지도자 양성교육 참가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무주교육원 신설로 노인지도자들에 대한 소집교육을 위해 경로당 회장 등 노인

지도자 및 임직원의 연수 및 교육을 위한 여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제고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개요**

- 사업량 : 경로당 회장, 노인대학장 등 교육여비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총사업비 : 9,18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제주시 노인회 노인교육원 운영 보조금 지급

**기대효과**

- 경로당 회장 등 노인지도자 교육여비를 지원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및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

**I-1-29. 노인대학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노인들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노인복지법」 제47조

**사업개요**

- 대 상 : 서귀포시 노인대학원(1~3학년)
- 사업량 : 1개소, 대학원생 187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인건비, 강사료, 입학·졸업 등 학사운영 경비 지원
- 총사업비 : 7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노인대학원 운영비 지원 : 2018년 1월

### I-1-30. 노인교실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노인들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노인교실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지원지침」

#### 사업개요

- 대 상 : 서귀포시에 등록된 노인교실
- 사 업 량 : 3개소(서귀포교회 늘푸른대학, 보목교회 삼도경로대학, 서귀포성당 숨비소리어르신학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주 1회 3시간)
- 사업내용 : 학과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 노인교실 운영경비
- 총사업비 : 21,6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노인들의 평생교육장 육성을 위한 노인교실 지원 : 2018년 1월

### I-1-31. 노인대학운영비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노인들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노인복지법」 제47조

#### 사업개요

- 대 상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부설노인대학
- 사 업 량 : 6개소(읍면 노인대학 5, 시노인대학 1), 대학생 633명(1~2학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학사운영 경비지원
- 총사업비 : 177,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 2018년 1월

### I-1-32.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체계적인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를 통해 경로당 프로그램 질 향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도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인보건 복지 사업안내」

#### 사업개요

- 사업량 : 2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7,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12월 ~ 2018년 1월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 및 운영 : 2018년 1월 ~ 12월

### I-1-33.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로당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역할수행 및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

#### 사업개요

- 사업량 : 관내 경로당 35개소
- 지원기준 : 개소 당 800천원 범위
- 사업내용 : 경로당 취미, 여가 프로그램 운영(건강체조, 가요, 민요 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신청접수 및 선정 : 2018년 1월
- 취미교실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I-1-34. 노인회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어르신들의 여가활동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함
- ※ 사업시행 근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31조

**사업개요**

- 건 명 : 노인회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 사업주체 :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동흥동분회(회장 오용집)
- 사업량 :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동흥동분회 및 관내 경로당 12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2,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행복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원예교실) : 11월14일~ 11월17일(4일간)

**기대효과**

-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문화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로당 이용 활성화 도모

**I-1-35.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자질 향상을 기하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직영)
- 위 치 : 직영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 청소년수련관 (2개소) : 서귀포시, 대정
  -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 동홍, 중문
- 사 업 량 :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의 욕구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화 도모

기대효과

-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시설운영 활성화로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도모

**I-1-36. 청소년수련시설 주5일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5일 수업시행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시간 증가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 향상을 기하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영 수련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수련시설 주5일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직영)
- 위 치 :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등 8개소
- 사 업 량 : 직영 청소년수련시설 8개소
  - 청소년수련관 (2개소) : 서귀포시, 대정
  - 청소년문화의집 (6개소) : 안덕, 동홍, 남원, 표선, 신산, 중문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주5일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토요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대효과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미생활, 끼 발산 기회 제공

**I-1-37.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동반자)가 직접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상담, 정서적 지원, 필요기관 연계 등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  
※ 사업시행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9,734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발굴하여 동반자 관계를 복원,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 청소년 동반자가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문적인 상담 뿐 만 아니라 자기 계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I-1-38.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서귀포시 외곽지역의 거주 다문화가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문화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 2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시 중앙로 81)
- 사업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6,9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발굴, 운영

**기대효과**

- 방문이 어려운 외곽지역에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I-1-39.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사업의 필요성**

- 가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교육비 경감 도모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 위 치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서귀포시 동홍중앙로 7번길 19)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수탁자 선정 및 과정 운영  
: 2018년 1월 ~ 11월

**기대효과**

- 자기주도학습 교육기반 조성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I-1-40. 청소년 대중문화캠프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대중문화 영역(힙합, 연출, 연기, 대중음악, 뮤지컬, 모델, 밴드 등)의 차세대 주자가 되기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진학과 취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

사업개요

- 건 명 : 제8회 제주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 위 치 : 서귀포시관내 청소년수련시설
- 사업기간 : 2018년 6월초
- 사업량 : 도내 고등학교 학생 200여명
- 사업내용 : 대중문화영역 현장실습, 강의, 작품 제작 및 발표
- 총사업비 : 4,75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8회 제주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운영에 따른 도교육청 등과 업무 협의 : 2018년 2월
- 제8회 제주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운영계획 수립 : 2018년 3월
- 제8회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2018년 4월 ~ 5월
- 제8회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운영 : 2018년 6월초

기대효과

- 대중문화 영역의 차세대 주자가 되기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동종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선배들과 대면하고 소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래의 희망에 도전할 수 있는 격려와 자극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제공

**I -1-41. 청소년 리더십 캠프**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 스스로 장래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우는 교육기반 구축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리더십 캠프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서귀포시 동홍중앙로 7번길 19)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리더십캠프 민간위탁 사업 평가 및 정산보고 : 2017년 9월 ~ 12월

- 청소년 리더십캠프 수탁자 선정 및 운영 : 2018년 1월 ~ 11월

기대효과

- 청소년기 높은 자아 존중감 형성으로 스스로의 비전 설정 및 목표 달성의 능력을 향상

### I-1-42. 청소년 차세대 통일리더 아카데미

사업의 필요성

- 통일시대 리더로서 우리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왕성한 활동과 참여를 통해 미래 세대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미래세대 통일리더십 배양과 선진 통일한국 창조에 기여할 차세대 리더 육성

※ 사업시행근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차세대 통일리더 아카데미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도 청소년 차세대 통일리더 아카데미 추진 : 2018년 10월

기대효과

-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고양

### I-1-43.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관내 청소년들에게 토론 교육 및 실습 경험 제공을 통해 토론 문화 저변 확대 및 바른 소통능력 신장 기회 제공

- 거리상 다소 참여가 어려운 관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토론의 유익함과 즐거움을 찾아보는 시간 마련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및 읍면지역 찾아가는 토론 아카데미
- 위 치 : -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 서귀포시 동지역 중학교  
- 찾아가는 토론 아카데미 : 관내 희망 초중고학교, 청소년수련시설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 학생
- 사업기간 : -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 동계·하계 방학 기간 중 각 4~5일(연 2회)  
- 찾아가는 토론 아카데미 : 2018년 3월 ~ 11월
- 사업내용 : 토론의 원리와 방법 강의, 단계별 토론 실습
- 총사업비 : 20,000천원

####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 >

- 2018 동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11월
- 2018 동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 : 2018년 1월
- 2018 하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 : 2018년 7월

< 읍면지역 찾아가는 토론 아카데미 운영 >

- 2018 읍면지역 찾아가는 토론 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2018년 1월
- 2018 읍면지역 찾아가는 토론 아카데미 운영 : 2018년 3월 ~ 11월

#### □ 기대효과

- 관내 및 읍면 지역의 청소년들의 소통능력 신장 및 분석·비평능력 제고에 기여
- 토론문화 저변확대와 학교 토론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 I-1-44. 방과후 교육 특화 프로그램 지원

####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창의·인성·리더십을 기르는 다양한 방과후 교육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서귀포시를 명품교육도시로 육성
- 소질·적성·진로개발과 심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하여 사교육비 절감

#### □ 사업개요

- 건 명 : 방과후 학교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도내 일원, 관내 초·중·고교 학교 내
- 사업량 : 관내 초·중·고교 (초45개교, 중15개교, 고10개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65,000천원

####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방과후 교육특화 프로그램 공모 : 2017년 11. 6(월) ~ 11. 27(월)

- 심의위원회 구성 및 프로그램 심사 : 2017년 12월
- 2018년 교육특화 프로그램 연간 계획안 확정 및 학교 안내 : 2017년 12월
- 2018년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I-1-45.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학생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 스스로 장래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우는 교육기반 구축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학생과정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서귀포시 동홍중앙로 7번길 19)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9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12월
- 학생 대상 프로그램 및 매월 특강 운영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법을 익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자기관리를 통해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 설계하여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도모
-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 접근성의 어려움 해소

**I-1-46.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학부모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자녀의 재능을 파악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자녀 코칭법, 대화법 등 학부모 과정 운영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학부모과정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서귀포시 동홍중앙로 7번길 19)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12월
-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및 매월 특강 운영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 증진 및 행복하고 건강한 학습가정 분위기 조성

**I -1-47. 외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관내 청소년들에게 세계 여러나라 외국인들과의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외국문화체험 프로그램
- 위 치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서귀포시 동홍중앙로 7번길 19)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공기관대행사업 협약체결 및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2월 ~ 10월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다양한 해외문화체험을 통해 전인적 성장 도모

## I-1-48.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 사업의 필요성

-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정-학교-지역사회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중심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대 상 :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사 업 비 : 학교별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
- 사업주관 : 초·중고·특수학교
- 주요내용 :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19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학교별 1교1강좌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3월 ~ 12월
- 1교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수합 : 12월

### 기대효과

-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가정-학교-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관계 및 협력적 체제 구축에 일익

## 1-2. 소외계층 평생학습 서비스 강화

### I-2-1.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과 단체의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원활한 사회적 적응 기반 구축 및 사회대응방안과 자립능력 배양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 2

####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공모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 총사업비 : 45,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사회적응력 강화 및 종사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장애인 및 단체종사자의 역량교육을 통해 자립능력 배양 및 역량강화

### I-2-2. 자폐성 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자폐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 사업개요

- 건 명 : 자폐성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 수행주체 : 공모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향후 추진계획**

-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 추진

**기대효과**

- 자폐성장장애인에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향상

**I-2-3. 지체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사업의 필요성**

- 19년 동안 전국 지체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을 개최하여 장애여성의 권익과 인권, 문화·예술 교류증진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지체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 위 치 : 탐라장애인복지관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수행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부형중)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 지체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추진으로 여성장애인 지도자 양성

**기대효과**

- 여성장애인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재조명하여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I-2-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상담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사후관리 직무조정 및 컨설팅으로 사회구성원으로 경제적 자립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상담지원
- 위 치 : 탐라장애인복지관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부형중)
- 총사업비 : 74,1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직업상담, 사업체 개발 및 관리 : 연중
- 직업재활 네트워크 사업 평가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

기대효과

-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맞춤 상담을 통한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도
- 관련업체 홍보 및 개발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개선

**I -2-5. 제주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도내 뇌병변장애인들의 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회장 : 천선자)
- 총사업비 : 46,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제주 뇌병변장애인의 복지증진 도모

기대효과

-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극복 및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I-2-6.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기초학습 증진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장애인 자기계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
- 총사업비 : 120,121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운영실적 지속적인 관리 및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만족도 조사) 실시

#### 기대효과

- 여성장애인의 자기계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

### I-2-7.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체험 확대사업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문화예술 체험 및 참여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 여건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및 제81조(비용 보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체험 확대 사업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수행주체 : 공모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 향후 추진계획

-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의 소통 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 등을 위해 지속 추진

기대효과

-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보장 기회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존감 고취

**I-2-8.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및 행사물품 수송차량 구입**

사업의 필요성

- 기존 보유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프로그램 장비 등 행사물품 수송을 위한 차량으로,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 및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복지관 프로그램 장비(탠덤사이클 등) 및 행사물품 수송차량 구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000천원
- 수행주체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예홍)

향후 추진계획

- 본예산 확정 후 이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사업 본격 추진

기대효과

-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I-2-9. 제주권역 재활병원 공공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민의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최소화하고 취약·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재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 재활 의료 서비스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실현 도모
- ※ 사업시행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문로 1(구 서귀여중)
- 사업내용 : 조기사회복귀프로그램, 방문재활지원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장애아동재활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8,375천원(국비 102,700, 도비 25,675)
-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향후 추진계획**

- 입원환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조기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보급
- 권역을 포괄하는 재활의료교육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비장애인, 지역주민을 위한 재활인식개선 사업 실시
- 미충족 재활영역의 소아 공공재활사업 원내 실시

**기대효과**

-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단축 및 조기 사회복귀 도모, 권역내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2차 장애발생 예방 및 재활의료 사각지대 감소

**I-2-1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및 가족이 함께 평생교육에 참가함으로써 가족들 간의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토대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제2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수행주체 : 공모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단체 및 복지관

**향후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속 추진

**기대효과**

-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 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I-2-11.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사업의 필요성

- 장애 당사자의 예술적 잠재력과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인큐베이팅, 문화예술과 접목한 발달장애인의 대안적 교육시스템 도입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7조

### 사업개요

- 건 명 :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1,000천원
- 수행주체 : 공모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단체 및 복지관

### 향후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의 예술교육을 통한 소통 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자존감 향상 및 사회 일원의 성장 도모

## I-2-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엘린)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이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시행령 제44조

### 사업개요

- 건 명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은남1길 4(연동)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숙박업, 청소용역업
- 총사업비 : 5,000천원(운영비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직업재활시설 운영평가 및 실적 확인 : 2018년 1월
- 2018년 직원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보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자존감 실현 및 사회통합 기여

**I-2-13. 새날도서관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서 대출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 운영으로 장애인의 여가활동 기회 제공 및 정보 활용 접근성 강화로 삶의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 2

**사업개요**

- 건 명 : 새날도서관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회장 양용석)
- 총사업비 : 26,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을 위한 도서 무료배달 및 도서 구매대행 서비스 운영 강화

**기대효과**

- 장애인의 독서문화 확대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으로 복지증진 효과 기대

**I-2-1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함양 연수**

**사업의 필요성**

- 외국의 선진화된 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전문성 향상 및 직업 재활시설의 발전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 사 업 량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선진지 해외연수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시행주체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사업내용 : 우수 선진시설 견학 등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선진시설 견학계획 수립 및 교부금 교부 : 2017년 3월

기대효과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양양 및 직업재활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임금향상 도모

**I-2-15. 취약계층을 위한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식물 및 원예활동을 매체로 한 정신적, 육체적 재활을 실행할 수 있는 원예 치료프로그램을 이용,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및 화훼류의 소비촉진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취약계층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사업 정산

기대효과

- 아동, 노인, 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에게 원예치료 프로그램 실시로 원예활동의 공익성과 효과성 인식 제고

I -2-16. 장애인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향유기회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
- 장애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문화적 권리 증진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5조의 2, 「문화기본법」 제4조~제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제5조~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1식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350,000천원
- 주 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향후 추진계획

- 2017 사업 결과 공유 워크숍 개최 : 12월중
- 2018 운영계획 수립, 공모 및 사업 선정 : 2018년 1월 ~ 2월
- 사업 추진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장애유형별 문화예술교육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험 및 향유 욕구 해소

## I-2-17. 게이트키퍼(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도민에게 자살위험 신호에 대한 민감성 향상 교육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전도민 게이트 키퍼화를 통하여 우리나라(제주특별자치도)의 자살률 감소에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1조, 「제3차 자살예방계획(2016~2020) 및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비예산
- 대 상 : 도민 4,000명
- 시행기관 : 도 보건건강위생과,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교육내용 : ‘보고 듣고 말하기’ (한국형 자살예방 인증 프로그램) 교육  
(보 기)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행동·상황적 신호를 보고 자살고위험군 빨리 알아차리기  
(듣 기) 자살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감적으로 경청하기  
(말하기)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연계하기를 통한 자살예방의 전 과정에 대한 교육

### 기대효과

- 표준 게이트키퍼 교육으로 자살 고위험군이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교 역할 기대
-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자살률 감소에 기여

## I-2-18.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을 통한 전문성 유지로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수준 제고

※ 사업시행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임태봉)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7,000천원
- 사업내용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법정 지정교육 및 특별교육 등

기대효과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법정지정교육, 특별교육)을 통한 우수 사회복지 인력양성 및 직무의 전문성 강화

**I-2-19.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사회복지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성 향상, 실무능력 제고, 다변화시대의 지역복지 차원의 대응력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임태봉)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9,000천원
- 사업내용 : 사회복지사 대상 리얼 현장 토크, 작은토론회, 강연회 등

기대효과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대민 복지서비스 질 향상

**I-2-19.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마당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체험놀이마당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유대관계의 시간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자아존중의 기회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마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위 치 : 도내 지역아동센터
- 사업기간 : 2018년 10월 ~ 12월
- 총사업비 : 19,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체험놀이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10월 ~ 12월

**I -2-20.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마당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체험놀이마당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유대관계의 시간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자아존중의 기회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마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위 치 : 도내 지역아동센터
- 사업기간 : 2018년 10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체험놀이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10월 ~ 12월

**I -2-21.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관련, 기존 지도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유예기간(2018년까지)을 설정
- 연 1회 실시하는 필기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권역별 연수기관으로 선정된 4개의 대학교(용인대, 원광대, 대구대, 백석대)에서 90시간의 연수교육과 실기고사를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의 서비스팀장 및 지도자들은 도내에서 연수교육이 불가함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장애인체육 환경 및 지도대상자의

맞춤형지도에 따라 다양한 지도방법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지도자 역량강화 요구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23조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 위 치 : 제주시 복지로 3길 1-10
- 사 업 량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3,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2월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계획 수립
- 2018년 11월(예정) : 백석대학교 교육 실시

기대효과

-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양질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 및 기량향상에 기여
- 장애인 생활체육 인구의 확대 및 활성화 도모

### I-2-22. 문해교육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제주지역 비문해 학습자를 위한 문해교육 지원체계 확립으로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5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53」(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사업개요

- 건 명 : 문해교육 지원사업(사업주체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사 업 량 : 문해교육 지원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문해교육 기관 간담회 개최에 따른 의견수렴 실시
-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개발 운영 지원

기대효과

- 학령기 기초 교육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 성인 대상 생애 기초능력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I-2-23. 지체장애인 사회학습 훈련

사업의 필요성

- 지체장애인에게 사회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 사업내용 : 타지역의 장애인 복지체험을 통한 정책제안의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0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3월 사회학습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보조금 신청접수 및 교부

기대효과

- 지체장애인의 사회학습 훈련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도모

I-2-24. 농아인협회 사회적응 프로그램(일반인 수화교실) 참여지원

사업의 필요성

- 일반인들에 대한 수화교육을 통해 농아인과 일반인 간의 사회통합 기반 마련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농아인협회 제주시지회
- 사업내용 : 청인(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사회적응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보조금 신청접수 및 교부

**기대효과**

- 수화 교육을 통한 농아인과 비장애인 간의 사회통합 기반 마련 및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

**I-2-2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기법, 사회성 훈련 등 사회적응력 향상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비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사업량 : 5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업 추진

**기대효과**

- 장애인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I-2-2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연합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 알찬서비스 기회 제공 및 시설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친밀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비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개소 연합프로그램

- 사업량 : 연합 프로그램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3월 교부내시 및 교부

**기대효과**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연합 행사 지원을 통한 시설 간 교류 활성화

**I-2-27. 장애인 연합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이 생활체육을 통하여 체력 및 삶의 활력 증진 도모
- 여러 장애유형 간의 대화활동을 통한 교류활성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장애인 연합 체육프로그램
- 사업량 : 장애인 연합 체육프로그램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7월 사업자 공모
- 2018년 8월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기대효과**

- 장애인들의 체력 및 삶의 활력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

**I-2-28.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가족치료 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장애 특성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맞춤형 예방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족 전체 상담과 치료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7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가족 치료프로그램(개별·집단상담, 예방교육 등)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가족치료프로그램 운영비 신청 접수 및 지원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맞는 맞춤형 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II-2-29. 장애인복지관 조기 특수교육 사업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장애아동의 언어·심리 및 특수 조기교육을 원하고 있으나 치료교사 및 공간의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대기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사 지원(10명)
  -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4명),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2명),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2명),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1명), 제주도농아복지관(1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20,640천원
- 수행주체 : 장애인복지관(5개소)

향후 추진계획

- 장애아동의 문제점 완화 및 장애부모의 일상생활 보장 등을 위하여 지속 추진

기대효과

- 정서·행동·언어 등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장애아동의 자기표현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 II-2-3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 (보호, 고용,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사업량 : 6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964,343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취업훈련 및 취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속 지원

### 기대효과

- 장애인 취업훈련 및 취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 및 자활·자립을 도모

## I-2-36.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취업 등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제공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취득 희망자  
※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및 생계·의료수급자 중 5~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로 제외('16. 7. 1 시행)
- 사업내용 :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1·2종 보통 500천원, 대형 650천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7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운전면허 취득한 장애인에게 교육비 수시 지원

**기대효과**

-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I-2-32. 어르신 생활습관병 탈출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 및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P 2020) 목표 달성  
 ※ 사업시행 근거 : 「2017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 : 총괄」

**사업개요**

- 건 명 :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어르신 생활습관병 탈출프로그램)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속 운영

**기대효과**

-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주민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

**I-2-33. 보건진료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진료소 관할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주민 위주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함

**사업개요**

- 건 명 :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위치 및 사업량 : 보건진료소 15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주민참여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지속 운영

**기대효과**

- 포괄적·연속적 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주민 건강문제 해결능력 배양

**I-2-34.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집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추진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및 보육의 질 향상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제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65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7월 :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신청 안내 및 접수
- 2018년 8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8년 8월 ~ 12월 : 사업추진 및 정산검사 실시

**기대효과**

-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I-2-35. 보육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의 필요성**

-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 교·직원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3조의 2

**사업개요**

- 사업량 : 보육 교·직원 80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7월 : 아동학대예방교육 보조사업 신청 안내 및 접수
- 2018년 7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8년 7월 ~ 12월 : 사업추진 및 정산검사 실시

**기대효과**

-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

**I-2-36.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지리적 접근성 문제 등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서비스 및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생활지원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감 해소 및 한국(제주지역)사회 조기적응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제1호

**사업개요**

- 사업량 : 방문교육지도사 18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97,64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비 신청 접수 및 분기별 지원

**기대효과**

-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통합 기여

**I-2-37.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사업의 필요성**

- 자기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로 특성을 반영한 성·인권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성폭력 등 폭력피해 예방 제고

※ 사업시행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제7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비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교육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 욕구에 맞는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로 성폭력 예방 도모

### I-2-38.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가정환경 곤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학업의 기회를 놓친 교육소의 계층에게 문자해득능력 및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조직화된 학습프로그램을 편성 및 운영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생활 실현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 대 상 : 비정규학교 4개소  
\*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이야간학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43,469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9년 1월 : 비정규학교 운영비 정산

기대효과

-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기초생활능력 배양 및 학력 취득 지원

### I-2-39. 비정규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비정규학교의 노후된 교육 기자재 구입 교체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건 명 : 비정규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 대 상 :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사 업 량 : 교육 기자재 구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4,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보조금 교부 결정
- 2018년 2월 ~ 12월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기대효과

- 비정규학교에 대한 교육 기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

### I-2-40. 비정규학교 성인문해교육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건 명 :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
- 대 상 : 동려평생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3,02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8년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기대효과

- 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생애능력 향상

**I-2-41. 비정규학교(제주장애인가간학교) 중증장애인이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중증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이동지원을 통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 사 업 량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9,16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8년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기대효과

- 장애인의 생활범위 확대로 활발한 평생학습 참여와 개인의 궁극적 자립 실현

**I-2-42.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지역아동센터 4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473,44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 내시 : 2018년 1월 중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신청 및 지출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질 좋은 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 강화

**I-2-43.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관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지역아동센터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사업개요**

- 사업량 : 지역아동센터 34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97,92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 선정 및 지출 : 2018년 9월

**기대효과**

-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질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기능 강화

**I-2-44.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토요일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주 5일 사업시행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돌봄 공백 없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요일 돌봄서비스(월 2회)를 제공함으로써, 외부체험 및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지역아동센터 16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토요프로그램 지원 계획 수립: 2018년 1월
-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토요프로그램 신청 및 지출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토요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임을 방지하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 제공

### I -2-45.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청각·언어장애인 자막입력 영상물 보급 및 정보화 교육, 수화교육을 통하여 자체 역량 강화
  -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및 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능력개발 및 사회적응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서귀포시 6개 장애인 단체
- 지원내용 :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3,95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역량강화사업 지원 추진

## I-2-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지원(어울림터, 평화의마을, 에코소랑)

### 사업의 필요성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재활도모를 위한 서비스 추진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제7조

###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에코소랑, 평화의 마을, 어울림터(3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직업재활시설 3개소 100명의 근로·훈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I-2-47. 서귀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중증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자립생활을 촉진하여 사회 참여 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2항, 제8조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62-3(서홍동)
- 수행기관 : 서귀포시장예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성완)
- 지원내용 : 연극·사진·기타·노래·낚시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 문화예술,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속 추진

## I-2-48.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언어치료, 청능(청각능력)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행동·놀이, 심리 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바우처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량 : 360명
- 총사업비 : 501,307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계속 지원

## I-2-49. 장애 유형별 재활서비스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사업 지원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리·편익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율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서귀포시 6개 장애인 단체
- 지원내용 :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1,34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사업 지속 추진 및 사회활동 참여율 향상

## I-2-50. 장애인체험교실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증진 사업 추진으로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 「모자보건법」

### 사업개요

- 대 상 : 전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속 추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지자체 주도 방식의 사업 기획 수행

## I-2-51. 건강생활 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주민건강증진센터운영과 영양,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 올바른 건강생활실천을 향상에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건강증진법」

### 사업개요

- 사업량 : 건강증진센터 운영,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주민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지속 운영

## I-2-52. 지역아동센터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 아동이 지역 내에서 안전한 보호와 교육지도, 급식지원,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의 심신 발달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59조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지역아동센터 25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89,92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속 지원

### 기대효과

-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 I-2-53. 우수지역아동센터

### 사업의 필요성

-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 기준에 따라 기초 지자체 평가 실시, 광역 지자체별 취합 후 지원 대상 등급을 선정하여 차등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지역아동센터 20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7,6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속 지원

### 기대효과

-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 I-2-5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 사업의 필요성

- 타지역 우수시설 방문 및 워크숍을 통해 종사자 간의 상호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기반을 공유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업량 :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대효과

- 종사자 간의 상호서비스 연계 및 네트워크의 구축기반을 공유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질 향상

## I-2-55.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비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비 지원을 통해 방과후 돌봄서비스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비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업량 : 지역아동센터 25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9,2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기대효과**

- 문화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시설이용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질 향상

**I-2-56.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집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및 보육의 질 향상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65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7월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신청 안내 및 접수
- 2018년 8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8년 8월 ~ 12월 : 사업추진 및 정산검사 실시

**기대효과**

-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I-2-57.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가족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  
※ 사업시행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사업개요**

- 건 명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서귀포시 서호남로 19-42)
- 사 업 량 :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6,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해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단위 프로그램 활성화
-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지원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I-2-58.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문화적·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 외부체험 및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업개요**

- 사 업 량 : 지역아동센터 42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보조내시: 2018년 1월 중
-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 신청 및 지출 : 2018년 1월 중 ~

**기대효과**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방학 중 다양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으로 성장 도모

## I-2-59.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발달장애 치료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자녀 및 발달지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법42조

###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아동·청소년 발달장애치료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23(대정읍 하모리)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주 2회 개별치료, 주 1회 그룹치료 진행, 월 1회 부모교육 진행
-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 및 발달지연자녀 지원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장애 아동·청소년 및 장애 가족에게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I-2-60.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성인문해교육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 활동 참여기회 확대
- 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생애 능력 향상 지원으로 교육 안전망 구축 및 사회통합 증진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건 명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성인문해교육 지원(정액)
- 위 치 : 서귀포오석학교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주요내용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반, 문해반, 백일장, 시화전 등

※ 성인문해교육 수요집단

- 20세 이상 초등·중학수준 미만 저학력 성인
- 비문해자  
(19세 이상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거나 문장이해 능력이 거의 없는 성인)
- 반문해자  
(19세 이상 낱글자나 단어를 읽을 수 있으나 문장이해 능력은 거의 없는 성인)
-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결혼이민자, 한국국적취득자 등 외국인 주민

**향후 추진계획**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 교부 : 2018년 1월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I-2-61.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성인, 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지원**

**사업의 필요성**

-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교재비 등) 지원을 통해 정규학력 미취득 성인·결혼이주민에게 학습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성인·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지원(정액)
- 위 치 : 서귀포오석학교
- 사 업 량 : 중졸·고졸 검정고시반 운영(주5회/10개월/5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3,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성인·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지원 보조금 교부 : 2018년 1월
- 성인·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지원 사업 추진 : 2018년 1월 ~ 12월
- 성인·결혼이주민 학력보완 교육지원 사업 정산 : 2019년 1월

**기대효과**

-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 향상  
도모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I -2-62.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비문해 소외계층 대상 문자해독능력 및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 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 편성·운영으로 학습욕구 진작 및 평생학습  
실현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운영 지원
- 위 치 : 서귀포오석학교
- 사 업 량 : 비정규학교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3,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운영비 교부 : 2018년 1월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운영 지원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어려운 가정환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상실한 소외계층들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및 기초생활 능력배양 등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진작시켜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

### I-2-63.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문해교육기관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욕구 진작과 학습기회 제공으로 평생교육 체계 확립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건 명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정액)
- 위 치 : 서귀포오석학교
- 사 업 량 : 비정규학교 교육기자재 보완 등 교육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6월
- 총사업비 : 13,4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사업비 교부 : 2018년 1월
- 비정규학교(서귀포오석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2018년 1월 ~ 12월

#### 기대효과

- 비정규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보완·정비, 교육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소외계층들에 대한 학습욕구 진작과 학습기회 제공

### I-2-64.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유도
-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이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청소년,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331,000천원
- 사업주관 : 제주도서관, 한수폴도서관, 동녘도서관,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 주요내용 :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문화 함양을 위한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향후 추진계획

- 도서관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1월 ~ 12월
- 도서관별 자체 사업 평가 : 12월

I -2-65. 제주학생문화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 강좌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학습자의 흥미 및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여건 제공

사업개요

- 대 상 : 제주도민, 학부모, 교직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비 : 39,000천원
- 사업주관 : 제주학생문화원
- 주요내용
  - 평생교육강좌 운영
  - 평생교육동아리 운영
  - 평생교육프로그램 종합발표회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강좌
  - 개설 강좌 선정 : 2회(2월, 8월)
  - 강사 모집 : 2회(2월, 8월)
  - 홍보 및 접수
    - 상반기 : 2018. 3. 5(월) ~ 3. 15(목)
    - 하반기 : 2018. 8. 13(월) ~ 8. 23(목)
  - 대 상 : 제주도민, 학부모, 교직원
  - 프로그램 운영
    - 상반기 : 3. 26(월) ~ 7. 7(토), 4개 강좌, 강좌별 15회(30시간) 운영
    - 하반기 : 8. 27(월) ~ 12. 8(토), 4개 강좌, 강좌별 15회(30시간) 운영
  - 재능나눔 발표회 : 1회 이상
- 평생교육동아리
  - 동아리 등록 : 2018. 2월

- 대 상 : 제주도민, 학부모, 교직원
- 평생교육동아리 운영 : 2018. 3. 5(월) ~ 11. 17(토)
  - 8개 동아리, 동아리별 22회(44시간) 운영
  - 8월 여름방학 기간 미운영
- 재능나눔 발표회 : 1회 이상

### I-2-66. 평생학습관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의 특색을 살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사회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
-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의욕 고취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61,000천원
- 사업주관 : 제주교육박물관, 서귀포학생문화원, 한수폴도서관, 동녘도서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 주요내용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성인의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습동아리 활동 확대 및 지역문화 사랑방 역할 수행

#### 향후 추진계획

- 학부모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6개 평생학습관 연중 운영
-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 6개 평생학습관, 연중 운영

### I-2-67.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 대한 의무교육 및 학력취득 기회 제공

- 교육기회 계속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 유도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

사업개요

- 대 상 : 정규 초·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만 18세 이상인 성인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7,000천원
- 사업주관 : 미래인재교육과
- 주요내용
  - 초·중학교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 운영
  -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 학력인정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초등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 초등학력인정 : 1월 ~ 2월
- 초·중학교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 보조금 교부 : 3월
- 초·중학교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 지도·점검 : 5월
- 2019년도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공고 : 6월

### I -2-68.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의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

사업개요

- 대 상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5개 시설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사 업 비 : 172,000천원
- 사업주관 : 미래인재교육과
- 주요내용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 1월
- 보조금 지원 : 1월 ~ 2월
- 보조금 집행 : 1월 ~ 12월
- 보조금 정산 : 12월

## I-2-69. 검정고시 시행

### 사업의 필요성

-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학력검정을 통해 일정학력 인정 및 상급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 부여

### 사업개요

- 대 상 : 검정고시 지원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66,000천원
- 사업주관 : 미래인재교육과
- 주요내용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연 2회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실시 : 4월
- 2018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실시 : 8월

## I-2-70.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장애학생에게 방학동안 다양한 문화체험 및 예·체능활동 지원으로 학부모에게는 사회활동 참여를 증대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여가선용과 자기개발 기회 제공
-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공연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함께 어울려 서로 존중하는 태도와 실천의지 함양

### 사업개요

- 대상 : 장애학생 학생 40명(제주시 20명, 서귀포시 20명) 및 초·중학교 20개교
- 운영 내용
  - 다양한 문화체험, 특기적성 활동을 통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계절학교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의 악기교육과 합주를 통하여 문화·예술활동 기회 제공(음악캠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5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모 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평가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장애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
-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 문화·예술공연을 통하여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 학생들이 “나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 함양

**I-2-71.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장애학생 및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사업개요**

- 대 상 : 장애학생을 둔 가족(부모, 형제 자매)
- 운영 내용
  - 장애학생 및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25회기 운영
  - 장애학생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생 및 중학생 수준별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부모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성격유형별 자녀 바로 알기, 자녀 양육 스트레스 대처 방안 등
  - 형제자매 결속 프로그램 운영
  - 장애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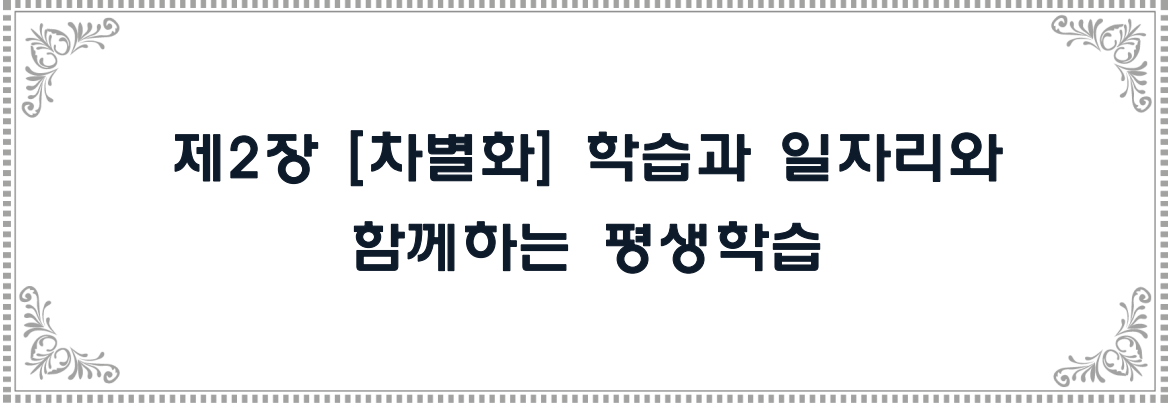
**향후 추진계획**

- 장애학생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공모 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장애학생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 2018년 3월 ~ 12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평가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학생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제2장 [차별화] 학습과 일자리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 II. [차별화] 학습과 일자리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 II. 차별화 학습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의의** 학습형 일자리와 함께하는 차별화된 제주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방향**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산업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중점**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온라인 서비스 강화, 개인맞춤형 교육을 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 대비, 지역산업 연계 및 특화 전문인력의 양성, 대학 등 성인친화적 학습 제공 활성화, 대학의 직업 평생교육 추진

**내용** 평생교육 온라인 서비스망 구축 및 운영,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확대, 정보화교육 확대, ICT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능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제공, 지역산업 특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직업 재활교육 확대 실시,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성인맞춤형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기능 강화, 청년 고용창출 및 역량 강화 제공,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진로 체험 제공, 취업 희망 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

→ 스마트 기반 학습형 일자리 창출 기반구축으로 제주지역 경쟁력 강화

## II-1.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 II-1-1. ICT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급변하는 ICT 신기술 활용 인력의 지속적 확보로 도내 ICT 전문인력 수준 제고
- 빅데이터, SW개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프린팅, 드론, VR/AR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습득 인력 확보로 지역 ICT 산업 육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반영

#### 사업개요

- 위 치 : 디지털융합센터(제주시 침단로 241)
- 사업량 :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시설 및 장비 설치 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30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ICT 관련기업 전문가 의견 수렴 : 2017년 11월 ~ 12월
- 전문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2017년 12월
-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및 운영 : 2018년 1월 ~ 12월

#### 기대효과

- 도내 ICT 종사자(희망자)에 대한 신기술 습득기회 제공으로 산업생태계 육성 기반 조성
- ICT 신기술 습득을 위해 타지역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 해소

### II-1-2. 코딩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코딩교육 확산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체계적·창의적 사고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건 명 :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 사업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 사업량 : 코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교육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비 : 5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코딩교육 프로그램 사업 평가 : 2017년 12월 ~ 2018년 1월
- 2017년 확산사업 계획수립 및 민간위탁 : 2018년 1월 ~ 2월
- 코딩교육프로그램 확산사업 추진 : 2018년 3 ~ 12월

**기대효과**

- 차별화된 코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확산으로 미래의 SW 융·복합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제주의 창의적 인재양성 기반 마련

**II-1-3.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 상담**

**사업의 필요성**

-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이용자 수 및 이용시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 및 건전 인터넷문화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사업개요**

- 건 명 :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 위 치 : 도내 일원
- 사업대상 :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 사업량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 인터넷 중독예방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인터넷 중독예방으로 청소년들의 학업증진과 건전한 정보사회생활 유도
- 학생-교사-학부모간 올바른 정보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

## II-1-4.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지원(5개소)

### 사업의 필요성

-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 위 치 : 도내 일원
- 사 업 량 : 5개소(2,50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10,476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사업공고 및 사업기관 선정 협약체결 : 2018년 2월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실시 : 2018년 3월 ~ 12월

### 기대효과

- 장애인 체감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사회활동 동참 기회 부여
-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제공으로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 II-1-5.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고령자 인구수의 계속적 증가에 따라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지원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 사업개요

- 건 명 : 고령자 정보화교육 지원
- 위 치 : 도내 일원
- 사 업 량 : 2개소(48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8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사업공고 및 사업기관 선정 협약체결 : 2018년 2월
-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실시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고령자 체감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사회활동 동참 기회 부여
- 고령층의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제공으로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II-1-6. 지역 S·W 성장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IT 중소기업 발굴 및 집중지원을 통해 매출증대, 고용 창출 등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
- 우수 IT/SW 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마케팅,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 맞춤형 지원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재정 지원 등)

**사업개요**

- 위 치 : 디지털융합센터(제주시 침단로 241)
- 사업량 :
  - 지역 IT/SW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
  - 지역 IT/SW 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역 IT정책 수립 및 산학연 관계자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세미나·포럼 등 행사 개최
  - 지역 IT/SW 산업환경 기초통계와 조사·분석을 통한 통계조사 수행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44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지역SW 성장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 2018년 1월 ~ 2월

- 사업협약체결(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JTP) : 2018년 2월
- 세부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 : 2018년 3월 ~ 12월

#### 기대효과

- 제주지역 IT/SW기업 보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 매출신장 기여 및 지역 IT/SW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 II-1-7.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 구입

#### 사업의 필요성

- 수요가 많은 음성도서를 추가 구입하여 열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욕구, 지적욕구 충족 등 정보습득능력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시행령 제44조

#### 사업개요

- 건 명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 구입 지원
- 위 치 : 제주시 동광로 31, 6층(이도1동)
- 수행기관 : 제주도문화정보접자도서관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이버접자도서관 서비스 향상 및 정보협력 전산망 구축
- 자료의 형태를 디지털화하여 정보화시대에 대응

####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성도서(CD) 추가 확보로 접자도서관 운영 활성화

### II-1-8.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직기술을 향상시켜 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동법시행령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 프로그램 · 38회
- 운영기관 : 민간전문기관 선정(심사위 구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2,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4개 사업(CAP+ 등) 프로그램 10회 운영 : 2017년 11월까지
- 2017년 사업평가 및 2018년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사업자 공모 및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1월 ~ 12월

## II-1-9.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등의 사업지원으로 고령자에 대한 취업촉진과 고용안정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법」 제26조

사업개요

- 사업량 : 고령자인재은행 2개소 지원
- 운영기관지정 : 고령자인재은행(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인재은행 사업평가 후 인센티브 지급 : 2017년 12월

## II-1-10.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실업자의 취업촉진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6조

사업개요

- 추진목표 : 지역실업자 412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운 영 : 훈련기관(심사위)
- 총사업비 : 446,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지역실업자훈련과정 선정계획 수립 및 승인 계획공고 : 2017년 12월
- 2018년 지역실업자훈련과정 승인 신청 접수 및 선정심사 : 2018년 1월

II-1-11.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사업

사업의 필요성

- 정보화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 활용능력 향상 지원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강사료 지원(5명)

복지관명	관장	소재지	강사인원	운영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윤보철	제주시 516로 3120	1명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김필수	제주시 광양4길 32	1명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총연합회(부형중)
서귀포시장래인 종합복지관	임태봉	서귀포시 인정오름로24	1명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제주시각장애인 복지관	양예홍	제주시 아봉로 433	1명	사회복지법인 삼다 (양예홍)
제주도농아 복지관	문성은	제주시 우령서로 16길 19	1명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오원국)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
- 수행주체 :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들의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사지원 사업 지속 추진

**기대효과**

- 장애인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

**II-1-12.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각장애인의 사회·문화·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자립의지 고취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시행령 제44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 위 치 : 제주시 동광로 31, 6층(이도1동)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점자명함 및 점자도서 제작, 정보화 교육, 대출·열람서비스, 학습 지원 및 점역센터 운영, 사이버점자도서관 운영 등
- 총사업비 : 247,773천원

**향후 추진계획**

- 시각장애인의 교육·문화·사회활동 지원 및 점자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속 추진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 맞춤형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II-1-13. e-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정보화 농업인들의 e-비즈니스 경영·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소득향상 도모
-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e-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농업기술원(서귀포시 중산간서로)
- 사 업 량 : 1개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1월
- 총사업비 : 26,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주 농업인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교육 지속 추진

기대효과

- 고객과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 20% 이상

II-1-14.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시각장애로 인하여 경험의 제약과 각종 활자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 직업과 관련 서적 제작 및 보급
- 시각장애인 전문 도서 보급으로 장애인 교육과 재활 및 일생생활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도서관법」 제44조

사업개요

- 건 명 :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지원사업
- 위 치 : 제주시 동광로 31(제주문화정보점자도서관)
- 사 업 량 : 시각장애인용 점자·음성 도서 40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시각장애인 직업 관련 전문도서 보급, 시각장애인 교육 및 재활 지원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

## II-1-15.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망 구축을 상반기 완료하여 책배달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관리
-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립 운영이 어렵고, 장서 확충에 제한이 있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도서관 장서 기반의 지식정보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정·육성)

### 사업개요

- 건 명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운영
- 위 치 : 도내 일원
- 사 업 량 : 상호협력망 시스템 관리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도서관 상호협력망 서비스 시행 : 2018년 1월 ~ 12월 31일

### 기대효과

- 도내 도서관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에게 도서 통합검색 및 회원증 통합이용 등의 보다 편리한 혜택을 제공

## II-1-16.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통신비

### 사업의 필요성

-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망 운영을 위한 통신비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정·육성)

### 사업개요

- 건 명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통신비
- 위 치 : 도내 일원
- 사 업 량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통신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도서관 상호협력망 서비스 시행 : 2018년 1월 ~ 12. 31.

**기대효과**

- 도내 도서관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에게 도서 통합검색 및 회원증 통합이용 등의 보다 편리한 혜택을 제공

**II-1-17.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정보화교육 상설 교육장을 활용한 자격취득 및 취업지원 정보화교육으로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도민역량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 제35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중앙로 165(5층) 도민정보센터
- 사업량 : 30개 과정 · 1,860명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2018년 12월
- 총사업비 : 107,030천원
- 주요내용
  - 실생활 정보화 : 스마트폰 기본 및 활용, 블로그만들기 등 12개 과정
  - 능력배양 정보화 : 한글 및 엑셀활용 등 7개 과정
  - 자격증 대비 : GTQ 포토샵,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4개 과정
  - 실버정보화 :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6개 과정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2월 : 교육결과 분석 및 2018년 도민 정보화교육 계획수립
- 2018년 2월 ~ 12월 : 도민정보센터 정보화교육 운영

**기대효과**

-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으로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 및 도민의 역량 강화

## II-1-18. 4차산업혁명 선도 창의적 프로그램 공모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생들의 유연성, 창의성, 융합 능력 함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사업내용 : 학년 통합, 탐구연구사업, 교과 연계 융합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연계 특화 프로그램 등
- 추진방법 : 학교별 사업 공모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학교 공모 프로그램 운영 추진

### 기대효과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사고, 공동체 의식,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등 미래핵심 역량 신장과 능동적 학습 경험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

## II-1-19. 시각장애인 제주점자도서관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대출 및 점자번역출력, 점자기록물 관리 등으로 정보욕구 충족 및 사회참여 확대 증진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시지회
- 사업내용 : 점자도서대출, 점자번역 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6,16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6월 시각장애인에게 최상의 정보제공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의 정보욕구 충족 및 사회활동 활성화

**II-1-2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8개 마을)**

**사업의 필요성**

- 정보화마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전자정부법」 제65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25조

**사업개요**

- 건 명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8개마을)
- 위 치 : 정보화마을 8개소(영평, 김녕, 저지, 와흘, 추자, 우도, 상명, 도두)
- 사 업 량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8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3,246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으로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기반 마련

**II-1-21.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지역중심의 과학문화 확산 운동 전개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청소년의 과학적 탐구력 증진 및 과학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3조 제2항

사업개요

- 건 명 :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 위 치 : 대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안덕, 송산, 표선, 동홍), 삼매봉 도서관 6개소
- 사업량 : 재미있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운영장소별 20차시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교부 : 2018년 1월 ~ 2월
- 생활과학교실 운영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과학에 대한 흥미 유도 및 과학교육의 활성화, 이공계 진로선택의 기회 마련

II-1-2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의 필요성

- 농어촌에 정보 접근 기회 제공 및 주민 정보화교육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자립형 마을공동체’로 육성하고자 조성된 정보화마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마을별로 프로그램관리자를 육성·지원함으로써 정보화마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전자정부법」 65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25조 제1호(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비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 대상마을 : 예래동 상예, 표선면 토산2리, 남원읍 한남, 대천동 월평, 안덕면 감산, 성산읍 수산1리, 대정읍 구억, 무릉2리
- 사업량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체경비 8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3,246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정보화마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체계 정립

기대효과

- 지속적인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추진으로 정보화마을 수익성 향상
- 지역 거주 여성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IT분야의 일자리 창출 일익

II-1-23.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함양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추진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23조(정보화교육)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 교육기간 : 2018. 2 ~ 10월
- 교육대상 : 지역 시민 20회, 240여명
- 교육장소 : 제주시 본청 정보화교육장, 마을정보사랑방, 정보화마을 정보화 교육센터 등
- 총사업비 : 23,4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 2017년 12월
-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과정 개설 및 교육 강화 : 연중

기대효과

- 계층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수준 향상
- 정보화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쟁력 강화

## II-2. 산업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 II-2-1. 제주관광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관광시장 다변화 및 관광 트렌드에 따른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관광종사원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제주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 마련
  - 관광종사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관광인력 양성 및 관광종사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제주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92조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1월 ~ 12월
- 대 상 : 관광종사원, 도민
- 사업내용 : 관광종사원 대상 과정별 커리큘럼 교육,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
- 사업수행 : 제주관광공사
- 총사업비 : 25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제주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기본 계획 및 세부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제주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사업 실시 : 2018년 2월 ~ 12월

#### 기대효과

-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관광종사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관광시장 다변화에 따른 외국어 구사능력 제고 및 제주관광 서비스 품격 향상

### II-2-2.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중국 사드 관련 조치 등 제주방문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고 무슬림(중동·동남아 지역) 관광객 등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
- 무슬림 관광객 등을 위한 소수언어 관광통역 안내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소수언어권 관광통역 전문가 양성이 시급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92조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1월 ~ 12월
- 대 상 : 제주도민(소수언어 관광통역 안내사 지원자)
- 사업내용 : 마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 사업수행 : 제주관광공사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사업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사업 실시 : 2018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을 통한 관광시장 다변화 및 FIT 시장 확대
- 무슬림 관광객 등을 위한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II-2-3.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

사업의 필요성

-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현장 실습위주의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위험 대처능력 향상으로 관광객 안전확보 및 국제안전도시 이미지 구축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운수종사자 45명)
- 교육시기 : 2018년 1 ~ 12월
- 지원방법 : 교육(연수)비 70% 지원
- 교육장소 :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센터 교육 및 택시 선진지 연수
- 교육내용
  - 자동차 특성 이해 및 운행시 유의사항, 안전운행 요령 교육
  - 관광객 등에 대한 친절서비스 소양교육 등
- 총사업비 : 15,75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개인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점차적으로 확대추진

기대효과

- 체험교육 실시로 교통사고 줄이기 효과가 발생되어 국제안전도시 이미지 구축

II-2-4.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

사업의 필요성

-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현장 실습위주의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위험 대처능력 향상으로 관광객 안전 확보 및 국제안전도시 이미지 구축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운수종사자 30명)
- 교육시기 : 2018년 1월 ~ 12월
- 지원방법 : 교육(연수)비 70% 지원
- 교육장소 :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센터 교육 및 택시 선진지 연수
- 교육내용
  - 자동차 특성 이해 및 운행시 유의사항, 안전운행 요령
  - 관광객 등에 대한 친절서비스 소양교육 등
- 총사업비 : 10,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

기대효과

- 체험교육 실시로 교통사고 줄이기 효과가 발생되어 국제안전도시 이미지 구축

II-2-5.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아카데미 사업

사업의 필요성

-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을 통합 운영하여 교육기관 간 역할분담과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재육성시스템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전략 및 마케팅, 조직관리, 자원개발 등 교육프로그램의 실시로 청년, 시민, 사회적경제 종사자 등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 제주지역사회 문제해결 또는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 모색과 실천을 위한 사례를

발굴하고 시민참여형 사회적경제 생활문화 확산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4조 및 제25조

사업개요

- 건 명 : 사회적경제 종합아카데미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시민대학,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등 9개 과정 운영(연인원 3천명)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종합아카데미 기본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사회적경제종합 아카데미 사업 수행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 제공과 연계를 통한 긍정적 인식확대와 함께 사회적경제 적용가능 지역 아이템 발굴
-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전문적 기업운영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활성화
- 제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맞춤형 인력 확보로 경쟁력 향상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신진인력 발굴·양성을 인력 선순환시스템 마련

## II-2-6. 대규모 투자사업 연계 인력양성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신화역사공원 투자기업인 람정제주개발(주)의 복합리조트 개장에 따라 도민 대상 양질의 일자리 수요 발생
  - 도내 다양한 계층의 경력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채용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력양성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대규모 투자사업 취업연계 취약계층 인력양성(도내)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약 8개월)
- 수행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인력양성대상 :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장애인, 결혼이민여성 등  
 ※ 2017년 시범사업으로 2개 과정 30명 운영, 30명 취업(JDC 예산부담)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사업계획 수립 및 컨소시엄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6개 기관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 교육 실시  
 - 1기 : 상반기(2018년 2월 ~ 5월), - 2기 : 하반기(2018년 8월 ~ 10월)
- 취업알선 및 직무 배치 : 1기(2018년 6월), 2기(2018년 11월)

**□ 기대효과**

- 투자기업 일자리 창출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복합리조트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지원
- 도내 주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제주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취업연계 지원의 범위 확대를 통해 제주 취업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II-2-7.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지역단위 비영리단체(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포럼, 연구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  
 ※ 사업시행근거 :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55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공모사업(고용노동부)
- 총사업비 : 4,193,000천원(국비 80% 도비 20%)
- 주요내용 : 일반 소규모 일자리창출 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도 정부예산 확정 후 특화, 연구, 포럼사업 및 프로젝트 사업 등 도내 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 추진
  - 사업공모 : 2017년 12월 ~ 2018년 1월
  - 사업추진 : 2018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지역 일자리관련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시책 추진

II-2-8.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장·노년층에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취업교육센터 신규 설치·운영으로 맞춤형 인재 양성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사업개요

- 사업수행 : 중앙(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기관
- 위 치 : 제주시 수덕9길 15(노형동) 제주시니어클럽
- 사 업 량 : 교육센터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1기 취업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2018년 5월 ~ 12월

기대효과

- 장·노년층 구직자에 자격증 취득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

II-2-9.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장애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단체에서 직장체험 연수 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연수기관 :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사 업 량 : 동계 및 하계방학 취업연수(연 2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학생 2018 동계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수립

**기대효과**

-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학생들에게 직업탐색 및 취업현장 체험기회 제공
- 취업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 육성 도모

**II-2-10. 안마사 교육사업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각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여 안마사 직종분야에서 직업인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 직업인으로 양성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

**사업개요**

- 건 명 : 안마사교육운영사업
- 위 치 : 제주시 서사로 149-1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90,000천원
- 수행주체 : (사)대한안마사협회제주지부(지부장 김두홍)

**향후 추진계획**

- 2018년도 입소생 모집

**기대효과**

- 안마업의 인식전환 및 치료안마의 비존 제시, 치유전문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정적 소득 유지 및 자립생활 영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II-2-11.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지원**

**사업의 필요성**

-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인에게 농촌생활 적응 및 영농 기초기술교육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성공적인 농촌 정착 유도

사업개요

- 건 명 : 귀농영농기술교육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3,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 2018년 2월
- 귀농인 대상 감귤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2월 ~ 10월

기대효과

- 신규농업인 대상 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운영으로 성공적 영농 정착 유도
- 영농단계별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및 농촌의 활력화 도모

## II-2-12.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IT, 4차산업혁명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인 전문성 향상
- 분야별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농가주도적 학습분위기 조성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전문교육 운영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110회 6,00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영농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교육 및 4차산업혁명시대의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운영 : 110회 6,000명

기대효과

- 교육수요 맞춤형 열린교육 추진으로 최신 농업기술 보급 및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

## II-2-13.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교육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품목별 농업인의 자율적 연구모임 육성 및 촉진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교육  
농업인연구회의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연찬회로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건 명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 위 치 :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우도면
- 사 업 량 : 10개회, 195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6,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기술 연찬 추진

### 기대효과

- 품목별 핵심기술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 현장 애로문제 해결
-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으로 정보제공 및 농가 경쟁력 향상

## II-2-14.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신규 농업인 및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건 명 :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기술교육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신규농업인 교육 100명, 현장실습 5개팀
- 사업기간 : 2018년 1월~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교육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지속 개발

기대효과

-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수준별 교육을 통한 영농정착에 도움
- 성공적인 농업·농촌 조기정착으로 활력 있는 농촌건설

II-2-15.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농촌 발전비전 제시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40세 미만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청년농업인 경쟁력 강화 제고사업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대효과

- 4차산업혁명시대 농업을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이끌 농업후계인력 양성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 신규진입 인력육성 지원
- 청년농업인을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지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II-2-16.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에 맞는 품목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농업인 육성
- 농업인의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자기주도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 사업시행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 위 치 : 제주대학교
- 사 업 량 : 7개 품목 전공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5기(2017년~2018년) 제주농업마이스터 교육운영 및 2018년도 교육생 모집

기대효과

- 제주의 지역특화를 살린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특화된 농업개발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 II-2-17. 미래인력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전문농업기술교육 강화로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경영 CEO 양성
- 첨단 1차산업을 선도하고 시대변화에 대처하는 지역사회 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전문교육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농업인전문교육과정 6과정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1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영농문제 해결 중심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및 소비자 중심 열린교육과정 운영 : 7과정 10,000명

기대효과

-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육성

## II-2-18. 농어촌 관광경영자 과정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관광과 농업을 접목시켜 소비자 욕구충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체험지도사 양성
- 농어촌관광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해 제주 농어촌관광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농어촌관광의 전문경영인 양성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건 명 :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운영
- 위 치 : 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1개소 5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소양과 능력을 갖춘 농촌체험지도사 양성으로 농촌관광의 질적 성장을 통한 농촌관광(마을, 농장)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촌자원 가치 향상
- 제주관광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영역으로 개발, 향후 6차산업화 추진과 연계한 농업비전 제시

### 기대효과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농어촌관광 질적 향상 도모
- 농어촌자원을 활용 농촌관광 전문경영인 육성으로 농촌체험 및 농어촌 관광 활성화

## II-2-19. 강소농 육성 교육 교재

### 사업의 필요성

- 강소농 경영체 자립역량 강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관리, 평가·환류
- 강소농 지원방식 및 체계 구축, 성과홍보 등으로 지속적 관리 기반 강화

### 사업개요

- 건 명 :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 위 치 : 농업기술원

- 사업량 :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6,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강소농 성과대전 개최 : 2018년 10월 25일 ~ 10월 28일(서울코엑스)
- 강소농 사업 평가회 : 2018년 11월

**기대효과**

- 강소농 육성지원 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모델 정착

## II-2-20.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인 및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사업개요**

- 건 명 :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업량 : 20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4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교육 : 2개 과정, 6회, 180명

**기대효과**

-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수준별 교육을 통한 영농정착에 도움
-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으로 활력 있는 제주 농촌건설에 기여

## II-2-21.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인의 창업역량강화 및 농업기술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 현장실습형 귀농창업 교육, 정보제공 및 설계지원으로 귀농인 맞춤형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귀농창업교육 10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51,432천원

향후 추진계획

- 귀농창업 심화코칭 및 컨설팅(2단계)→창업지원(3단계)

기대효과

- 귀농인의 창업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으로 농촌활력화에 기여

## II-2-22.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전문 농업 기술교육 강화로 경쟁력있는 전문 농업경영CEO 양성
- 첨단 1차산업을 선도하고 시대변화에 대처하는 지역사회 지도자 역량강화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전문교육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농업인 전문교육과정 6개과정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1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영농 문제해결 중심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및 소비자 중심 열린 교육과정 운영  
: 7개 과정, 10,000명

기대효과

-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농업인 육성

## II-2-23.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및 현장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품목농업인연구회의 경영능력을 높이고 영농현장 대처 역량 강화
- 연구회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

### 사업개요

- 건 명 :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품목농업인연구회 3개회 83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품목농업인 연구회원 역량강화 연찬 운영 : 3개회 83명

### 기대효과

-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 및 품목별 전문경영능력 향상

## II-2-24. 여성농업인·소비자단체 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안목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정보습득 기회 마련
- 농업 및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능력 함양

###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농업인·소비자단체 교육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4,20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농촌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소비자의 요구파악 및 도시 소비계층을 겨냥한 여성농업인의 능력함양
- 지역 농산물의 가공 및 서비스상품화 기회 모색

II-2-25. 농산물 가공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농촌지역사회 주체인력으로서 역량배양 필요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상품 개발 및 가공기술 보급교육 지속 필요

사업개요

- 건 명 : 농산물 가공교육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월림7길 90(서부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농업인대상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가공상품화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확대 : 1,000명
- 지역 문화행사 등 연계 농산물 상품화 홍보 및 소비촉진 활동 강화

기대효과

- 지역 농산물 가공 기술 및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인 역량강화 및 자긍심 고취
- 농촌자원을 활용한 상품화 기술을 배양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II-2-26.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신규 농업인 및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사업개요

- 건 명 :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 위 치 :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
- 사 업 량 : 5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도 현장실습 교육 계획수립 및 참여 귀농인 사후관리

기대효과

- 체계적인 농업기술 습득 희망자에 대한 기초영농기술과 농업 정보제공
- 단계별 현장실습을 통한 성공적인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II-2-27. 농가수요 대비 교육용 드론 구입

사업의 필요성

- 농촌인력 부족 및 악성 노동력 해결을 위한 농업용 멀티콥터 활용
- 4차산업혁명시대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멀티콥터 활용, 무인방제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 건 명 : 농가수요 대비 교육용 드론 구입
- 위 치 : 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12대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드론활용 교육강사 양성 및 농업인 대상 교육 추진

기대효과

- 드론 방제 활용 농업인 교육 양성 : 20명/연간
- 약제 방제 악성 노동력 절감 : 80%
- 적기 병해충 방제 및 수확기 공중살포로 상품성 향상

## II-2-28.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품목교육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드론 방제 활용 농업인 교육 양성: 20명/연간
- 약제 방제 악성 노동력 절감 : 80%
- 적기 병해충 방제 및 수확기 공중살포로 상품성 향상

### 사업개요

- 건 명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교육 교재 제작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당면 품목영농교육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3,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영농문제 해결 중심 당면영농 기술교육 운영 : 1회, 100명
-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250회, 7,500명

### 기대효과

- 제주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육성 및 계획영농 확산

## II-2-29. 기초 영농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 사업의 필요성

- 기초영농교육 운영으로 신규 진입농가의 안정적 영농 정착 기여
- 농업기술원 교육 홍보로 내실 있는 교육운영 및 평생교육 체계 도모

### 사업개요

- 건 명 : 기초영농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기초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15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기초영농교육 과정 운영 : 2과정, 6회, 180명

**기대효과**

- 기초영농기술 교육으로 농업정착 기대

**II-2-30. 원예치료사 양성 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가 실버산업의 최적지로 부각되면서 원예치료에 대한 관심 고조
- 원예생활과 기술교육을 통한 원예치료사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체 및 정신지체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고령화시대 복지농촌 구현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원예치료사 양성과정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업량 : 1개 과정, 7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원예치료사 양성과정 운영계획 수립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강사 초청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원예활동을 통한 대체의학 발굴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 농업의 새로운 영역 개발로 향후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

**II-2-31. 우리쌀 활용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우리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급식관계자 및 농업인 전문리더를 육성하여 쌀 소비저변을 확대

사업개요

- 건 명 : 우리 쌀 이용식품가공기술교육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사 업 량 : 38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1,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접수 : 2018년 1월 ~ 2월
- 우리쌀 활용 교육운영 : 2018년 2월 ~ 10월
- 우리쌀 활용 보급행사 : 2018년 7월 ~ 8월

기대효과

- 우리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으로 지속적인 쌀 소비기반 확대 조성
- 실생활에 적응 가능한 쌀 소비전문 현장리더 양성

## II-2-32.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일부 사설 친환경단체의 무분별하고 검증되지 않은 친환경농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용적 활용방안을 모색
- 친환경농업 전문가 육성을 통한 청정 제주농업 이미지 제고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위 치 : 제주대학교
- 사 업 량 : 1개소 5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계획 수립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커리큘럼 마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교육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육성

II-2-33. 농업인단체 현장시찰 및 교육

사업의 필요성

- 농업농촌의 핵심리더인 농업인단체 회원들의 전문 기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 농업인 전문교육분야 외연확장을 통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제주농업의 융복합 발전 가능성 모색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관련단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단체 현장시찰 및 교육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13개회, 18개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36,08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감귤5개년 혁신계획 실천에 따른 농업인 단체별 회원 교육 등 : 10회 500명

기대효과

- 농업인단체의 의식교육으로 제주농업의 방향성 제시 및 농정시책 동반자 양성 기여

II-2-34. 농업인단체 교육지원(동부)

사업의 필요성

- 과학영농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
-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단체육성지원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3개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6,4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사업계획수립 : 2018년 1월 ~ 2월
- 단체별사업추진 및 완료 : 2018년 3월 ~ 11월

기대효과

- 농업인 단체지역 농업선도자로서 역할 증대 및 자긍심 고취
-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

II-2-35. 농업인단체 교육 및 활동지원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단체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핵심지도자로 육성
- 농업·농촌의 기능적 가치 홍보 및 확산 활동 전개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단체 교육활동 지원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2개회 농촌지도자회 4-H본부
- 사업기간 : 2018년 1 ~ 12월
- 총사업비 : 14,4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세부일정 및 세부계획 수립 : 2018년 2월
- 단체별 교육 및 연찬 추진 : 2018년 3월 이후

기대효과

- 농업인 단체 지역농업의 선도자로서 역할 증대 및 자긍심 고취
- 농업·농촌의 핵심지도자로 육성 및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

**II-2-36.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의 경영·마케팅 및 조직화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문 경영능력 제고

사업개요

- 건 명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사 업 량 : 11개회, 55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품목별 연구회 육성 계획 수립 : 2018년 2월
- 품목별 연구회 별 연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8년 2월~10월

기대효과

- 품목별 전문경영능력 향상 및 품목별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
-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 및 기술농업의 조기 정착

**II-2-37. 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운전 체험교육 지원으로 운수종사자의 운전 행태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 등 대중교통 안전 운행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사업개요

- 건 명 : 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지원

- 대 상 : 버스 운수종사자 30여명
- 사업수행 :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8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지원 협의 : 2018년 2월
-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교부 : 2018년 3월
- 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체험 교육(보조사업자) : 2018년 3월 ~ 6월 중

**기대효과**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제고
- 관광객 및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II-2-38. 버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사업의 필요성**

-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통관련 법규, 안전수칙, 친절서비스 향상 등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34조

**사업개요**

- 교육대상 : 버스 운수종사자 1,400여명
- 교육장소 : 교통안전공단
- 교육시간 : 신규 16시간, 보수 4시간, 수시 4시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대행사업 업무 협의 및 시행 : 2018년 1월
- 사업비 교부 및 교육시행 : 2018년 2월 ~ 11월

**기대효과**

-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문 및 친절교육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운행 및 친절 서비스 마인드 향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 II-2-39.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최근 급변하는 관광산업에서 제주 관광의 질(質)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고객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하여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신뢰 증진

※ 사업시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4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지원
- 대 상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500여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1월
- 보조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 교육내용
  - 관광객 등에 대한 친절서비스 소양교육
  -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을 위한 외국어 기본회화교육
  - 안전운행 수칙 및 탑승객을 위한 안전운전 교육 등
- 사 업 비 : 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교육 지원사업계획 수립 : 2018년 1월
-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교부 : 2018년 2월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 실시(보조사업자) : 2018년 3월 ~ 7월
-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등 : 2018년 10월

### 기대효과

- 서비스 의식전환을 통한 고객 맞춤형 응대 서비스 향상
- 관광객 등 이용객에게 안전운행 및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이미지 개선

## II-2-40.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전세버스는 관광 및 통학버스 등 주로 단체이용객 수송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고예방이 최우선적으로 필요

- 전세버스 운전자 대상 현장실습 위주의 안전운전 체험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실시를 통한 안전운행 유도로 이용객 안전 확보 및 위험 대처능력 향상
- ※ 사업시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4조

사업개요

- 건 명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 교육
- 대 상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200여명
- 보조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 교육시기 : 2018년 1월 ~ 11월
- 교육내용
  - 대형버스의 자동차 특성 이해 및 운행시 유의사항
  - 도로환경별 주행코스 운행 실습 등 안전운행 요령, 체험 교육 등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 및 체험 교육 지원 사업계획 수립 : 2018년 1월
-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교부 : 2018년 2월
- 일정별 안전 및 체험교육 실시(보조사업자) : 2018년 2월 ~ 9월
-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등 : 2018년11월

기대효과

- 체험 및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으로 관광객 등 이용객 안전확보, 안전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

II-2-41. 제주청소년 건축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의 미래세대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주건축의 잠재력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건축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제주건축의 인적 인프라 확충 및 미래경쟁력 확보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건축기본계획 중점과제」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 청소년 건축학교 운영
- 위 치 : 도 전역

- 사업량 : 청소년 창작그룹별 미래주택 만들기 체험 및 전문강사 초청 특강 등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2018년 9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3 : 건축학교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단체 협약
- 2018년 3. ~ 7 :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참가자 모집
- 2018년 8. : 건축학교 개최

**기대효과**

-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제주의 건축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정립 함으로써 제주건축의 잠재적 전문인력 확충 및 미래경쟁력 확보

**II-2-42. 세월호피해자 직업재활훈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4·16세월호 피해자 중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대해 직업 재활 참여수당 지원으로 원활한 사회생활 복귀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대 상 :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11명
- 총사업비 : 52,800천원
- 사업내용 : 세월호피해자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참여수당 지원  
- 교통비, 식비 등 정액 지원 (1인당 월 400천원 /연 12개월)

**기대효과**

-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직업 재활 훈련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 및 재활 의지 고취

## II-2-43.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프로그램운영 및 전승 활성화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 공연공간인 전수교육관의 전략적 이용을 강화하고, 지역 무형문화재의 활용 및 향유 장소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수관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필요
- 다양한 무형문화 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및 일상화  
※ 사업시행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 사업개요

- 건 명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프로그램운영 및 전승 활성화 사업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무형문화재전수관 프로그램 운영, 무형문화재 전통학교 운영 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42,5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공기관 협의 : 2018년 1월
- 사업별 착수 및 최종보고회 : 2018년 2월 ~ 12월

### 기대효과

-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전통문화 향유의 거점 공간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확대
- 다양한 무형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승자의 전승의욕 고취 및 대중과 소통을 통해 제주 전통문화의 진수를 알릴 수 있는 기회 제공

## II-2-44. 어선 안전조업 체험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연·근해어선 먼 바다 조업 증가 추세로 어선사고 발생도 증가
- 조업중 어선화재, 기상악화 및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어선사고 발생으로 어선 안전조업 체험 현장 교육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지역별 순회교육(3 ~ 4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어선원 안전조업 현장체험 순회교육 시행 : 2018년 2월 ~ 5월

기대효과

-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을 통한 해양사고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
- 어선화재 등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 및 어업인 재산보호

II-2-45. 제주 향토음식 창업 요리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전통 향토음식의 전통조리법 전승 및 현대인들의 트렌드에 맞게 스토리텔링을 통한 마케팅 능력 배양, 창업에 대한 차별성 강화
- 음식 관광 자원인 전문향토음식 조리사 인력 배출로 전문향토음식점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4호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명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제2기로 운영)
- 총사업비 : 12,000천원
- 사업내용 : 향토음식 교실운영에 따른 재료비, 강사료 등 지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향토음식교실 교육계획 수립 : 2018년 1월
- 2018년 향토음식교실 참가자 공모 : 2018년 2월
- 보조금 심의 : 2018년 2월 ~ 3월
- 사업추진 : 2018년 3월 ~ 11월

기대효과

- 점차 잊혀져 가는 전통향토음식 전승 기회 확보
- 음식관광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있는 향토요리 전문요리사 양성으로 관광외식 산업 조리 인력 확대
- 전문향토음식 조리법 습득으로 향후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II-2-4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보강 사업

사업의 필요성

- 구인수요가 높은 IT 및 전산회계 등 전문직종 직업교육훈련 시설 장비 보강을 통해 질 높은 직업교육훈련으로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 센터의 지정)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시설 장비보강
- 위 치 : 제주도 중앙로 165, 서귀포시 부두로 3, 중산간 서로 212
- 사 업 량 : 3개소
- 총사업비 : 40,000천원

기대효과

-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3개소) 내실화 운영 지원을 통한 여성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촉진 등

II-2-47. WISSET(이공계 여성 인재육성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이공계 과학기술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출 촉진
- ※ 사업시행 근거 :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이공계여성 인재육성지원사업

- 위 치 : 도내 일원
- 사업량 : 제주대학교 WISET 제주지역센터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7,000천원

기대효과

- 이공계 과학기술분야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과학기술분야로의 관심 제고

## II-2-48.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지원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업체 및 투자기업 등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 사업량 :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6개 분야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사전 여성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체계적 취업연계 서비스 마련

기대효과

- 도내기업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및 고용 연계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도민 고용 창출 극대화

## II-2-49.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고전압 복합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용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

- 전기차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 등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 운행 확보

사업개요

- 건 명 :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개발
  - \* 교육내용 : 전기차 안전운전 및 고장이나 사고시 대처방법, 충전기 사용에 대한 안내 등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2월
- 수행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계획수립 : 2018년 3월
- 2018년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실시(5회 예정) : 2018년 5월 ~ 12월

기대효과

- 전기차의 환경적·경제적 효과 홍보 및 안전교육 강화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전기차 운행 안정화에 기여

## II-2-50. 미래꿈나무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국내 어느 지역보다 제주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 골프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좋으나, 학생 골프선수가 활동하기에는 전문 양성 기관이 매우 미흡한 실정
-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골프의 메카’ 제주 이미지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27조

사업개요

- 건 명 : 골프인재 발굴·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미래골프아카데미 운영(상·하반기, 서귀포지역)
- 사업시행주체 : 제주대학교
- 총사업비 : 1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도 미래골프 아카데미 운영

**기대효과**

- 체계적인 골프 교육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및 가치관 형성과 성취동기 발현기회 제공

**II-2-51.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

**사업의 필요성**

-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 및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후계농업인의 육성
- 창의적, 미래지향적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 경영 및 신농업 지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 ※ 지원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 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사업개요**

- 사업량 : 93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6,000천원
- 사업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 사업내용 : 강사료, 교재 제작비, 교육여비 등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 : 2017년 11월 ~ 12월
- 추천대상자 선정 및 평가의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2018년 2월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심의 및 선정 : 2018년 3월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추진 : 2018년 4월 ~ 6월

**기대효과**

- 급변하는 세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정예 후계농업인 육성
- 젊은 농업인 육성으로 6차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가치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 II-2-52.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도전지역 안전농산물 생산지역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희망농가에 대한 친환경농법, 친환경농자재 사용법 교육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건 명 :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 지원대상 : 도내 친환경농업 교육기관
- 사업량 : 600명(3개기관)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3,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친환경농업교육기관에 대한 공모절차 이행(연교육계획 징구)
- 2018년 2월 ~ 12월 : 친환경농업 확산교육기관 지정 운영

### 기대효과

- 친환경인증 취득을 위한 관행농가의 친환경농법, 농자재 등에 대한 교육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 II-2-53.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여건의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안정적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제4조(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사업량 : 160명

- 사업자 : 도내 귀농·귀촌교육 가능 단체
- 총사업비 : 33,000천원
- 사업대상 : 도내 예비 귀농인
- 사업내용 :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비, 홍보비 등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2018년 2월
- 상·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 : 2018년 4월 ~ 9월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정산 : 2018년 5월 ~ 12월

**기대효과**

- 귀농가족의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 적응교육 실시로 조기 정착에 기여
- 농촌인구 유입으로 농촌 고령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II-2-54. 해양구조물관리 취업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역 건설산업과 연계하여 방파제 시설 및 양식장 등 해양토목 분야를 융복합하여 해양구조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업계의 전문인력난 해소와 제주 해양분야 전문인력 양성·활용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해양구조물관리 취업지원사업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지원대상 : 인력양성과정 운영기관(공개모집)
- 사업량 : 해양구조물 점검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 2017년 12월
- 사업자 공모 및 선정 : 2018년 1월
- 사업 추진 : 2018년 2월 ~ 12월
- 사업 정산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지역 해양 건설 인력 및 구조물 관리에 따른 구인난 해소 기여
-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직업 귀천(貴賤)의식 지양 문화 마련
- 특수직종 종사자 확보를 통해 해양구조물 관리의 노하우 및 경쟁력 확보

II-2-55.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수산계 대학의 인력 및 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산인 리더 양성 저변확대
- ※ 사업시행 근거 :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해양수산업전문인력 양성)

사업개요

- 건 명 :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 위 치 : 제주대학교(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1동)
- 사 업 량 : 교육생 약 6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9년 2월(계속사업)
- 총사업비 : 103,3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원계획 수립 : 2018년 1월
- 협약체결 : 2018년 2월
- 과정운영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수산업 경영교육을 통하여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인력양성 저변 확대
- 제주지역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리더 양성

II-2-56. 노숙인 자활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노숙인들의 음주 지양을 위한 절주 프로그램 및 적절한 취미생활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활용 및 대인관계기술 습득으로 자활의지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31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 사업량 : 노숙인 대상 취미활동 및 여가활용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중 사업공모
- 2018년 2월 중 사업자 선정 및 지원

기대효과

- 거리 노숙인의 재활의지 강화로 사회통합 도모

## II-2-57.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존감 고취 및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 제11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7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역량강화교육 운영비 지급 및 참여자 관리로 체계적인 교육 주도

기대효과

-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성 및 소양교육 진행으로 참여자의 역량강화·자긍심 고취를 통한 탈빈곤 촉진

## II-2-58.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FTA 대응 방안 모색 및 농업소득 향상
- 수요자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 교육 욕구에 부응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
- 위 치 : 제주시 일원(지역농협 10개소)
- 사 업 량 : 성공대학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농업성공대학 지원계획 수립 : 2018년 2월
- 농업성공대학 교육생 모집 및 선발 : 2018년 2월 ~ 3월
- 농업성공대학 운영 및 사업비 정산 : 2018년 4월 ~ 12월

### 기대효과

- 농산물 수입 개방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FTA 대응 방안 모색 및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

## II-2-59.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 교육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사회, 경제 및 시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 등 교육사업(워크숍 등)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

###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교육사업
- 지원대상 : 제주시 여성농업인단체

- 사업량 :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단체 주관 교양·교육사업 지원

**향후 추진계획**

- 지원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사업대상자 공모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018년 1월 ~ 2월
- 사업 시행 및 정산 : 2018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각종 교육 등에서 소외되는 여성농업인에게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및 여성농업인단체 활성화 도모

**II-2-60. 여성단체 능력개발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직기술을 향상 시켜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 시행 근거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동법시행령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 프로그램 · 38회
- 운영기관 : 민간전문기관 선정(심사위 구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4개 사업(CAP+ 등) 프로그램 10회 운영 : 2017년 11월까지
- 2017년 사업평가 및 2018년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사업자 공모 및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1월 ~ 12월

## II-2-61.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주민과 지역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채용과 고용 기회 제공
- 서귀포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관광인재 교육, 현장실습, 취업관리 지원 등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8년 1월 ~ 2월
- 관광인재 육성교육 참가자 모집 : 2018년 3월
- 관광인재 교육 : 2018년 4월 ~ 5월
- 취업지원 및 커뮤니티 행사 등 : 2018년 6월 ~ 7월
- 민간위탁사무 정산 및 평가 : 2018년 8월

### 기대효과

- 관광인재 육성을 통한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및 인적서비스 향상

## II-2-62. 귀농·귀촌 창업연계 교육과정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인 대상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정착을 제고 및 초기 정착과정의 어려움 해소
  - ※ 사업시행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사업개요

- 건 명 :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창업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최근 5년 이내 서귀포시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중 귀농귀촌 기본교육 이수자
- 기 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연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8년 1월
- 교육프로그램별 세부계획 수립·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 운영 : 1월 ~ 12월

**기대효과**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기본교육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심화·창업연계과정 교육운영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기반 조성 지원

**I-2-63.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 대학운영 위탁**

**사업의 필요성**

- 1차산업 종사자 전문 경영인 양성 및 선진사례 공유를 통한 경쟁력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 농·수·축·임업인대학 운영
- 사업량 : 5개 대학 / 250여명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 주 최 : 서귀포시 / 농협서귀포시지부
- 주 관 : 서귀포시 산림조합, 서귀포시 지역농협
- 총사업비 : 1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대학운영 세부계획 수립 : 2018년 1월
- 대학 개강 및 강의운영 : 2018년 3월 ~ 11월

**기대효과**

- 현장 중심, 선진 사례 공유를 통한 1차 산업 종사자 및 산업 경쟁력 강화

**II-2-64. 지역경제 활성화 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선진 경영기법 및 경영전략 제공을 위하여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변화에 맞춰 대응 전략을 모색으로 지역일자리 우수모델을 발굴 및 확산에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 및 제54조(보조금)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경제 활성화 상공인 역량강화 사업(보조율 70%)
- 위 치 : 서귀포시 중앙로 105, 제주시상공회의소 서귀포시상공회
- 사 업 량 : 포럼, 기업 및 경제교실 등 경제단체 역량강화 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3,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단체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추진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경제 교육, 포럼 개최 등을 통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 역량강화 도모

## II-3.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II-3-1.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의 조속한 취업 지원
- 대학-기업-행정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8조의 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 사업개요

- 건 명 :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사업내용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성장유망 직종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 연계 지원 (ICT, 항공서비스, 글로벌 관광서비스, 풍력 및 태양광 설비 인력 양성 등)
- 수행기관 : 도내 대학교
- 지원대상 : 도내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미취업 졸업자 포함)
- 지원기준 : 취업률 등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대학 자부담 5%이상 시행)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인력양성기간 : 3월 ~ 12월)
- 총사업비 : 77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침개정 : 2018년 1월
- 2018년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실시 : 2018년 1월 ~

#### 기대효과

- 대학·기업·행정 간의 협력체계 강화로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게 취업 활로 개척 및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

### II-3-2.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도내 특성화고 및 대학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업의식 고취 및 취업률 제고

※ 사업시행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8조의 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 □ 사업개요

- 건 명 :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 사업내용 : 도내 취업준비 특성화고 및 대학생들에게 저명강사 활용, 직업교육 추진으로 취업률 향상
  - 취업특강, 이미지 메이킹·직업적성검사, 취업컨설팅, 직업훈련, 취업캠프 등
- 수행기관 : 도내 대학교 및 특성화고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30,000천원

####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지침 개정 : 2018년 1월
- 2018년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실시 : 2018년 1월 ~

#### □ 기대효과

- 도내 특성화고 및 대학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업의식 고취 및 취업률 제고

### II-3-3.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 □ 사업의 필요성

- 취업시점을 앞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명강사를 활용, 인문학, 경영학 등을 포함 하는 직업교육 추진 및 멘토링으로 취업역량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 □ 사업개요

- 건 명 : 청년 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 사업내용
  - 철학, 문학, 과학·기술, 경영경제를 망라하는 전문가 수업 및 현장실습
  - 기획, 관리, 영업 분야별 기업실무 과제연습을 통한 종합적 업무능력 배양
  - 도내 중견 직장인 1 : 1 멘토그룹을 형성하여 학습, 진로, 취업상담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 지원방법 : 업무대행 협약에 의한 사업위탁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도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사업계획 수립 : 2018년 1월
- 2018년도 청년취업 역량강화 아카데미 사업시행 : 2018년 3월 ~

**기대효과**

- 대학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대상 직업교육 추진으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II-3-4.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사업의 필요성**

- 특성화고, 대학, 지역의 기능인 등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숙련기술장려법」 제5조, 제6조, 제20조, 시행령 제25조, 제33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제주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0천원
- 수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 지원방법 : 업무대행협약에 의한 사업위탁
- 지원대상 : 도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선수

**향후 추진계획**

- 제38회 지방기능경기대회 대행 협약체결 및 세부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제38회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 2018년 상반기(4월경)
-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 2018년 하반기(9월경, 전라남도)

**기대효과**

- 우수기능인을 발굴·표창함으로써 기능인의 사기진작
- 기능존중 풍토 조성 및 기능인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 II-3-5.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

### □ 사업의 필요성

- 청년일자리 부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여건의 도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지역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인재 수급에 부합하기 위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현장 맞춤형 기술 인력으로 육성,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및 청년 실업난 해소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 □ 사업개요

- 건 명 :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
- 시행기관 :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 사업량 : 5개교 250명 내외  
\* 특성화고 10개교 대상 공모, 5개교 내외 선정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2019년 2월(사업시행 최초년도 : 2011년)
- 총사업비 : 270,000천원

###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기업-특성화고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사업성과 보고 : 2018년 2월
- 인력양성프로그램 사업설명회 및 참여학교 신청·접수 : 2018년 2월 ~ 3월
-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고 선정 : 2018년 4월
-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채용협약 등 사업 추진 : 2018년 4월 ~ 2019년 1월

### □ 기대효과

-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을 기업체와 협약 및 연계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 II-3-6.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지원

### □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우수중소기업 탐방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및 취업 의욕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

※ 사업시행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 지도),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사업개요

- 사업량 : 중소기업 탐방 250명
- 운영 : 민간운영기관(별도선정)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9,52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대상기업 발굴 및 고교·대학에 집중 홍보 : 수시
- 각종 청소년 행사시 틈새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11월 ~

II-3-7. 성장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직기술을 향상 시켜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동법시행령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 프로그램 · 38회
- 운영기관 : 민간전문기관 선정(심사위 구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3,1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4개사업(CAP+ 등) 프로그램 10회 운영 : 2017년 11월 까지
- 2017년 사업평가 및 2018년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사업자 공모 및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1월 ~ 12월

II-3-8. 재학생 직무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의 2~3학년 대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직무체험의 기회 확대를 통한 조기 진로준비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 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

사업개요

- 지원내용 : 학생1인당 월40만원, 기업 월7만원(학생1인 관리비), 대학 월 1만원 (학생 1인 운영비)
- 운영기관 : 대학교(공모)
- 운영방법 : 대학 내 사전교육(8시간), 기업에서 1월 ~ 3개월 직무체험
- 총사업비 : 57,06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방학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 2018년 운영기관 공모 : 2017년 12월

### II-3-9. 취업희망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취업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직기술을 향상 시켜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동법시행령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 프로그램 · 38회
- 운영기관 : 민간전문기관 선정(심사위 구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8,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4개사업(CAP+ 등) 프로그램 10회 운영 : 2017년 11월까지
- 2017년 사업평가 및 2018년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사업자 공모 및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1월 ~ 12월

## II-3-10. 제주리더스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며 동북아시아의 21세기 주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개방과 글로벌시대를 선도해 나갈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리더스아카데미 운영
- 사 업 량 : 1개 과정, 60명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2019년 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2월 : 제주리더스아카데미 계획 수립 및 시행
- 2018년 3월 ~ 12월 : 제주리더스아카데미 추진

### 기대효과

- 새로운 국내외 정보 습득과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리더 양성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 II-3-1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창업초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컨설팅(경영, 기술개발 등)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 및 경쟁력 강화
- 창업을 통한 실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생 창업 분위기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내지 제4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3조

### 사업개요

- 건 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시행기관 : 도내 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사업시행 최초년도 : 2000년)
- 사 업 량 : 4개 창업보육센터, 100여개 업체
- 총사업비 : 4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 평가 : 2018년 2월 ~ 3월
- 2018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국·도비) 지원 : 2018년 2월 ~ 5월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운영 지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 : 2018년 3월 ~

**기대효과**

- 창업초기 입주기업 위험부담 해소로 원활한 창업성장 유도 및 창업활성화

**II-3-12.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특성화고-전문대-기업이 연계한 맞춤형 인재 체계적 육성,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시 기업이 원하는 고용시장 불균형 문제점 해소
- 제주관광대학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지원대상자로 선정, 국비 지원에 따른 대응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사업개요**

- 건 명 :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지원
- 시행기관 : 제주관광대학교(기술사관육성사업단)
- 사 업 량 : 관광대(메카트로닉스과) 및 한림공고 재학생 130여명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2019년 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2월 : 2017년 관광대 2학년 “기술사관 육성사업” 수료자 협약기업 취업
- 2018년 2월 ~ 5월 : 2017년 기술사관육성사업 성과평가 및 2018년 국비 확정
- 2018년 3월 ~ 2019년 2월 : 특성화고 및 관광대 기술사관 기술인력 양성 심화 교육

## II-3-13.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문화콘텐츠산업에 관심이 높지만 스토리 구성, 창작 등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실제 참여가 어려운 창작자 역량 강화
- 분야별 맞춤형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로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사업
- 사업주체 : (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 사업량 :
  - 문화콘텐츠 전문가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 수요 맞춤형 문화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및 문화콘텐츠 창작자 네트워킹
  - 집체형교육 : 문화콘텐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 프로그램 운영(1회)
  - 방문형교육 :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콘텐츠 전문가 매칭 및 방문교육 지원(3회)
    - 네트워킹 : 국내, 제주도내 문화콘텐츠 창작자 간 교류회, 네트워킹(1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향후 교육 안내, 참여 등 이력관리
- 2018년도 교육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계획 수립
- 2018년도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창작활동을 장려하여 콘텐츠분야의 지속가능한 창작기반 조성 및 창업 활성화 유도
- 현장에 필요한 수요 맞춤형 문화콘텐츠 교육을 통한 고품질의 문화콘텐츠 창출 가능

## II-3-14.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경마 외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말 전문기능인력이 부족한 실정
- 말산업 기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 사업시행 근거 :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8조(말산업 육성 사업의 시행)

###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일원
- 사 업 량 : 2개 학교(제주한라대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각 학교별 세부계획에 의거 실습기자재 및 교육시설 개·보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말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II-3-15.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 사업의 필요성

- 국내산 말의 생산육성 특구로써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말 생산농가 차원에서 생산 마필의 육성·조련기술을 배양 및 현장에 접목하여 생산마필의 가치상승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8조(말산업 육성 사업의 시행)

###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일원
- 사 업 량 :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말 생산농가 및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의뢰하여 조련사 및 승마지도사 교육 실시

**향후 추진계획**

- 민간 차원의 말 생산, 육성 및 조련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산 말의 가치상승
- 말 생산농가 및 관련업체 종사자 자질 향상으로 제주 말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효과**

- 국내산 말의 생산육성 특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기능인 확대 양성

**II-3-16.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취업률 향상 관련 사업과 재정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도내 대학의 자체 역량 강화 추진
- ※ 사업시행 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업개요**

- 건 명 :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 위 치 : 도내 4개 대학(제주관광대, 제주국제대, 제주대, 제주한라대)
- 사업량 : 대학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도내 대학 공동 연계 취업프로그램 개발 추진

**기대효과**

- 도내 대학에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대학 취업 생태계 구축 및 대학-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구조 창출, 구축

## II-3-17.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를 떠나 다양한 삶을 경험할 기회가 적은 청년들이 도외에서 갭이어 체험을 통해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향후 청년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자기 성장을 통한 가치관 확립 등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13조, 제18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 청년 갭이어 체험
- 대 상 : 도내 청년 60명(1년 이상 제주도 거주)
- 사업량 : 갭이어 체험 2회 운영(1회당 3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주요내용
  - 청년들이 21일간 도외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교육, 컨설팅 미션 수행 등을 통해 진로설정 및 삶의 방향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원내용: 갭이어 전문 수행기관 컨설팅(교육·진로설정 1 : 1 맞춤형 컨설팅)
- 총사업비: 6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갭이어 추진계획 수립 : 2018년 1월 ~ 3월
- 갭이어 체험 참가자 모집(1기) : 2018년 5월
- 갭이어 체험 사업 추진(1기) : 2018년 6월 ~ 7월
- 갭이어 체험 참가자 모집(2기) : 2018년 9월
- 갭이어 체험 사업 추진(2기) : 2018년 10월 ~ 11월

### 기대효과

- 제주를 벗어나 도외에서 직접 생활, 현장을 체험해 봄으로써 자립심 강화 및 자기성장의 기회 마련
- 청년들에게 자기성장 및 사고의 폭 확대 등 삶의 방향성 설정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동기부여

## II-3-18.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

### 사업의 필요성

-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청년상 모색 및 청년단체의 역량 강화 계기 마련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20조

### 사업개요

- 건 명 :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도내 청년 및 청년단체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보조사업 공모 및 심사 : 2018년 1월 ~ 3월
- 보조사업 실시 : 2018년 4월 ~ 12월

### 기대효과

-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 유도
- 청년단체가 중심이 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발전적인 청년활동 기회 및 네트워크화 가능

## II-3-19. 제주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추진

### 사업의 필요성

- 청년들이 일자리(안정적인 삶)를 선택하기까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나 제주의 산업구조·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체험의 기회 부족
-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일 체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관기관에서 는 청년의 참여를 돕고 청년은 일 체험을 통한 성장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청년기본조례」 제13조

### 사업개요

- 대 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40명
-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연 2회 모집

- 주요내용
  - 4~6개월간 공통교육 및 진로상담 등을 통한 관리
  - 각 기관에서 프로젝트성 일 수행을 통한 일 체험
- 운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제주청년센터)
- 추진체계 : 청년센터(급여지급, 교육, 상담, 모집)+기관(직무설계)+청년(일 체험)
- 총사업비 : 3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유관기관 모집 및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플랫폼(일성장 프로그램) 구축 : 2018년 2월
- 프로그램 운영 위한 유관기관별 일체험 콘텐츠 발굴 : 2018년 1월 ~ 3월
- 발굴된 일체험 콘텐츠 홍보 및 참여자 공개모집 : 2018년 3월, 7월
- 제주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추진(제주청년센터 주관) : 2018년 4월 ~ 12월

**기대효과**

- 지역사회활동 관련 다양한 일체험을 통해 청년들의 시민의식 고취
- 경험·기회 제공 및 경력개발 등을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도모

## II-3-20. 청년 자기개발 지원금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여건상 전문적인 배움에 대한 여건을 소화하기에는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구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기개발에 대해 항공료 등 경비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대 상 : 만 19세 ~ 만 34세(중위소득 150% 이하)
- 주요내용 : 항공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 지원(1인당 최고 160만원)
- 추진방법 :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사용한 만큼 후 지급
- 소요예산 : 5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개정 : 2018년 1월 중
- 세부계획 마련 : 2018년 1월 중

- 운영기관 협의(시스템사, 카드사) 및 운영시스템 구축 : 2018년 1월 ~ 3월
- 사업대상자 모집 등 사업 운영 : 2018년 4월 ~ 11월
- 사업 평가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다양한 교육 서비스 및 인프라가 부족한 제주청년들이 좀 더 다양한 배움을 통한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인재 육성 가능

II-3-21.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제공하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업개요

- 건 명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 위 치 :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 사 업 량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제주관광대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 제주한라대 : 산학협력 고도화형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5개년도 실적에 대한 분석 실시
- 2017년 성과 보고회 준비 및 2018년 사업 계획 수립 등

기대효과

- 새로운 산학협력체계 구축 및 공고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업·창업 교육을 통해 원활한 인력수급 및 일자리 창출
- 6차산업에 대비하는 인력양성 및 기업-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도내 미래 성장동력 확보 추진

## II-3-22.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미래 해양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실시로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층 저변확대 및 해양레저산업 인적인프라 확충
- ※ 사업시행 근거 :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

### 사업개요

- 건 명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 위 치 : 도내 일원
- 사 업 량 : 2개소(김녕, 화순)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4,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 2018년 1월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 : 2018년 3월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8년 5월 ~ 11월

###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요트·세일링 체험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해양환경 보전의식 함양
- 생존수영 교육을 통하여 위기상황 대처능력 배양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

## II-3-23. 크루즈산업 청년일자리 및 서포터즈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크루즈 관련 산업에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크루즈산업 인력 육성
- 크루즈산업에 대한 도민사회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포터즈 및 체험단의 시범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도지사 공약사업(10-9)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 사업개요

- 건 명 : 크루즈산업 청년일자리 및 서포터즈 운영(성인지예산)
- 사 업 량 : 청년인턴(2명), 서포터즈(30명) 및 체험단(20명)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크루즈산업 청년일자리 및 서포터즈 운영 대행 협약 체결 : 2018년 1월
- 참여학생 선발(도내 각 대학 총장 추천학생 모집) : 2018년 2월
-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대상 승무원 체험 : 2018년 5월, 10월
- 크루즈 자원봉사(아이크루) 운영 및 교육 : 연중

**기대효과**

- 크루즈 인턴십과 연계를 통한 청년 고용창출 기회 확대로 청년실업난 해소
- 제주지역 크루즈관광 서비스 개선 및 품질향상 도모로 이미지 제고

**II-3-24. 고급 환경전문가 과정 위탁교육**

**사업의 필요성**

- 환경지식과 가치관 배양 및 자발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고 지역의 환경운동을 선도할 인력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간 협약

**사업개요**

- 건 명 : 고급 환경전문가 과정 위탁교육
- 사 업 량 : 환경관련종사자, 단체회원 등 8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 시행주체 : 제주대학교(산업대학원)

**향후 추진계획**

- 제17기 고급환경전문가과정 2018년도 신입생 모집 : 2018년 1월
-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운영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세계환경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환경전문가로서의 자질개발
- 제주 환경보전 활동을 리드하고 실천하는 환경전문가에 대한 재교육

## II-3-25.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가정·사회·국가의 재난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중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민방위대 구현
- 민방위 교육 실시를 통한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적 대응 조치 능력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4조

### 사업개요

- 목 적 : 재난유형별 대처요령 등 민방위 교육을 통한 국가안보의식 고취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17개 읍·면·동)
- 사 업 량 : 민방위 대원 교육(11,771명), 민방위 시범마을(2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404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실시
- 민방위의 날 훈련 및 시범마을 훈련 운영

### 기대효과

- 가정·사회·국가의 재난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의 비상사태 대응능력 향상

## II-3-26.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창업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과정의 아카데미 운영

### 사업개요

- 건 명 :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 사 업 량 :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4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총 4회)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창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예비창업자 양성

**II-3-27. 청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서귀포시 관내의 청장년층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상담 및 알선창구가 부족하여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데 열악한 실정
- 청장년층 취업상담 및 알선 창구를 지원함으로써 구인난·구직난 해소 및 맞춤형 고용 창출 도모

**사업개요**

- 건 명 : 청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청장년층 구직자 상담 및 교육, 청장년일자리 지원코너 운영,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활동 강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청장년 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 2017년 12월
- 보조사업 공모, 심의 및 사업비 지원 : 2018년 1월
- 청장년 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일자리 상담 및 알선 기회 제공을 통하여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II-3-28. 대학전공 탐색하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대학별 교육봉사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대학생활과 다양한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업시행 근거 : 「진로교육법」

사업개요

- 건 명 : 대학전공 탐색하기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학교
- 사업기간 : 2018년 8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협력대학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8년 4월
- 2018년 대학전공 탐색하기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8월

기대효과

- 대학생들이 직접 대학생들과 전공 선택 등을 조언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학과) 탐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설계 조기 동기부여

## II-3-29. 진로체험 캠프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들이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미래 진로직업 세계를 안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귀포시 관내 학생
- 사업기간 : 2018년 8월 ~ 9월중
- 사업량 : 진로체험 캠프 운영 1식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진로체험 캠프 운영 기본 계획 수립 : 2018년 5월
- 세부 체험프로그램 준비 : 2018년 6월 ~ 7월
- 참가자 모집 : 2018년 8월
- 진로체험 캠프 운영 : 2018년 8월 ~ 9월 중

기대효과

- 다양한 진로 직업체험 및 미래 신직업·신직종 등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으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함양

II-3-30. 진로멘토단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진로교육 강화에 따라 소질과 적성, 흥미에 맞는 진로 선택과 자기주도적 미래설계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진로교육법」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진로멘토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학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청소년진로멘토단 운영 : 2017년 11월까지
- 2018년 진로멘토단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8년 1월
- 2018년 진로멘토단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3월 ~ 11월

기대효과

- 청소년(학생)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II-3-31. 진로·진학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체계적인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진로탐색을 돕고, 진학률을 제고함으로써 명품교육도시 육성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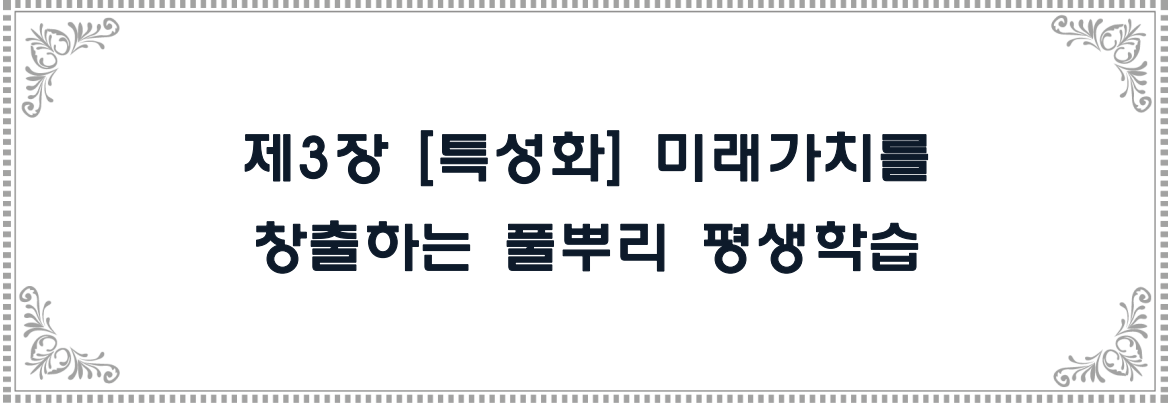
- 건 명 : 진로·진학 프로그램
- 위 치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서귀포시 동홍중앙로 7번길 19)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진로·진학프로그램 공개입찰 수탁자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1월 ~ 11월

기대효과

- 진로진학정보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진로·진학을 용이하게 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



**제3장 [특성화]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풀부리 평생학습**



### III. [특성화]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풀뿌리 평생학습

#### III. 특성화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평생학습



- 의의** 제주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풀뿌리 평생학습 시스템 조기 안착
- 방향** 지역단위 풀뿌리 평생학습역량의 강화, 평생학습 기반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
- 중점** 지역단위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의 자생적 평생교육 역량 강화, 지역 단위 시민역량 강화 지원, 지역사회를 살리는 평생교육 실현
- 내용**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읍·면·동별 평생학습 확대 등 지역주민 접근성 제고, 평생학습기관(단체) 특화교육 운영 활성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전문성 제고 지원, 지역 시민대학(원) 운영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수요자 맞춤형 인문강좌, 시민교육, 성·안전교육 확대,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및 우수학습 모임 성장·지원, 지역리더 및 특화인재, 전승 등 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 자치분권 풀뿌리 평생학습 조기 안착 및 제주의 미래가치 창출 지원

## Ⅲ-1. 지역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

### Ⅲ-1-1. 4·3 70주년 기념 제주4·3길 역사 탐방

#### □ 사업의 필요성

-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4·3길 역사탐방 행사를 운영, 4·3의 아픔과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인이 체험했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 □ 사업개요

- 건 명 : 4·3 70주년 기념 제주4·3길 역사탐방
- 위 치 : 안덕동광리, 남원 의귀리, 조천 북촌리, 한림 금악리, 표선 가시리
- 사 업 량 : 4·3길 5개소에 사진공모전 개최 및 조형물 등 전시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0천원

#### □ 향후 추진계획

- 제주4·3길 종합 홍보물 및 리본 제작 : 2018년 1월
- 제주4·3길 사진공모전 및 조형물 전시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제주4·3길 사진전 및 조형물 전시 추진 : 2018년 2월 ~ 12월

#### □ 기대효과

- 4·3 70주년을 맞이하여 4·3길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1인 1리본 달기, 사진 전시회, 해원메시지를 담은 조형물 직접 꾸미기 등을 통해 4·3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 마련

### Ⅲ-1-2.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 □ 사업의 필요성

-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문화·역사 등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및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 강화 및 자질향상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 (활동비 등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명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현장답사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6월
- 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실시 : 2017년 11월 ~ 12월
- 2018년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실시 및 배치 : 2018년 1월

기대효과

-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통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 Ⅲ-1-3 전통 식문화 계승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교육으로 지역 식문화 리더 및 식생활지도자 양성

사업개요

- 건명 : 전통식문화계승활동지원
- 위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전통 식문화 리더양성 및 전통음식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원 발굴활동 지원

### Ⅲ-1-4. 4-H본부 교육지원 사업

사업의 필요성

-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한 4-H본부 회원 육성으로 청년 4-H회 활성화 기반조성
-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 농업인력 양성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4H 활동지원 조례」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4-H본부 교육 지원사업
- 위 치 : 제주시 선덕로 23(농어업인회관)
- 사 업 량 : 1개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6,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4-H본부 회원 역량강화 현장교육 및 여성회원 교육 등 : 5회

기대효과

- 농업·농촌에 기반을 둔 청소년운동의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창조적 농업 후계 인력 양성 기여

### Ⅲ-1-5. 여성농업인 및 소비자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안목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습득 기회 마련
- 농업 및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능력 함양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농업인·소비자단체 교육재료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4,20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농촌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소비자의 요구파악 및 도시소비계층을 겨냥한 여성농업인의 능력함양
- 지역농산물의 가공 및 서비스 상품화 기회 모색

### Ⅲ-1-6.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들에게 농업정책 첨단기술 최신정보 학습기회 제공
- 급변하는 대내외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농업경영인 육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건 명 :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대학교
- 사 업 량 : 1개소 5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 계획수립
- 경영·회계·마케팅 등 경영기법 리더십 과정 등 경영교육 및 해외농업 동향교육 등 과정 운영

#### 기대효과

- 제주지역의 농축산업과 1차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수행
- 도내·외 선진지 견학 및 현장학습을 통하여 성공적인 영농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선진영농기술 습득 효과 제고

### Ⅲ-1-7.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농촌교육농장 농가 소규모 수제품사업장 등 제주농업의 6차산업 사업장 주체로 제주농업의 다원적 가치제고 및 공동브랜드 「수다뜰」 활성화 도모
- 농촌자원 발굴과 소비층에 걸맞은 우리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수요창출

#### 사업개요

- 건 명 :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업량 : 10회 3,00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2, 3차인 가공, 체험, 유통, 판매 중심의 일관된 시스템 구축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직거래할 수 있는 용·복합 공간조성

**기대효과**

- 농촌체험을 통한 지속적인 농업·농촌의 가치인식과 농업 이외의 소득원 창출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 농가소득원으로서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시 오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Ⅲ-1-8. 여성농업인, 소비자단체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안목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 습득 기회 마련
- 농업 및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전문능력 함양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농업인·소비자단체 교육재료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4,20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농촌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소비자의 요구 파악 및 도시소비계층을 겨냥한 여성농업인의 능력함양
- 지역농산물의 가공 및 서비스 상품화 기회 모색

### Ⅲ-1-9. 4-H본부 교육 지원(1개회)

#### 사업의 필요성

- 지역4-H본부 교육활동 지원으로 우수농업 인력 양성과 지역본부의 역량 향상을 통해 4-H운동의 체계적인 기반구축
- 도본부 교육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지역 4-H운동 활성화
- 중앙과 지역 간 교육운영의 연계추진으로 효율적인 성과 제고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4H활동 지원조례」

#### 사업개요

- 건 명 : 4-H본부 교육지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4-H본부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4-H본부 회원 역량강화 현장교육 및 여성회원 교육 등 : 2회

#### 기대효과

- 농업·농촌에 기반을 둔 청소년 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창조적 농업 후계인력 양성에 기여

### Ⅲ-1-10. 도시농업 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수요 계층에 맞는 기술보급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 농업을 매체로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 사업개요

- 건 명 : 도시농업교육 운영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운영계획수립 : 1월 → 사업추진 2 ~ 12월 → 결과평가 12월

**기대효과**

- 도시농업 참여기여 확대h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 도시소비자에게 농사체험활동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함양

**Ⅲ-1-11. 전통공예 배우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박물관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인 사회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 수행
- 전통문화·공예, 박물관 교실, 상설체험장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

**사업개요**

- 건 명 :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 사 업 량 :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 2018년 1월 ~ 12월 :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7종 운영

**기대효과**

- 공립박물관으로서 사회적 역할 제고 및 박물관 기능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제공

**Ⅲ-1-12.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도민 문화 예술

활동 참여 환경 조성 및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 마을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제26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량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90,000천원(국비 95,000 도비 95,000)
- 주 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사업자 공모 및 선정(2018년 1월 ~ 2월), 사업 추진(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Ⅲ-1-13. 제주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사업의 필요성

- 2010년 12월 제주어가 유네스코에서 소멸위기의 언어(4단계)로 분류되면서 제주어 사용인구 확대를 통한 보전방안이 절실
- 이에 제주어 능력향상 기반을 조성하고, 제주어 보급에 필요한 체계적, 전문적 교육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 제14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모 사업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량 : 제주어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주어 보전·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보조사업자 공모 : 2018년 1월 중

-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확정 : 2018년 2월
- 과정별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제주어에 대한 보전 및 확산에 기여

### Ⅲ-1-14. 제주어 교육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및 제주의 정체성 교육 필요
-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제주어 보전교육이 절실함으로써 교육청과 협력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 제14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어 교육지원 사업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 업 량 : 어린이용 제주어 교육 영상물 제작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청과 교재개발 추진 협의 : 2017년 12월
- 교재개발 사업 지원 : 2018년 1월
- 교재개발 사업 추진 : 2018년 2월 ~ 12월
- 교재보급 및 지원 : 2019년 1월

기대효과

- 유아 때부터 제주어를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어 보전 및 활용 확산
- 제주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제주어의 보전 확산에 기여

### Ⅲ-1-15.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사업의 필요성

-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소규모의 주민 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유희공공시설 및 노후 문고 리모델링을 통한 작은도서관 조성

※ 사업시행 근거 : 「도서관법」 제4조

**사업개요**

- 사업량 : 1개소(삼도2동)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내용 :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도서구입, 주변기기 구입 등)

**향후 추진계획**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민의 문화공간 제공

**Ⅲ-1-16. 도민 문학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문학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의 문화의식 및 문학적 소양 향상, 문학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4항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임항로 278(제주문학의 집) 및 읍·면 일원
- 건 명 : 2018 도민문학학교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총사업비 : 108,000천원
- 주 관 : 제주문학의집 운영위원회
- 사업내용
  - 도민문학 아카데미 ‘창작공간’ : 시, 소설, 수필 등 장르별 문학강좌 운영
  - 찾아가는 문학교실 ‘문장강화’ : 읍·면 마을단위 2개 지역 선정 후 강좌 운영
  - 작가초청 문학콘서트 : 도내·외 유명작가 초청 북콘서트 추진(연 6회)
  - 문학의 밤과 가을 시화전 : 수강생과 참여작가의 작품 제작, 전시 및 문학 콘서트 추진

- 북카페 운영, 여성독서클럽 및 문학기행 프로그램 운영
- 젊은 작가 생명 평화문학 캠프 : 제주작가, 청소년 및 대학생 참여 캠프

**향후 추진계획**

- 문학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및 북카페 운영 : 2018년 1월 ~ 12월
- 제주문학 관련자료 조사 및 수집, 보존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도민의 문학적 소양 향상 및 문학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Ⅲ-1-17. 찾아가는 제주문화아카데미**

**사업의 필요성**

- 제주문화는 지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자원으로서,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는 등 제주문화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키고 제주를 깊이 있게 소개하는 강좌가 필요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제주문화아카데미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2018년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주 관 : 제주학연구센터

**향후 추진계획**

- 제3기 제주문화학교 개설 운영 : 2018년 2월 ~ 3월
- 제4기 제주문화학교 개설 운영 : 2018년 5월 ~ 6월
- 제5기 제주문화학교 개설 운영 : 2018년 8월 ~ 9월
- 제6기 제주문화학교 개설 운영 : 2018년 10월 ~ 11월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제주문화 아카데미의 지속적 개설, 운영을 통해 전국적·세계적으로 제주문화를 알리고 사랑하는 기회를 마련

### Ⅲ-1-18.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지역콘텐츠 개발·활용 등 제주의 특성을 살린 전문교육 과정 운영 및 현장 실습을 통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 3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 교육 운영계획 수립(2018년 1월) 및 교육생 모집 선발(2018년 2월)
- 교육과정 운영 : 2018년 3월 ~ 11월

#### 기대효과

- 전문 문화예술기획자 양성으로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예술 단체 역량 강화

### Ⅲ-1-19. 제주문화예술 교육센터지원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교육청·학교·문화예술교육시설·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예술 교육정책과 연계한 예술교육 자원 확보
-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예술 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발굴 육성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제11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0천원
- 주 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및 영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11 ~ 12월) : 3회 55명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연수 운영(12. 8 ~ 9) : 15명
- 2018년 운영계획 수립(2018년 1월), 사업 추진(2018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로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

**Ⅲ-1-20. 박물관 제주학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민들에게 유구한 세월동안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제주 역사·문화의 이해와 문화향유 기회 제공
- 김만덕기념관(객주터 재현)과 구도심을 연계한 문화의 거리 체험탐방, 탐라순력도 체험기행 등을 통해 제주의 고유한 전통과 자연을 이해하고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 ※ 사업시행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박물관 제주학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제주시 삼성로 40(일도2동) 민속자연사박물관
- 사업량 : 박물관 제주학아카데미 15회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1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일반 도민들이 박물관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문화정체성 확립에 기여
-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제주의 역사·자연 교육으로 발전

**기대효과**

- 박물관 전문 문화소양 강좌 프로그램 개설로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박물관 이미지 제고

### Ⅲ-1-21. 역사기행교실

#### 사업의 필요성

-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역사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사 교육이 필요
- 문화 소외지역 초등학생들에게 특성화된 창의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박물관 관람문화 학습 및 전시실 관람, 박물관에 대한 문화체험 학습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 사업개요

- 건 명 : 역사기행교실 운영
- 위 치 :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2동) 민속자연사박물관
- 사 업 량 : 역사기행교실 6회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1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체험형 창의학습’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운영
- 매년 초등학교 학생들이 흥미가 있는 제주지역 역사와 관련된 테마를 선정하여 주제에 맞는 명승고적 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 기대효과

- 체험형 창의학습 프로그램 개설로 어린이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박물관 이미지 제고
- 학교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제주역사 등의 교육으로 제주지역 향토애 고취

### Ⅲ-1-22. 창의 마당·생태교실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가족이 함께 하는 토요일 학교 밖 체험 활동으로 생활과학, 자연생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의력과 인성교육을 높여주고자 함

※ 사업시행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창의마당·생태교실 운영
- 위 치 : 제주도 삼성로 40(일도2동) 민속자연사박물관
- 사업량 : 연 10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1월
- 총사업비 : 13,634천원

향후 추진계획

- 박물관적 요소를 벗어나 과학, 미술, 음악, 마술, 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복합하여 점차 확대 운영

기대효과

- 토요일체험프로그램 개설로 어린이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박물관 이미지 제고
- 학교교육 이외의 자연생태, 과학 등의 교육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 증진

### Ⅲ-1-23. 청소년 등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및 운영사업

사업의 필요성

-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로 에이즈감염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사업시행 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

사업개요

- 사업주체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사업량 : 청소년 등 대상 에이즈 예방교육·홍보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에이즈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12월 1일 : 세계에이즈의 날)

기대효과

- 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감염예방으로 도민 건강증진

### Ⅲ-1-24.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 금연치료 희망자가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및 병·의원 등록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 및 사회경제적 부담감 완화를 위해 금연치료비를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 사업개요

- 건 명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위 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 사 업 량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금연희망자 치료비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9,32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금연클리닉 및 금연지원센터, 병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속적인 홍보

#### 기대효과

- 흡연은 예방가능한 제일의 건강위해요인으로서, 흡연자에게 금연치료를 유도하여 흡연자 뿐 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

### Ⅲ-1-25.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사업

#### 사업의 필요성

- 국가안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 청소년의 올바른 호국안보의식을 함양
- 최근 북한 핵실험 및 남북 정상회담 등 올바르게 확고한 안보관을 확립
- 지역사회의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와 호국안보의지 확산을 위하여 각 지역, 대상별로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 실시
- ※ 사업시행 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 사 업 량 : 관련 교육사업 실시
- 사업기간 : 2018년 3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생 모집에 따른 홍보 등  
※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직접 현장방문 강의(지역전담교수 활용)

**기대효과**

- 체험 및 현장학습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 및 올바른 국가관 확립
-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호국안보의식 고취
- 국가의 보훈 및 안보정책을 구현하고 확산시키는 정책기조에 부응

**Ⅲ-1-26.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자라나는 세대의 올바른 나눔 가치관을 함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나눔교육 추진으로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 및 제33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주체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장 고승화)
- 총사업비 : 30,000천원
- 사업내용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직접 방문 나눔인식 개선교육 실시

**기대효과**

- 자라나는 세대의 올바른 나눔 가치관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통하여 나눔문화 확산 도모

**Ⅲ-1-27.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요보호아동에 대한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로 아동의 자립의지 함양 및 시설 퇴소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립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 사 업 량 : 아동양육시설 4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수행 주체 : 아동복지시설 4개소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4개 시설

Ⅲ-1-28. 가정위탁아동 체험활동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가정위탁 가정 아동이 직접 기획하는 직업체험 활동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시설아동의 자립의지 고취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립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아동 선진지 직업체험 활동
- 사 업 량 : 가정위탁 아동 20명(중·고등학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수행 주체 : 제주가정위탁 지원센터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가정위탁 아동 선진지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1월 ~ 12월

Ⅲ-1-29. 어린이집 원장교사 역량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역량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사업개요

- 건 명 : 어린이집 원장·교사 역량강화 사업
- 사 업 량 : 어린이집 원장·교사 역량강화 1식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영유아 관련 교육사업 추진 : 2018년 7월 ~ 10월

Ⅲ-1-30.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교실

사업의 필요성

- 국제자유도시 도민으로서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데 있어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외국어 교육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업개요

- 건 명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
- 위 치 : 도내 지역아동센터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 운영 : 연중

Ⅲ-1-31.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결혼으로 인한 부부역할, 부모역할, 육아 실습 등 교육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개요

- 건 명 :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 사업량 :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매년 4기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0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예비부모 교육 아카데미 운영 : 연중

Ⅲ-1-32.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사업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우리의 전통문화가 청소년층 문화 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및 제62조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소중한 전통문화를 전승·보급 하는 계기 마련

Ⅲ-1-33. 유아숲 생태교육 운영사업

사업의 필요성

-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감성과 창의성 개발
- 숲에서 자연체험활동을 통한 현장교육으로 건전한 성장·발달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개요

- 건 명 : 유아숲 생태교육 운영사업

- 위 치 : 제주시 516로 2596 한라생태숲 등 22개소(사려니숲길, 절물휴양림, 도두봉 등)
- 사업내용 : 기본과정연수, 심화과정연수, 부모참여 체험행사 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유아숲 생태교육 운영을 위한 가족 숲체험활동 “숲day”
- 숲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원장 및 교사 워크숍 및 수범사례 발표 등

**기대효과**

- 숲에서 자연체험활동을 통한 현장교육으로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발달 도모

**Ⅲ-1-34. 복합문화 융성을 위한 문화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문화교육 운영으로 도민의 잠재 역량 개발 및 예술교육 욕구 충족
- 소외계층 등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예술 활동의 참여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량 : 48개 과정, 2,05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운영결과 분석 및 2018년 교육운영 계획 수립

**기대효과**

- 다양한 문화교육 운영으로 아마추어 예술인 양성 및 생활체감형 복합문화 조성

**Ⅲ-1-35. 설문대 행복특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유명작가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소통의 문화공간 역할 수행
- 작가의 작품세계를 강연을 통하여 이해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

사업개요

- 사업량 : 설문대 행복특강 운영 4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유명작가 섭외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대효과

- 도민의 품격 높은 문화 환경조성을 통한 여성과 도민이 행복한 제주 구현

Ⅲ-1-36. 식생활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식생활의 서구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에 따른 식문화의 변화로 외식 가정 증가 및 간편식 선호도 증가
- 유치원,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습관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올바른 식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 교육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내용 : 텃밭체험, 농어촌체험, 체험학교 등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수립 : 2018년 2월
- 2018년 사업추진 등 : 3월 중

기대효과

-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 Ⅲ-1-37.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여성·아동폭력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 고취를 위해 도민 성·인권 교육을 실시
  -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건 명 :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
- 위 치 : 도내 일원
- 사업량 : 성·인권 교육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도민 성·인권 교육 추진

#### 기대효과

- 여성·아동 폭력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및 성인지적 감수성 고취 등으로 폭력 예방 도모

### Ⅲ-1-38.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교육과정 참여가 접근성 등이 취약하여 도내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가 부족함에 따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 협약하여 도내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 사업량 : 2개 사업(성매매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젠더폭력예방교육 통합과정)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수자 전문강사 위촉

**기대효과**

- 전문적이고 질 높은 폭력예방교육 실시로 폭력예방 효과성 제고

### Ⅲ-1-39. 안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여성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 ※ 사업시행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안전프로그램 운영
- 사업량 :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8,76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안전프로그램 사업 지속 추진

**기대효과**

-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아동의 사회적 안전기반 마련
- 지역주민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로 지역사회의 안전체감도 향상

### Ⅲ-1-40.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 사업량 : 여성폭력 예방교육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여성·아동 폭력피해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폭력피해 예방 교육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여성·아동 폭력예방 교육을 통하여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범죄예방 도모

### Ⅲ-1-41.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인지력 등이 상대적으로 느린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예방 제고
- ※ 사업시행 근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 사업량 : 성·인권 교육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

**기대효과**

- 장애특성에 맞게 맞춤형 성·인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아동 성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성예절을 습득함으로써 건전한 성장 도모

**Ⅲ-1-42.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및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 사업시행 근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 사 업 량 : 성·인권 교육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학교와 연계하여 성·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

**기대효과**

- 성·인권 교육을 통해 성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성인식 함양으로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 도모

**Ⅲ-1-43.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사회 인식개선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1,02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폭력예방교육 대상자 발굴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강화

기대효과

-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도민들에게 찾아가는 교육 실시로 교육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Ⅲ-1-44. 친절콘서트 및 찾아가는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글로벌시대의 친절생활화 교육 및 도민수요에 부응한 찾아가는 교육 운영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과정, 15,00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총사업비 : 70,000천원
- 주요내용 : 친절교육, 친절콘서트, 찾아가는 사회교육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2월 : 2018년 도민사회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18년 1월 ~ 12월 :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실시

기대효과

- 도민들의 현장수요에 응답하는 교육 실시로 교육효과 제고

Ⅲ-1-45. 신규 새마을 작은도서관 개관

사업의 필요성

- 아파트 대규모 단지 등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 학생 공부방 및 지역

주민 독서공간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독서문화·정보센터로 육성

※ 사업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제3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사업주체 :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비 부담률 : 자체재원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신규 문고 개관 2개소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2월 ~ 3월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및 선정
- 2018년 4월 ~ 12월 신규 새마을 작은도서관 개관사업 추진

기대효과

- 새마을 작은도서관 개관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

Ⅲ-1-46.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북한이탈주민의 현지적응 및 직업준비 교육을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교류 등을 통하여 지역내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의 소외감 해소, 심리·안정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여건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북한이탈주민지원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행
- 2018년 1월 ~ 12월 운전면허 취득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문화체험을 통한 이질감 해소 및 제주사회 안정적인 조기 정착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방향 제시로 취업과 연계

### Ⅲ-1-47. 인권교육 운영

#### □ 사업의 필요성

- 도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통한 자기 권리 인식과 보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 다양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주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체 기반 확립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 □ 사업개요

- 건 명 : 인권교육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도 인권 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18년 2월
-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018년 3월 ~ 12월

#### □ 기대효과

- 제주지역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권 의식 확산 도모
- 인권 강사를 양성하여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Ⅲ-1-48.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실 운영

#### □ 사업의 필요성

- 국민안전도시 3차 공인에 걸맞는 도민에 대한 응급처치 지식 보급으로 위급상황에 처한 환자들의 생존률 향상
- 도내 대상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실시로 사고 예방 및 생명보호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3호

사업개요

- 건 명 :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실 운영
- 위 치 : 제주시 전농로 7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대상에 맞는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실시
- 총사업비 : 13,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위급상황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일반 등 교육
- 운영횟수 : 50회(1회당 20명 기준)

기대효과

- 도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및 안전문화의식 향상을 통한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 성인 뿐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응급대처 능력 향상
- 취약계층(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우 등)에게도 찾아가는 응급처치 지식을 보급하여 모두가 안전한 지역을 형성

Ⅲ-1-49. 도민 법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자치법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지식 강화를 통하여 도민권익 증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교육을 통해 제주 특별자치도 미래비전 공유 및 도민 자긍심 고취

사업개요

- 건 명 : 도민 법교육 운영
- 위 치 : 도내 전지역
- 사업량 : 도민 법교육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2월 : 2018년도 도민 법교육 계획 수립 및 홍보, 교육생 모집
- 2018년 3월 ~ 9월 : 도민 법교육 실시
- 2018년 10월 ~ 11월 : 도민 법교육 결과 정리

**기대효과**

-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법 교육을 통하여 도민 법률지식 향상으로 도민 권익 증대

**III-1-50. 인문학 최고지도자 과정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인문학적 콘텐츠에 기반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 제고 및 인문학 대중화 기반 마련
- 제주 지역 사회를 견인하는 지도자 및 제주도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지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제주발전 변화를 주도하는 소양과 능력 배양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2조 및 제16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사업개요**

- 건 명 : 인문학 최고지도자 과정 지원 사업
- 위 치 : 제주대학교(인문대학)
- 사 업 량 : 6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학년도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협약체결 : 2018년 1월
- 2018학년도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참여자 모집 : 2018년 2월
- 2018학년도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입학식(60명) : 2018년 3월
- 총 30강(학기별 15강) 및 공개강좌(특강) 별도 실시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지역사회-대학-지자체의 협력체제 구축 및 지역거점대학의 지역사회 역할 제고

- 성인학습자의 욕구 충족 및 지역사회 내 인문학적 가치 확립을 통한 사회공헌 기여

### Ⅲ-1-51. 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사업의 필요성

- 영어교육도시 정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내 주민 간 교류 프로그램 추진
-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제주사회 정착 지원
-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외 구성원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유도

#### □ 사업개요

- 건 명 : 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 사업량 : 영어교육도시 벵룩시장 2회, 한국어 프로그램 2회, 제주 역사·문화 프로그램 2회, 내·외국인 주민 교류행사 2회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제4회 영어교육도시 벵룩시장 개최 : 2017년 11월
- 2018년도 영어교육도시 벵룩시장 개최 : 2018년 5월·9월
- 2018년도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2월 ~ 5월, 9월 ~ 12월
- 2018년도 한국·제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4월·10월
- 2018년도 내·외국인 주민 교류행사 개최 : 2018년 4월·12월

#### □ 기대효과

-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외 구성원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한 도시 내 정주민들의 지역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제고
- 외국인 대상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제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강화 및 정주여건 만족도 제고
- 내·외국인 대상 제주 자연·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문화 우수성 홍보 및 정주민들의 소통의 장 마련

### Ⅲ-1-52. 재외도민 역량강화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 각 지역 재외제주도민회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유능한 재외도민들을 참여시켜 재외제주도민회 활성화 유도
- 재외도민들의 정체성 확립 및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정시책에 반영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 제7조

#### 사업개요

- 건 명 : 재외도민 역량강화 지원사업
- 사 업 량 : 재외도민 희망포럼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0월중
- 보조사업자 : 재외도민총연합회
- 총사업비 : 15,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재외도민 희망포럼 개최 : 2018년 10월

#### 기대효과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도정참여 기회 확대
- 재외도민회 도정참여의 기회를 통한 재외도민회 활성화 유도

### Ⅲ-1-53.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도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 마련
-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추진

#### 사업개요

- 건 명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오남로 221(한라도서관)
- 사 업 량 : 도서관 책잔치 프로그램, 독서의 달 행사, 제주인문독서아카데미, 제주 북콘서트(강연회), 어린이·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97,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도서관 주간 + 독서의 달 책축제 행사 (2018년 4월, 9월)
- 도내·외 유명 문학가 초청 아카데미 운영
- 인문독서 아카데미 등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독서교육 추진

**기대효과**

- 차별화된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
-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책 읽는 제주 만들기 운동에 앞장서고 도내 공공+작은 도서관 협력사업 강화

**Ⅲ-1-54.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지원**

**사업의 필요성**

-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의 환경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환경보전 운동을 선도할 환경전문가 육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22조

**사업개요**

- 건 명 :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 지원(정액)
- 사 업 량 :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환경정화활동, 환경보전과 이용 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시행주체 : (사)제주환경연구센터

**향후 추진계획**

- 제22기 환경보전지도자과정 수강생 모집 : 2018년 1월
- 환경보전지도자과정 운영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제주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대한 기본적 이론교육으로 환경

**Ⅲ-1-55.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대상 사회환경

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핵심 전문인력(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 교육을 통하여 강사의 질 높은 체계적 환경교육 강화

사업개요

- 건 명 :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 과정 운영
- 사 업 량 : 도내 환경교육 전문가 및 해설가 양성(80명)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 시행주체 :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향후 추진계획

- 환경전문가 양성 및 보수과정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18년 1월
- 협약체결 및 환경전문가 양성 민간위탁 교육과정 운영 : 2018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제주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 제주환경의 가치인식 제고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 조성 의식 고취
-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생활현장에서 환경보전 실천 유도

### III-1-56.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제주의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환경관련 지식·기능·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는 환경교육 기반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 및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22조

사업개요

- 건 명 : 학교 환경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 강화
- 사 업 량 : 초·중·고등학교 환경교육 지원(40개 학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 2018년 1월
- 학교 선도학교 선발(교육청) : 2018년 2월

- 학교 환경교육 실시 : 2018년 3월 ~ 12월
- 학교 환경교육 실시 결과 평가 : 2회(2018년 8월, 2019년 1월)

기대효과

- 학생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력 제고 및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 생활 속 친환경적 가치관 함양을 통한 환경보전 실천 강화 의식 유도

Ⅲ-1-57.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환경문제해결 능력 배양
- 생활 속 친환경실천을 위한 중점 환경교육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및 「자연환경연수원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침(환경부)」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량 : 환경학교, 환경이동체험장, 청소년녹색캠프 등 2만명 내외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85,714천원(국비 70%, 도비 30%)
- 시행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향후 추진계획

- 2018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2018년 1월 ~ 2월
-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친환경생활 유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환경교육 거점으로 적극 활성화

Ⅲ-1-58. 취미교실 운영비

사업의 필요성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취미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사업량 : 44개소 경로당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66,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3월 : 프로그램 신청 읍·면·동 예산 재배정 지원

**기대효과**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생활 향상 및 경로당 운영활성화 도모

### Ⅲ-1-59. 노인교실 운영비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교양, 오락 등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사업개요**

- 사업량 : 14개소 노인교실
- 운영 프로그램 : 일반교양, 건강강좌, 지역경제, 시사상식, 취미생활 등
- 운영방법 : 주 1회 이상, 1일 2시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8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3월중 노인교실 기능보강 공모 및 보조금 교부

**기대효과**

- 노인교실 운영 지원을 통한 어르신들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노인복지증진 지원

### Ⅲ-1-60. 제주문화원 육성사업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제주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등을 통한 제주문화 발전에 기여
- 제주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사업명 : 제주문화원 육성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2,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연간 운영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8년 2월 :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8년 2월 ~ 12월 : 제주문화원 육성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독특한 제주 문화의 보존 및 전승과 균형 있는 지역문화의 발전을 선도
-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제주지역 사회발전 및 문화발전에 기여

### Ⅲ-1-61. 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 사업의 필요성

- 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아동들에 대한 보육기능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사업개요

- 사업량 : 평가인증 유지 읍·면지역 어린이집 55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7,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읍·면 어린이집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

기대효과

- 읍·면 어린이집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

Ⅲ-1-62.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교육

사업의 필요성

-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보수 교육비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  
※ 사업시행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사업개요

- 사업량 :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18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체계화된 보수교육 지원

기대효과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으로 상담·지원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

Ⅲ-1-63. 한국어 교육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제2호

사업개요

- 사업량 : 한국어 교육 1개소(사업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2,162천원

**향후 추진계획**

- 한국어교육 사업 홍보 및 지속적인 신청자 모집

**기대효과**

-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통해 도내 거주 이주민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및 한국 생활 적응지원, 사회활동 참여·지원 및 상호 의사소통 증진을 통한 가족 내 갈등예방과 상생·협력 도모

**Ⅲ-1-64.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적 평가하여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운영 활성화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25조

**사업개요**

- 건 명 :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 사업
- 위 치 :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 2017년 12월
- 2018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계획 수립 : 2018년 1월 ~ 2월
- 우수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주민자치센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운영 활성화 도모

**Ⅲ-1-65.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추진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 위 치 :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사업량 : 26개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 2018년 1월 ~ 2월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선정 및 센터별 사업 추진 : 2018년 3월 ~ 10월
- 특화프로그램 사업결과보고 및 우수센터 시상 : 2018년 11월

기대효과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Ⅲ-1-66. 4.3 바로알기 체험인문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4·3에 대한 올바른 인식 조성
- 단순 순례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인문학적 접근 추진으로 시민 관심도 제고  
※ 사업시행 근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2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4·3 바로알기 체험인문학 운영 강사료 등
- 대 상 : 제주도민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1월(총 10회)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2월 : 세부 계획수립 및 참여자 모집
- 2018년 2월 ~ 11월 : 사업 운영

기대효과

- 체험인문학 강연을 통해 제주 4·3에 대한 화해·상생의식 및 사회통합성 제고

### Ⅲ-1-67. 행복학습센터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읍·면지역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읍·면 행복학습센터 운영
- 사 업 량 : 읍·면 행복학습센터 8개소 운영(거점 1, 한림 1, 애월 2, 구좌 1, 조천 2, 한경 1)
-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0월
- 총사업비 : 120,032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2월 ~ 4월 : 운영계획 수립 및 매니저 채용 등
- 2018년 5월 ~ 10월 : 행복학습센터 지정(8개소)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읍·면 생활권 내 근거리 학습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주민행복 증진

### Ⅲ-1-68.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100세 시대, 시민행복과 지역사회 지식, 정보 문화센터의 역할 수행을 위한 평생 학습 기반구축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계발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시 평생학습관(제주시 사라봉동길 15)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평생 배움의 기회 제공

**Ⅲ-1-69. 시민인문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민인문학 강좌를 통해 인문정신 확산 및 변화 마인드 함양에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시민인문학 운영
- 사 업 량 : 시민대상 인문학 강좌 운영 1식  
- 노자, 동양철학, 동·서양 고전 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2월 : 인문학 강좌 운영계획 수립 및 참가자 모집
- 2018년 3월 ~ 12월 : 인문학 강좌 운영 및 평가

**기대효과**

-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통해 인간의 소중한 가치 회복 및 시민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

**Ⅲ-1-70. 명사초청 시민행복 강좌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명사초청 시민 행복 인문학 강좌를 통하여 사회 속에 내재된 사회병리현상 치유 및 긍정적인 사고 전환으로 지역사회 통합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명사 초청 시민행복 강좌 운영
- 사업량 : 명사 초청 인문학강좌 8회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3월 ~ 12월 : 운영계획 수립 및 시민행복 강좌 운영(8회 운영)

기대효과

- 시민행복 강좌를 통한 긍정적 에너지 변화로 공동체 형성에 기여

### Ⅲ-1-71. 주민참여형 생활환경 교실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민참여형 저탄소 녹색생활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
- 지역주민들의 스스로 자발적인 실천 유도도 건강한 대천동 만들기 기여

사업개요

- 건 명 : 주민참여형 생활환경교실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대천동 일원
- 사업량 : 주민참여형 저탄소 녹색생활환경교실 운영 외 1개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주민 스스로가 요일별 쓰레기분리 배출 정착강화에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Ⅲ-1-72.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귀포시 매력 있는 마을만들기 포럼위원들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마을로 찾아가 해결해주는 맞춤형 마을만들기 서비스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포럼 운영
- 사업량 :
  -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 만들기 컨설팅단 운영
  - 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교실 운영
  - 각종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컨설팅 및 사전 주민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앙공모사업 마을 컨설팅 운영 : 2018년 1월 ~ 3월
- 각종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심사 및 사전 컨설팅, 교육 실시 : 2018년 1월 ~ 12월
-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 만들기 컨설팅단 운영 : 2018년 2월 ~ 12월
-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교실 운영 : 2018년 10월

기대효과

- 마을 특색을 살린 마을 만들기 방향제시 등을 통해 마을발전 토대 마련

Ⅲ-1-73. 서귀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사업의 필요성

- 지역주민 밀착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 사업량 : 서귀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및 운영 : 2018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

Ⅲ-1-74.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인문학, 제주역사·문화 등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문화대학 운영  
※ 사업시행 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 사 업 량 :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 2018년 2월
- 서귀포문화원 문화대학 개강 및 운영 : 2018년 3월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문화중심 대학을 운영함으로써 문화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Ⅲ-1-75. 문화의 집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문화의 집 3개소(보목, 중문, 남성)

- 총사업비 : 3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문화의 집 운영실태 지도·점검
- 문화의 집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기대효과**

-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삶의 질 향상

**Ⅲ-1-76. 국화분재교실**

**사업의 필요성**

- 마을사업으로 국화꽃(소국)을 재배하는 유일한 마을로서 이를 활용한 국화분재 교실 운영 및 국화전시회를 통하여 주민화합과 마을홍보 활성화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관내
- 사업량 : 분재교실 및 전시회 1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2018년 1월
- 사업 추진 : 2018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국화교실을 열어 기존 마을사업인 국화-소국 식재형태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키우고,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화합과 마을 홍보의 장 마련

**Ⅲ-1-77.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인력 배치 및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 및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동문로 39
- 사 업 량 :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 4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1,232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인력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개소 40명

기대효과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으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 Ⅲ-1-79. 읍·면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읍·면지역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읍·면지역의 아동에 대한 보육 기능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보조 등)

사업개요

- 건 명 : 읍·면소재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위 치 : 서귀포시 읍·면지역 어린이집
- 사 업 량 : 37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 사업비 : 53,3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시설별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기대효과

- 읍·면지역 어린이집의 열악한 보육환경의 개선 기대

### Ⅲ-1-79.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비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비 지원을 통해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개요

- 건 명 :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비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 업 량 : 지역아동센터 25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9,2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대효과

- 문화·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시설이용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질 향상

### Ⅲ-1-80. 한국어교육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사회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의2

#### 사업개요

- 건 명 : 한국어교육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시 중앙로 81)
- 사 업 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2,162천원

**향후 추진계획**

- 한국어교육 심화과정 및 중도입국자녀과정 교육 운영

**기대효과**

- 한국어를 학습하여 한국사회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안정적 적응

**Ⅲ-1-81. 행복나눔 폐가구 리폼 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버려지는 폐목재 및 폐가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제고 및 환경의식 향상
- 리폼가구 나눔행사 및 수익금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 분위기 확산 도모

**사업개요**

- 건 명 : ‘행복나눔 폐가구 리폼’ 프로그램
-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동 산8-1(남부광역소각장)
- 사 업 량 : 폐가구 리폼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3,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3월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2018년 3월 ~ 10월 : 리폼가구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8월, 9월 :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 주민자치&평생학습박람회 전시

**Ⅲ-1-8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

- 서귀포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발굴과정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집 제작 등 각종 사업 추진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사업개요**

- 사 업 량 : 특화프로그램 발굴과정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9,31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발굴과정 운영 : 2018년 1월 ~ 3월 중
- 전 주민자치위원 대상 자치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2018년 상반기 예정

**기대효과**

- 각종 사업추진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Ⅲ-1-83.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사업의 필요성**

-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평가를 통한 결과 환류 및 인센티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사업개요**

- 사업량 :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사업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평가 : 2017년 12월
-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인센티브 사업 보조금 지원 : 2018년 2월
- 센터별 인센티브 사업운영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동기부여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Ⅲ-1-8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

- 프로그램 발굴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사업개요**

- 사업량 :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4,85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주민자치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대효과**

- 주민주도의 프로그램 발굴과정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

**Ⅲ-1-85. 우수 새마을작은도서관 독서문화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새마을문고의 육성 지원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의식수준 향상과 독서생활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 전달 및 문화욕구 충족  
※ 사업시행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률」 제3조

**사업개요**

- 사업량 : 독서문화교실 40개 강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비 교부 및 운영지원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새마을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독서분위기 확산 및 새로운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문화시민의식 수준 향상

**Ⅲ-1-86. 저소득층 새마을작은도서관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지역의 청소년 및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학습기회 제공 및 지역문화 사랑방으로서의 역할 수행하기 위하여 저소득 문고운영예산 지원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률」 제3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새마을작은도서관 2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 문고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 및 문고 운영활성화 지원

기대효과

- 학습지원프로그램 및 다양한 문화강좌 제공으로 청소년에게 학습기회 제공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사랑방 역할 수행

Ⅲ-1-87. 외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관내 청소년들에게 세계 여러나라 외국인들과의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외국문화체험 프로그램
- 위 치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서귀포시 동홍중앙로 7번길 19)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공기관대행사업 협약체결 및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2월 ~ 10월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다양한 시선을 통해 전인적 성장 도모

### Ⅲ-1-88.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4060세대의 퇴직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들의 은퇴 후 인생설계를 통하여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조

####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
- 사 업 량 : 은퇴설계 교육 아카데미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위탁자 선정 사업비 교부 : 2018년 2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8년 3월 ~ 12월

#### 기대효과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퇴직 후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과 동기부여
-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교육 필요

### Ⅲ-1-89. 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 운영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장애학생에게 주말동안 다양한 문화체험 및 예체능 활동 지원으로 학부모에게는 사회활동 참여를 증대시키고, 장애학생에게는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의 기회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 장애학생 50명(제주시 30명, 서귀포시 20명)
- 운영 내용
  - 다양한 문화체험, 특기적성 활동을 통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주말학교 프로그램 운영

- 장애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공모 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 2018년 3월 ~ 12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평가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장애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

## Ⅲ-2. 평생학습 기반 지역 미래가치 창출 지원

### Ⅲ-2-1. 토요일문화학교 운영지원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른 매주 토요일, 초·중·고 학생 및 가족대상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 소양 함양 및 가족간·또래간 소통하는 건전 문화 조성
-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토요일문화학교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 ~ 12월
- 총사업비 : 702,000천원
- 주 관 :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제주문화예술재단)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사업 공모 및 선정(2018년 1월 ~ 2월), 프로그램 운영(2018년 3월 ~ 12월)

#### 기대효과

- 문화예술체험·탐구·공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또래간·가족간 소통 기회 제공으로 문화예술 교육의 일상화 및 건전 여가 문화 조성

### Ⅲ-2-2. 작은도서관 상호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작은도서관 사서간의 정보교류와 이를 통한 역량 강화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건 명 : 작은도서관 상호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대 상 :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9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작은도서관 상호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 2018년 1월 중
- 작은도서관 상호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대상자 결정 및 보조금 교부 : 2018년 2월 중
- 작은도서관 상호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

**Ⅲ-2-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위기 청소년과 지속적인 상호교류, 정서적 지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동반자가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9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사업개요**

- 수탁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양명희)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6,262천원

**기대효과**

- 지속적인 청소년 교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정서적 지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동반자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 만족도 향상

**Ⅲ-2-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으로 복지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복지리더를 육성·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 인적 안전망 구축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17조(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0월
- 사업량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 등 130명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추진방법 : 도내 대학교에 위탁 교육
- 사업내용 : 사회복지의 이해, 클라이언트를 위한 대화기법 강의, 복지사각지대 발굴방법, 지역협의체위원 역할 정립

기대효과

- 복지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로 지역복지 문제해결에 선도적 역할 수행
- 복지대상에게 민·관 협업 서비스 활성화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Ⅲ-2-5.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 학업지속 및 자립의욕 고취
-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6조

사업개요

- 수탁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양명희)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30,000천원
- 사업내용 : 가출·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 종합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가출·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등 취약계층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 학업 지속 지원 및 자립의욕 고취

### Ⅲ-2-6.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자원봉사 의미 및 활동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체험프로그램과 교육사업 등을 운영하여 더 나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및 제65조

####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 기대효과

-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과 자기주도적 진로교육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미래세대 리더로서의 역량강화에 기여

### Ⅲ-2-7.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청소년지도자들이 타시·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에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청소년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타시·도 전문기관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도내 기관 등과 연계 실시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 기대효과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Ⅲ-2-8. 살아 숨쉬는 향교활용사업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으로, 과거 지방 교육의 산실인 향교와 서원 문화재의 지정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여 문화재적 가치 확대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2조

####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일원
- 사업량 : 도내 향교 2개소(제주향교, 정의향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28,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교부결정 : 2018년 2월
- 사업착수 및 정산 : 2018년 4월 ~ 10월

#### 기대효과

-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교부결정 : 2018년 2월
- 사업착수 및 정산 : 2018년 4월 ~ 10월

### Ⅲ-2-9. 향교재단 평생교육 유림대학 운영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유학을 이끌어나가는 청·장년 대상의 유교 경전교육을 실시하여 유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 양성
- 지역주민에게 유학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회복하여 세대간·계층간 갈등 완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림지도자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2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사업량 : 청·장년 대상 강좌 교재비 및 강사비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 유림대학 운영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2018년 1월
- 유림대학 유학지도자과정 운영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사회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및 도덕성 함양 계기 마련

**Ⅲ-2-1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프로그램운영 및 전승 활성화 사업**

**사업의 필요성**

-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 공연공간인 전수교육관의 전략적 이용을 강화하고, 지역 무형문화재의 활용 및 향유장소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수관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필요
- 다양한 무형문화 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및 일상화  
※ 사업시행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사업개요**

- 건 명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프로그램운영 및 전승 활성화 사업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무형문화재전수관 프로그램 운영, 무형문화재 전통학교 운영 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42,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공기관 협의 : 2018년 1월
- 사업별 착수 및 최종보고회 : 2018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전통문화 향유의 거점 공간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확대
- 다양한 무형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승자의 전승의욕 고취 및 대중과 소통을 통해 제주전통문화의 진수를 알릴 수 있는 기회 제공

### Ⅲ-1-11. 탐라종묘문화재단 탐라문화아카데미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탐라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굴하여 제주 전통문화를 전승·보급하기 위한 사회교육과정인 탐라아카데미를 운영
- 탐라역사의 창조적 계승과 글로벌시대의 다양한 문화조류 속에 탐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탐라고유의 문화 발굴·보급하기 위함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2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탐라문화교육관
- 사 업 량 : 도민 대상 강좌 교재비 및 강사비 1식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정의·대정향교 석전대제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2018년 2월, 7월
- 춘추석전대제 봉향 : 2018년 3월, 9월

#### 기대효과

- 유교의 핵심제례 봉행을 통해 제주 유교문화의 보전·전승 및 도민 교화

### Ⅲ-2-12. 탐라양씨전승원문화재단 효 문화 진흥 활성화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현대적인 의미로서의 효·전통예절 등 윤리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도모
- 매년 효를 주제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민족 전통사상인 효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생활 속의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
-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2조

#### 사업개요

- 위 치 : 재단 교육원 및 건승원(제주시 애월읍 소재)
- 사 업 량 : 효문화 진흥 활성화사업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0월
- 총사업비 : 1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효문화 진흥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2018년 3월
- 효문화 진흥 활성화사업 운영 : 2018년 4월 ~ 10월

**기대효과**

- 도민들의 올바른 전통예절 습득 및 효사상 고취
-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전통 충효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 마련

**Ⅲ-2-13.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배양을 위한 역량 강화사업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 사업주체 : 언론사,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 여성단체
- 사업량 : 2개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홍보

**기대효과**

- 제주미래를 이끌어갈 제주여성들의 권익향상 및 제주여성의 역할 재정립

**Ⅲ-2-14. 탐라의 얼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탐라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강의 및 현장답사 연계교육 실시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및 탐라의 얼을 되새기는 계기 제공

**사업개요**

- 사업량 : 2기, 80명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7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주요내용
  - 제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강의 주제 선정
  - 도내 역사 유적지 및 탐라국 해상교역로 중심의 현장 답사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2월 : 교육운영계획 수립
- 2018년 3월 ~ 6월 : 교육과정 운영
- 2018년 7월 : 도외 현장 답사

**기대효과**

- 제주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

**Ⅲ-2-15. 일도1동 예술주민자치학교 사업(일도1동)**

**사업의 필요성**

-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특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지역적 편중 완화를 위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3조

**사업개요**

- 건 명 : 일도1동 예술주민자치학교 사업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15길 6(1층), 관덕로15길 12(2층)
- 사 업 량 : 일도1동 예술주민자치학교 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2018년 1월 ~ 12월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컨설팅 및 지도 : 2018년 3월 ~ 12월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마무리 및 정산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 충족으로 지역간 불균형 완화 및 주민주도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별로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

### Ⅲ-2-16. 글로벌 챌린지 퀴즈챌프 방송운영사업

####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외국어능력 향상과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로 육성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인 인재 인프라 구축에 기여
- 대도시 지역에 비해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발휘 할 기회가 적은 제주지역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어 학습에 동기부여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

#### □ 사업개요

- 건 명 : 글로벌 챌린지 퀴즈챌프 방송운영사업
- 위 치 : 도내 일원
- 사업량 : 퀴즈프로그램 제작 30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30,000천원
- 사업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KCTV제주방송

#### □ 향후 추진계획

- 퀴즈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팝송경연대회, 스피치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추진
- 영어, 중국어를 배우는 청소년들과 더불어 일반인들도 출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토론’ 형태의 퀴즈 코너 신설

#### □ 기대효과

- 도내 청소년의 외국어 학습동기 유발 분위기 확산
- 도민 대상 특집 퀴즈방송으로 도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자연스럽게 유도

### Ⅲ-2-17. 제주해녀 역량강화사업

#### □ 사업의 필요성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주체적이며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제주해녀 공동체 문화의 확산 필요
- 세계적으로 한국(해녀)과 일본(아마)에만 있는 전통해녀어업에 대한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일본 아마 서밋(Ama Summit)에 제주해녀 대표 참가
-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및 제11조(교류)

사업개요

- 건 명 : (사)제주특별자치도해녀협회, 일본 아마 서밋 참가 지원
- 사 업 량 : 제주해녀대표단, 아마 서밋(Ama Summit) 참가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0월중 - 행사기간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일본아마대표단 및 (사)제주해녀협회 상호 방문계획 협의 : 2018년 2월 ~ 8월
- 일본 아마 대표단, 제11회 제주해녀축제 참가에 따른 교류 : 2018년 9월
- (사)제주특별자치도해녀협회, 일본 아마 서밋 참가 지원 : 2018년 10월

기대효과

- 전통해녀어업에 대한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
- “(사)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의 위상강화에 기여

Ⅲ-2-18. 제주해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제주해녀문화 중 도내 어촌계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 전통문화가 현대화 및 고령화로 인해 소멸되고 있음
- 제주해녀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무형유산을 보전함으로서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해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제주도내 어촌계
- 사 업 량 : 제주도내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주해녀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18년 1월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2018년 1월
- 사업 착수 및 완료, 정산 : 2018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제주해녀의 전통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보전 및 관광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이바지

Ⅲ-2-19. 제주해녀문화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해양 전문가 교육을 통해 해양문화유산 탐방 기회 제공
- 제주해녀에 대한 실질적 이해도 제고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개요

- 건 명 : 해녀박물관 해녀문화 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량 : 해녀문화 아카데미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해녀문화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 2018년 2월
- 해녀문화 아카데미 홍보물 및 강의자료집 제작 : 2018년 3월 ~ 4월
- 해녀문화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2018년 5월
- 해녀문화 아카데미 운영 : 2017년 6월 ~ 7월
  - ※ 일반인, 전문가, 청소년 등 연령 및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

기대효과

-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이론과 실기가 결합된 해녀문화 전문가를 양성하여 해녀 문화 홍보 및 교육 확산

Ⅲ-2-20.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사라져 가는 해녀공동체의 응원과 격려문화인 ‘계석’ 문화의 부활 및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을 위하여 해녀의 특성과 눈높이를 고려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8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량 : 해녀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7년 12월
- 민간위탁 공고 및 계약 : 2018년 1월 ~ 2월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2월 ~ 11월
- 사업비 정산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사라져 가는 해녀공동체의 고유문화의 전승, 보전 및 발전
- 글로벌 유산 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해녀공동체 의식 제고

### Ⅲ-2-21. 해녀양성 교재개발 사업

사업의 필요성

- 해녀의 현업 종사연계를 위하여 해녀학교 이론과 실기과정을 담은 교구재개발 및 해녀문화와 물질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에게 보급형 콘텐츠로 제작하여 신규 해녀 양성에 기여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해녀 양성교육 및 어촌계 정착지원 등)

사업개요

- 건 명 : 해녀양성 교재 개발사업
- 위탁기관 : 제주연구원
- 사업량 : 해녀양성 교재 개발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위탁체결 : 2018년 1월 ~ 2월

- 사업 추진 및 정산 : 2018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해녀학교 대상 교구재 개발과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형 콘텐츠로 제작 보급을 해녀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해녀문화 확산과 전승에 기여

Ⅲ-2-22. 문화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민대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식과 소양을 넓힐 수 있는 평생 교육의 장 마련
- 제주 향토사 및 전통문화 강의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역문화 의식 및 애향심 고취

사업개요

- 사업량 : 문화대학 강좌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주요 프로그램 : 총 5개분야(민속, 자연, 역사, 문화, 현장답사) 30회 강좌 운영
- 총사업비 : 1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2월 : 제주문화원 운영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2018년 3월 ~ 12월 : 문화대학 개강 및 운영

기대효과

- 수준 높은 외부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지역주민의 지식 욕구 부응 및 문화욕구 충족
- 지역 향토사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제주문화의 정체성 공유를 통한 연대감 형성

Ⅲ-2-23. 읍·면·동 기량향상 품물 교육 운영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장단 및 기본 사물놀이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 운영
- 사물놀이 기본기를 다져 민속보존회의 역량강화 및 민속예술 계승·발전

사업개요

- 사업량 : 품물 교육 운영 지원(1개월)

- 사업대상 : 27개 읍·면·동 민속보존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읍·면·동 민속보존회 교육운영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비 지원

**기대효과**

- 사물놀이 장단 등 기본기 습득을 통한 읍·면·동 민속보존회 역량 강화 및 실력양성
- 체계적인 풍물 교육으로 경연 대회에서 수준 높은 무대 공연 실력 발휘

### Ⅲ-2-24. 역사박물관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강좌 운영 필요
-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애호사상 확산 및 시민의식 제고를 통한 문화시민의 양성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 사업량 : 30강좌(수강생 12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위탁협약 체결
- 2018년 2월 : 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
- 2018년 2월 ~ 12월 : 박물관대학 개강 및 강좌운영

**기대효과**

- 제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 애향심 고취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 Ⅲ-2-25.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여성의 교육함양과 사회참여 및 기회확대와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동법시행령 제17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여성대학 수강생 80명
- 보조사업자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2월 : 여성대학 계획수립 및 모집
- 2018년 3월 ~ 12월 : 여성대학 운영

기대효과

-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제주미래 여성인재 육성

### III-2-26. 시민경제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급변하는 금융환경 등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경제활동과 연계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향상
- 시민 경제의식 제고로 지역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경제 활력이 넘치는 도시구현  
※ 사업시행 근거 : 「경제교육지원법」 제4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시민경제대학 시민강좌 운영(수강생 100여명 예정)
- 사업방법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
- 총사업비 : 3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2월 :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준비
- 2018년 1월 ~ 2월 : 수강생 모집
- 2018년 3월 ~ 12월 : 시민경제대학 운영 및 정산

기대효과

- 시민경제대학 강의의 양적(학기제 운영)·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높아진 시민들의 지적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소통문화 확산으로 수강자 만족도 제고

### Ⅲ-2-27.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올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보제공을 통해 제주올레 관광객 유치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
- 사 업 량 :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연 4회)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 : 연 3회

#### 기대효과

- 제주문화 및 올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제주올레의 자생력 향상

### Ⅲ-2-28. 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예술 및 아카데미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문화교육 욕구 충족

#### 사업개요

- 건 명 : 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태평로 270
- 사 업 량 : 문화예술교육 4개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문화예술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18년 1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4월 ~ 11월

#### 기대효과

-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생활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및 예술인 저변 확대

### Ⅲ-2-29. 시민대학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선진 시민의식 함양 및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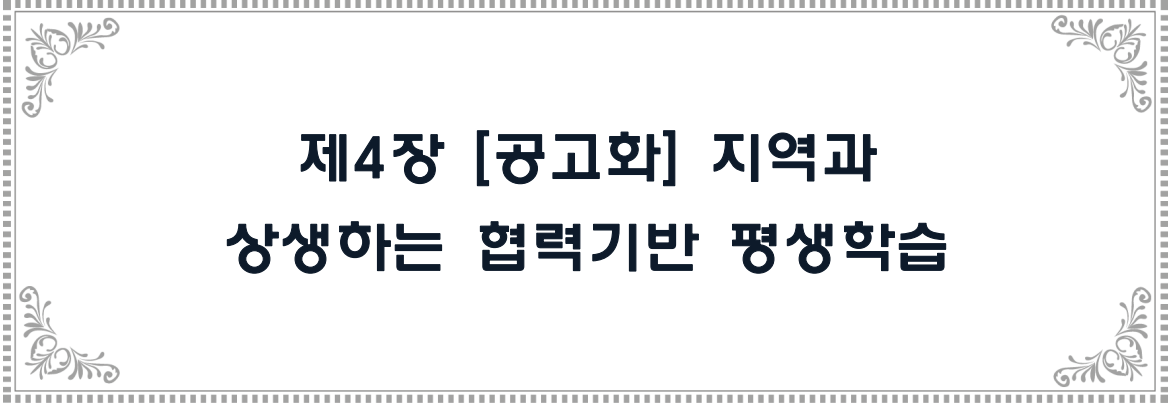
- 건 명 : 서귀포시민대학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읍면사무소
- 사 업 량 : 인문학·글로벌아카데미 2개 과정(10회)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서귀포시민대학 업무 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업무 대행 협약 추진 : 2018년 2월
- 글로벌·인문학아카데미 운영 : 2018년 3월 ~ 9월

#### 기대효과

- 시민의 글로벌 마인드 및 인문학적 교양 함양 등 시민 역량 강화



**제4장 [공고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기반 평생학습**



## IV. [공고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 기반 평생학습

### IV. 공고화 지역과 상생 · 협력하는 평생학습



**의 의** 제주지역과 상생하는 협력거버넌스 기반의 평생학습 체계구축

**방 향** 평생학습 기반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중 점** 지역협력 평생학습 기반 구축, 평생학습 국제협력 및 글로벌 역량강화, 지역 차원의 평생학습 투자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평생학습 투자

**내 용** 평생교육 관련 홍보사업 확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직 운영, 평생교육기관(단체) 간 협력사업의 활성화, 국제기구와의 평생교육 협력 확대, 국제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 사업운영, 특수 외국어교육의 활성화, 지역(마을)과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주민참여예산 및 국·도정시책 관련 교육 실시, 재능기부 등을 활용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

→ 국가와 지역의 협력거버넌스 기반 제주평생교육의 체계 및 역량강화

## IV-1. 평생학습 기반 강화

### IV-1-1. 21세기 시민그린대학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도민으로서 청정제주의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 이해 및 1차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도민들에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여 농촌지역 사회활동 참여 및 평생학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건 명 : 21세기 시민그린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제주대학교)
- 사 업 량 : 1개소 5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세부 운영계획 수립 : 1과정 50명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교육강사 초청 교육프로그램 운영 : 3월 ~ 11월

#### 기대효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인식 및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 IV-1-2. 글로벌 인재육성 교류사업

#### 사업의 필요성

-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교류의 일환으로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 증진 및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인드 함양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 사업개요

- 건 명 : 한·일해협 연안 청소년 포럼 참가
- 사 업 량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10여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총사업비 : 15,0000천원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국제적 전문확대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IV-1-3. 맞춤형 도민외국어 교육

사업의 필요성

- 맞춤형 외국어 교육 실시로 국제화 마인드 고취 및 외국어 능력 향상 기대
- 글로벌 인적기반 구축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도민 외국어교육 실시

사업개요

- 건 명 : 맞춤형 도민외국어 교육
- 사 업 량 : 영어·일어·러시아어·베트남어 4개 언어 10개과정, 72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총사업비 : 111,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2월 : 맞춤형 외국어교육 운영과정 계획수립
- 2018년 1월 : 교육위탁 어학원과 계약체결
- 2018년 1월 ~ 12월 :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실시

기대효과

- 맞춤형 교육 중심으로 도민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적기반 구축

IV-1-4. 도민 중국어아카데미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의 요구와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중국어 학습 기회 확대로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 건 명 :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 사 업 량 : 2개 과정, 2,325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총사업비 : 27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2017년도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계획 수립 및 협약
- 2018년 2월 ~ 12월 : 2018년도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추진

**기대효과**

- 도민 중국어 기초회화교육 확대로 실용중국어 구사능력 향상

**IV-1-5.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재외도민에게 제주의 발전상과 전통역사·문화 체험의 고향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제주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을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
- 사 업 량 : 2개 과정(대학생반, 임원반), 100명
- 사업기간 : 2018년 8월 ~ 2018년 10월
- 총사업비 : 9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3월 : 향토학교(대학생반, 임원반) 계획 수립 및 시행
- 2018년 8월 ~ 10월 : 향토학교(대학생반, 임원반) 추진

**기대효과**

- 고향제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제주인으로서 애향심 및 자긍심·사명감 고취

**IV-1-6 . 도민 사이버 외국어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민 외국어 교육지원을 위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이버

외국어학습 기반 조성

사업개요

- 사업량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 434강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연중)
- 운영방법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내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 구축·운영  
(<http://lms.darakwon.co.kr/jeju/>)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2월 : 사이버외국어 어학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 2018년 1월 ~ 12월 : 사이버어학센터 운영

기대효과

- 다양한 어학 콘텐츠 제공으로 도민의 외국어 역량 강화에 기여

IV-1-7.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종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정관개정 및 관련 조례개정(2017.5.1.)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 장학사업과 더불어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통합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는 비영리 공익법인(출자·출연기관)으로 재출범
- 다양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평생학생 관련 정책 및 평생교육 사업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전문적인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금
- 위 치 : 제주시 연삼로 473
- 사업량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8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학금 지원 및 청년배낭여행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 수혜대상자 확대

- 제주지역 평생교육 기초 연구·조사, 다모아정보망 운영, 홍보 사업
-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 □ 기대효과

- 다양한 연구조사·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정보제공과 도내 평생 교육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으로 평생교육 진흥
-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사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제주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 IV-1-8.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

#### □ 사업의 필요성

- 유네스코 제37차 총회(2013년 11월)에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사업 승인 및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UIL)를 담당부서로 지정
- 제1차 학습도시 국제회의(2013년 10월 21일 ~ 23일, 중국 북경)에서 채택된 ‘학습도시 구축에 대한 베이징 선언’ 과 ‘학습도시의 핵심 특징’ 에 기반
- 제2차 학습도시 국제회의(2015년 9월 28일 ~ 30일, 멕시코시티)에서 공식 출범 및 가입신청 접수 시작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5조 및 20조

#### □ 사업개요

- 공모 대상: 국내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시·군·구(총 155개)
- 가입 기준
  - 평생학습의 증진 및 학습도시에 대한 비전 추구에 앞장서는 도시
  - 학습도시의 핵심 문서인 ‘학습도시 구축에 대한 베이징 선언(Beijing Declaration on Building Learning Cities)’ 과 ‘학습도시의 핵심특징(Key Features of Learning Cities)’ 채택에 동의하는 도시
- 주요내용
  - 학습도시 구축에 대한 우수사례 및 전문성 공유를 위한 국제정보교환 플랫폼 제공
  - 정책공유, 협력증진을 통한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평생학습의 발전 지원  
※ 가입도시 : 47개국 195개 도시(2017년 9월 기준), 한국은 총 35개 시·군·구
- 소요예산 : 비예산

**향후 추진계획**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모집공고 : 2018년 2월 ~ 3월
- 국내 평가 및 영문 가입지원서 제출 : 2018년 4월 ~ 5월
- UIL 최종 회원가입 승인 : 2018년 6월 ~ 7월

**기대효과**

- 국내·외 평생학습도시와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여건 조성
- 제주도, 서귀포시 평생학습도시 도약 기대

**IV-1-9. 전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교육부 주최(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로 전국 단위 평생학습 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도 및 도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시의 평생교육을 종합한 통합 홍보·체험관을 운영하여 제주지역의 자료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홍보·제공
- 타지역의 우수사례와 정보를 상호 교류로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한 정책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제주지역 통합 홍보·체험관 운영
- 위 치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행사장 내(부산광역시)
  - \* 제5회(2016년도) : 경상남도 거창(공모 등의 방법으로 개최지 선정)
- 사 업 량 : 제주통합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0월 중(3일 간)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제주홍보관 운영계획 수립 : 2018년 8월
  - 제주 홍보내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내용 확정 등
-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 : 2018년 10월(3일간)

**기대효과**

- 전국 단위 평생 교육 네트워크 강화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제주형 평생교육 진흥의 정책·프로그램 개발자료 수집 및 활용

#### IV-1-10.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도민사회발전 환경을 반영한 도민교육 욕구 및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기반 조성
- 직업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특화형 프로그램 우선 지원으로 일반 교양·취미성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평생교육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 사 업 량 : 평생교육기관(법인·단체 등) 대상 공모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지원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도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발적·자기주도적 평생학습 육성
- 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비문해자들에게 실질적 교육기회 제공

##### 기대효과

- 평생학습 기반 조성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로 평생교육 진흥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

#### IV-1-11.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공교육을 보완하여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등 미래인재양성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
-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교육 서비스 전달기구 구축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마중물배움터 17개소 등
- 사 업 량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 소외지역 찾아가는 마중물배움터 확대 운영: 17개소 → 20개소
-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등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 등 복합문화사업 추진

기대효과

-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사회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로 교육복지 강화 및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 만족도 향상

**IV-1-12.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 강좌**

사업의 필요성

-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3인 3색 토크콘서트를 통해 평화와 인권 실천사례를 생생하게 소개하여 평화의 섬 제주의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 강좌
- 사 업 량 : 평화와 인권을 위한 도민강좌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 평화와 인권을 위한 평생교육강좌 보조금 정산 실시 : 2017년 9월 ~

기대효과

-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평화와 인권교육을 통한 세계평화도시의 공감대 형성 및 강좌와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민의 평화의식 고취

#### IV-1-13.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중국어 학습인프라 구축으로 대중국 대응 역량 강화
- 관광 제주 환경 조성을 위해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필요성 대두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 교육 진흥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 건 명 :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 위 치 : 제주시, 서귀포시 중국어체험학습관
- 사업량 :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2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77,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제주시, 서귀포시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 기대효과

- 상인, 택시기사, 관광종사자 등의 중국인 관광객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으로 전반적인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 수강생의 수준별·직업군별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교육과정 및 중국어 흥미 유발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도민 누구나 중국어를 쉽게 접하고 학습·훈련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IV-1-14.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 사업의 필요성

- UN기구 유치 및 운영으로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계기 마련  
\* (센터 개소 ~ 2017년 8월) 수혜국 연인원(571개국 3,193명)
- 도내 유치된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국제기구(유엔 전문기구, 세계지방 정부 연합 등) 및 아태지역 지방정부(말레이시아 페낭, 인도네시아 와카토비, 호주 타즈 매니아, 부탄 팀푸, ITOP Forum 회원정부 등)와 제주도 간의 실질적 국제교류 기반 제공

-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평화 실천 이미지 강화하기 위해 UNITAR 국제연수센터 네트워크(CIFAL Global Network)내 협력을 선도하여 개도국 정책역량 개발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전세계로 확산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 기간/장소 : 2018년 1월 ~ 12월, 국·내외 일원
- 사업주체 : (재)국제평화재단
- 사업량 :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50개국 1,000여명 참여
- 총사업비 : 1,0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세계적 지적·인적 네트워크 구축 계기 마련

**IV-1-15.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재일제주인 청소년들에게 모국어 습득능력을 향상시켜 선조들이 고향 사랑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조성
- 차세대 재일제주인에 대한 정체성 및 동포사회 세대간 융합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운영
- 사업량 : 한국어 강좌 및 제주역사문화 체험 1식
- 사업기간 : 2018년 7월 ~ 8월
- 보조사업자 : 제주관광대학교
- 총사업비 : 4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한국어 강좌 운영 계획 수립 : 2018년 4월
- 사업시행 : 2018년 7월 ~ 8월

**기대효과**

- 재일제주인 차세대들의 고향에 대한 정체성 확립 및 세대간 융합 계기 마련

**IV-1-16.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사업의 필요성**

-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 평생교육체험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제주시 평생학습 운영사례 홍보 및 타시·도와 정보교류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6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및 견학
- 위 치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행사장(부산광역시)
- 사 업 량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0월중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6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운영 : 2018년 10월 중(부산광역시)

**기대효과**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성과 평가 기회 제공 및 평생학습 기관·참여자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IV-1-17. 제주시 평생학습대회 개최**

**사업의 필요성**

- 2018년 제주시 평생학습대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운영 성과 평가 및 우수 프로그램 발표 등을 통한 평생학습 발전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 평생학습대회 개최
- 사업기간 : 2018년 하반기(10월중)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0월(예정) : 평생학습대회 개최

**기대효과**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성과 평가 기회 제공 및 평생학습 기관·참여자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IV-1-18.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급속한 사회변화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행복과 성장을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조

**사업개요**

- 건 명 :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 위 치 :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서귀포시 서문로29번길 10)
- 사업량 : 5개 분야 · 116개 과목 · 217개 과정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9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2018년 1월
-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2018년 2월 ~ 12월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적 욕구해소 및 창업·재취업을 위한 학습기회 마련
-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평생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은 물론 시민의 자발적인 평생학습 참여 유도

#### IV-1-19.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

#####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로 72번길 2 등 12개소
- 사 업 량 : 청소년공부방 12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2개소

##### 기대효과

- 지역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문화체험 활동 기회 제공

#### IV-1-20. 서귀포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사업의 필요성

- 지역평생학습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학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기관·단체에게는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배우고 나누고 참여하는 평생학습의 장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 권장)

#####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사 업 량 : 서귀포시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9월 ~ 11월중(2일간)
- 총사업비 : 26,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서귀포시평생학습박람회 개최계획 수립 : 2018년 8월

**기대효과**

- 평생학습박람회를 통한 배우고, 나누고, 참여하는 평생학습문화의 전파 및 확산
- 평생교육 기관·단체·학습자들이 유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화 및 학습교류를 증진시키고, 시민들에게는 평생학습 동기부여 기회 제공

## IV-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 IV-2-1. 재능기부 강사(1경로당 1강사) 양성 프로그램 보급

#### 사업의 필요성

- 경로당회원 중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을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경로당 등에서 강사로 자원봉사 활동으로 프로그램 보급

※ 사업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항

#### 사업개요

- 사업량 : 60명(프로그램 보급요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경로당광역지원센터)
- 사업내용 : 재능기부강사 양성
- 총사업비 : 80,000원

#### 향후 추진계획

- 1경로당 1강사 양성 교육 및 강사 활동 추진

#### 기대효과

- 도내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전문강사의 인적자원 부족 해소
- 재능을 기부하는 강사 어르신의 자원봉사를 통한 성취감 고취

### IV-2-2. 작은도서관 상호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사업의 필요성

- 작은도서관 사서간의 정보교류와 이를 통한 역량 강화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건 명 : 작은도서관 상호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대 상 :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9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도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책 문화 행사를 열어 지역공동체를 형성
-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집 발간을 통한 지역정보 공유
- 각종 문화행사에 자원활동가를 활용한 재능기부 특화행사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 촉진

**기대효과**

- 지역주민들에게 독서의 장이 되고 독서문화를 정착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도서관 구축과 공공도서관 여백을 메워주는 지역도서관의 중심적 역할 기대

**IV-2-3. 여성 전문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소통 공간 형성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
- 숨은 재능의 재발견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도민만족의 내실있는 전문교육 운영

**사업개요**

- 사업량 : 110개 과정, 3,50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9,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여성교육관련 기관 간 상호협조 및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워크숍 : 12월
- 2017년 여성전문 교육운영 평가 및 2018년 계획 수립 : 12월

**기대효과**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으로 여성의 자아실현 및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

#### IV-2-4. 여성역량강화 지원 - 설문대 여성학교

##### 사업의 필요성

-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확대에 따른 교육을 통한 제주 여성의 역할정립 및 자존감 고취
-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선도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량 : 7개과정, 250여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6,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설문대여성학교 운영 : 2018년 1월 ~ 12월
  - 제주여성 멤버십 기본과정 : 2개과정(기본교육 / 심화교육) 60명
  - 여성인문학 과정 : 1개과정 40명
  - 제주여성 제주알기 과정 : 1개과정 40명
  - 찾아가는 지역여성 리더과정 운영 : 1개과정 30명 - 읍·면 단위
  - 설문대여성학교 수료생 대상 역량강화 교육 운영 : 2개과정 80명

##### 기대효과

- 제주여성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통한 변화의 주체로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성 리더 양성으로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 마련

#### IV-2-5.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3관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네스코 3관왕에 대한 자긍심 및 보전 의식 고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업량 : 도내 초·중·고등학교 10 ~ 20여 개교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사업비 : 2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 2018년 2월
- 유네스코학교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4월 ~ 12월

**기대효과**

- 제주 도내 학생들에게 유네스코 3관왕 관련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미래의 유네스코 전문가 양성

**IV-2-6. 제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연·문화체험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현장 체험교육을 통한 제주의 가치를 이해하고 도정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연문화 체험 과정 운영

**사업개요**

- 사업량 : 9개 과정, 66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6,000천원
- 주요내용
  - 제주역사문화탐방, 4·3 역사탐방, 돌문화체험하기, 섬속의 섬문화 체험하기
  - 오름탐방, 세계지질공원 찾아가기, 올레길 문화탐방
  - 삼촌에게 듣는 제주자연 이야기, 제주의 목장사와 목축문화 등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2월 : 2018년 도민사회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18년 1월 ~ 12월 :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실시

**기대효과**

- 현장체험 교육을 통하여 제주의 자연과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 마련

**IV-2-7. 도민역량 강화교육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걸맞는 다양한 도민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의 역량 및 소양 함양

사업개요

- 사업량 : 26개 과정, 3,56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 주요내용
  - 역량강화과정 : 퍼실리테이터 기초, 경제알기, 자원봉사이해 등 18개 과정
  - 소양함양과정 : 해설이 있는 미술관여행, 원예힐링, 디지털사진교실, 드론 활용법, 건강등산교실, 여행상식, 관상과 관상학, 제주민요이해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12월 : 2018년 도민사회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18년 1월 ~ 12월 :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실시

기대효과

- 지방자치시대의 주민 역량 및 인문교양 강화로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

**IV-2-8. 교육과 여가가 공존하는 누리터 사업(애월읍)**

사업의 필요성

-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특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지역적 편중 완화를 위한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제23조

사업개요

- 건 명 : (애월읍)교육과 여가가 공존하는 누리터 사업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로 218
- 사업량 : 교육과 여가가 공존하는 누리터 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2,6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2018년 1월~12월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 컨설팅 및 지도 : 2018년 3월~12월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마무리 및 정산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 충족으로 지역간 불균형 완화 및 주민주도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별 삶의 질 향상

IV-2-9. 청년강사를 응원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 경력이 짧은 이유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강사들과 강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강사가 직접 강좌를 개설하면 강사료를 지원
- ※ 사업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 조례」 제13조

사업개요

- 건 명 : 2018 청년강사를 응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대 상 : 도내 청년강사
- 요 건 : 강의실, 수강생 5명 이상 확보
- 지원내용 : 70개 강좌 강사료 지원(강좌 1회당 85천원)
- 프로그램 내용 : 자격증, 취미, 문화, 학습보조, 스포츠 등 모든 분야
- 총사업비 : 60,000천원
- ※ 강좌 제외대상
  - 정치적 목적 및 종교를 위한 교육강좌
  - 특정지역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교육강좌, 학교 정규과정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강좌

향후 추진계획

- 강사공모 홍보 : 2018년 1월
- 강사모집 : 2018년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강좌운영 : 2018년 3월 ~ 11월
- 운영성과 평가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역량이 낮은 청년들에게 경험, 기회, 일 제공으로 사회진입에 대한 부담 해소
-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기회제공

#### IV-2-10. 도민 협치 퍼실리테이터 교육

##### 사업의 필요성

- 각종 융복합적인 도정 현안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도민 스스로 해결책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중재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협치역량 배양 필요

##### 사업개요

- 건 명 : 도민 협치 퍼실리 테이터 교육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3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도민 협치 퍼실리테이터 교육 계획 수립 : 2018년 2월
- 도민 협치 퍼실리테이터 교육과정 운영 : 2018년 3월 ~ 9월

##### 기대효과

- 도민들의 협치 역량 강화로 도정 참여 만족도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도정 발전 기회 마련

#### IV-2-11. 주민역량 강화사업

##### 사업의 필요성

- 마을사업 도전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으로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도모
- 기초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로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사업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11조

##### 사업개요

- 건 명 : 주민역량강화사업
- 대 상 : 제주시 읍·면지역 마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역량강화 대상 마을 선정 및 사업 추진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주민역량 강화 및 특성화를 통한 내실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IV-2-12.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마을만들기를 주도할 역량 있는 마을 리더 및 전문 인력 양성
- 마을 사업의 인식 제고 등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11조

사업개요

- 건 명 :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 대 상 : 읍·면 마을 리더 및 희망주민 등
- 사업내용 :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1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아카데미 과정 수강생 모집 및 기본·심화과정 운영 : 2018년 2월 ~ 11월

기대효과

-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의식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추진

IV-2-13.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민 필요에 의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발굴·지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평생 학습 참여 유도로 평생학습 문화 정착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조

사업개요

- 건 명 :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사업량 : 10개 기관·단체(10개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주요내용 : 시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 강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 : 2018년 2월
-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민제안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자발적 운영으로 창의적인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
-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

---

부  
속

---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주요 계획

### I. 운영 개요

1. 추진과제 구성 체계
2. 계획의 범위 및 주요영역

# 1. 추진과제 구성 체계

대과제	중과제	세부사업내용
I. [유연화] 장애인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① 평생학습 참여 가능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학습지원</li> <li>■ 사회적응(참여) 학습 지원</li> </ul>
	② 평생학습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및 문해교육 지원 확대</li> <li>■ 비정규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보육 지원 확대</li> <li>■ 건강기정지원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li> </ul>
II. [차별화] 학습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①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온라인 서비스망 구축 및 운영</li> <li>■ 4차산업혁명 관련 정보화 교육 확대</li> </ul>
	② 산업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산업 연계 인력양성 사업</li> <li>■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li> </ul>
	③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친화적 평생교육 참여 여건 개선</li> <li>■ 진로체험 및 고용창출 프로그램 제공</li> </ul>
III. [특성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풀뿌리 평생학습	① 지역 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li> <li>■ 평생학습기관(단체)의 특화 및 지역사회 이해 교육</li> </ul>
	②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및 우수학습 모임 성장 지원</li> <li>■ 지역 리더 및 특화인재, 전승 등 양성 프 그램 지원</li> </ul>
IV. [공고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기반 평생학습	① 평생학습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관련 홍보사업 확대</li> <li>■ 평생교육기관(단체)간 협력 사업 활성화</li> </ul>
	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마을)과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li> <li>■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ul>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장애인 대상으로 기반 인프라 구축을 고려해서 세부사업내용을 수정·보완 작성

## 2. 계획의 범위 및 주요 영역

### 2-1. 계획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2018년(1개년 시행계획 중심)

#### 2)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3) 내용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개 교육지원청(제주시, 서귀포시)을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관련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업의 경우, 지역과 연계한 특성을 갖고 있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사업에 한정함
  - 장애인 평생학습 계획은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과 학습 참여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장애인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정보 제공 및 현장지원과 관련하여 유관기관(단체, 보호자 지원 포함)들이 학습 현장에서 그 역할을 긴요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별도 고려가 필요함

### 2-2. 계획의 주요 영역 및 과제

#### 1) 사업 총괄현황

구 분	단위사업(개)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	제주도 교육청	소계
I. [유연화] 장애인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11	6	4	2	23
II. [차별화] 학습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15	2	1	0	18
III. [특성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풀뿌리 평생학습	20	2	1	1	24
IV. [공고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기반 평생학습	7	3	2	0	12
합 계	53	13	8	3	77

### 2) 사업비 총괄현황

구 분	소요예산(백만원)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교육청	소 계
I. [유연화] 장애인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508	128	607	65	1,308
II. 차별화 학습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1,013	3,011	15	-	4,039
III. 특성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풀뿌리 평생학습	1,257	9,246	54	20	10,577
IV. [공고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기반 평생학습	923	136	166	-	1,225
<b>합 계</b>	<b>3,701</b>	<b>12,521</b>	<b>842</b>	<b>85</b>	<b>17,149</b>

### 3) 세부 영역별 과제 현황

구 분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 (천원)	
I. [유연화] 장애인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b>① 평생학습 참여 가능성 확대</b>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2. 시설장애인 예능발표 프로그램 지원 사업	2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3.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120,121
		노인장애인복지과	4.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4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엘린)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사업	5,000
		노인장애인복지과	6. 제21회 제주수어경연대회	2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7. 제주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지원	46,000
		노인장애인복지과	8.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18,000
		노인장애인복지과	9.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62,000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10. 농아인협회 사회적응프로그램 (일반인 수화교실) 참여지원	18,500
		경로장애인지원과	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25,000
		경로장애인지원과	12. 지체장애인 사회학습훈련 지원	12,000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1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501,307
		경로장애인지원과	14.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사업	51,340
		경로장애인지원과	15. 서귀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운영	50,000
	제주도 교육청	동부보건소	16. 장애인체험교실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000
		학교교육과	17. 장애성인 프로그램	55,000
	학교교육과	18.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0	
	<b>② 평생학습 서비스 강화</b>			
	제주특별 자치도	평생교육과	1. 생애주기별, 대상별 평생학습 운영	10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2. 새날도서방 운영	26,500
	제주시	자치행정과	3. 비정규학교 성인문해교육 지원	13,020
		자치행정과	4. 비정규학교(제주장애인야간학교)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49,160
		여성가족과	5. 장애인성폭력피해자 가족치료프로그램	10,000

부서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천 원)	
II. [차별화] 학습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b>①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b>			
	제주특별 자치도	ICT융합담당관	1.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지원(5개소)	110,476
		노인장애인복지과	2. 시각장애인 점역교정 및 서비스제공사업	25,000
		노인장애인복지과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 구입	1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4.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사업	12,000
		노인장애인복지과	5.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운영	247,773
		노인장애인복지과	6.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지원	25,000
		문화정책과	7.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지원사업	40,000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8. 시각장애인 제주점자도서관 운영	46,160
	<b>② 산업 맞춤형 평생교육</b>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1. 안마사 교육사업 운영	9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2.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45,000
		노인장애인복지과	3. 제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함양 연수	3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4.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육 사업 지원	220,640
		노인장애인복지과	5.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5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상담지원	74,100
		노인장애인복지과	7. 지체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20,000
		체육진흥과	8.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사업	13,500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964,343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어울림터, 평화의 마을, 에코소랑)	15,000

구 분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 (천 원)	
III. [특성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풀뿌리 평생학습	<b>① 지역 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b>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1. 도 장애인부모회 운영 지원	42,040
		노인장애인복지과	2. 도 농아인협회 운영 지원	42,040
		노인장애인복지과	3. 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 지원	42,040
		노인장애인복지과	4. 도장애인총연합회 운영 지원	57,400
		노인장애인복지과	5. 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 지원	42,040
		노인장애인복지과	6. 도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지원	42,160
		노인장애인복지과	7.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31,000
		노인장애인복지과	8.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체험 확대사업 지원	5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9.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운영 지원	42,040
		노인장애인복지과	10.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운영 지원	42,040
		노인장애인복지과	11.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운영 지원	42,040
		노인장애인복지과	12. 한국시각장애인협회도지부 운영 지원	42,040
		노인장애인복지과	13.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운영 지원	42,040
		노인장애인복지과	14. 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부 운영 지원	42,040

구 분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 (천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5.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운영 지원	42,160	
		16. 장애인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350,000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17. 장애인 문화예술.여가.체육 등 교류사업	75,800
		경로장애인지원과	18. 장애인단체 체육활동 지원사업	58,200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학교교육과	19. 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 운영지원	20,000
	<b>②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b>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1. 수화언어 개발.보급 및 서비스 제공사업	10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2.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구현사업 지원	30,000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3.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9,232,929
		경로장애인지원과	4. 장애인운전면허취득교육지원	12,700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5.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53,950	

구 분	부서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 (천 원)	
IV. [공고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기반 평생학습	<b>① 평생학습 기반 강화</b>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1.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128,375
		노인장애인복지과	2.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축진단 운영	40,099
		노인장애인복지과	3.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 바우처 운영	14,000
		노인장애인복지과	4.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98,000
		노인장애인복지과	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 지원	43,000
		체육진흥과	6.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588,920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7.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	115,661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8. 장애인 인식개선 및 정보 제공사업	110,800
		경로장애인지원과	9.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55,238
	<b>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b>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문화행사 및 직업재활의 날 행사지원	10,800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2. 장애인 연합 프로그램 지원	10,000
		경로장애인지원과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합 프로그램 지원	10,000

## Ⅱ. 2018년 영역별 추진과제

1. [유연화] 장애인의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2. [차별화] 학습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3. [특성화]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풀뿌리 평생학습
4. [공고화]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평생학습

# 1. [유연화] 장애인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 1. 유연화 장애인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의 의** 장애인의 교육복지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

**방 향**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및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증진

**중 점** 장애 유형별 학습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원, 장애인의 문해 및 학력보완 기회 확대, 장애인의 실질적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연계 지원

**내 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장애인 예능발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전도 초·중·고의 시화전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엘린)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사업, 장애인의 성폭력피해자 가족치료프로그램, 비정규학교 성인장애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효 과** 장애인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유연하게 대응 및 지원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 I-1-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및 가족이 함께 평생교육에 참가함으로써 가족들 간의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토대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제28조의2

#### 사업개요

- 건 명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수행주체 : 공모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단체 및 복지관

#### 향후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 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I-1-2. 시설장애인 예능발표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들에게 공연과 창작의 기회 제공으로 소질과 잠재능력 개발 및 자긍심 고취
- 공연, 전시 등의 어울림의 장을 통하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 사업개요

- 건 명 : 시설장애인 예능발표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참여대상 : 시설장애인 및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1,200여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시행주체 :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사업내용 : 시설장애인 예능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지원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시설장애인 예능발표 및 작품전시회 사업평가 : 2017년 12월
- 2018년 시설장애인 예능발표 및 작품전시회 사업지원 : 2018년 5월 ~ 9월

**기대효과**

- 시설장애인들에게 예능발표, 작품전시 등의 기회제공으로 잠재능력 개발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함께 하는 어울림의 장 마련으로 사회성 향상 도모

**I-1-3.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사업의 필요성**

-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기초학습 증진 교육을 실시 하여 여성장애인 자기계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총사업비 : 120,121천원(국비 84,085 도비 36,036)

**향후 추진계획**

- 사업운영실적의 지속적인 관리 및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만족도 조사) 실시

**기대효과**

- 여성장애인의 자기계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I-1-4.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자폐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을 통해 사회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자폐성장아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 수행주체 : 공모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향후 추진계획

-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 추진

기대효과

- 자폐성 장애인에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능력 향상

**I-1-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엘린)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사업**

사업의 필요성

-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그에 따른 운영비지원으로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시행령 제44조

사업개요

- 건 명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 운영비 지원
- 위 치 : 제주도 은남1길 4(연동)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숙박업, 청소용역업
- 총사업비 : 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직업재활시설 운영평가 및 실적 확인 : 2018년 1월
- 2018년 직원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 2018년 1월 ~ 12월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보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자존감 실현 및 사회통합 기여

### I-1-6. 제21회 제주수어경연대회

#### 사업의 필요성

- 수화언어의 보급과 인식개선을 통하여 농아인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제공으로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 2

#### 사업개요

- 건 명 : 제21회 제주수어경연대회
- 사업량 : 900여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개최시기 : 2018년 9월 ~ 10월 예정)
- 수행주체 :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박춘근)
- 총사업비 : 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수어사용 보편화 및 인식개선을 통한 농아인에 대한 소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기대효과

- 농아인의 화합과 예술의 장을 마련하고, 수화언어의 보급과 인식개선

### I-1-7. 제주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도내 뇌병변장애인들의 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함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뇌병변 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회장 천선자)
- 총사업비 : 46,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뇌병변장애인의 복지증진

기대효과

-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극복 및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I-1-8.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기존 보유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프로그램 장비 등 행사물품 수송을 위한 차량으로,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 및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복지관 프로그램 장비(텐덤사이클 등) 및 행사물품 수송차량 구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000천원
- 수행주체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향후 추진계획

- 이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

기대효과

-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I-1-9.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에 앞서 미리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당사자 스스로의 자존감 상승 및 자립생활 실천의지 고취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사업개요

- 수행주체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고현수)

○ 위 치

구 분	주 소	정원	현원
	2개소	8	3
남성 중증 자립생활체험홈	제주시 금산1길4, 101호(화북1동)	4	2
여성 중증 자립생활체험홈	제주시 천수동로16-1, 101호(일도2동)	4	1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체험홈 운영, 자립생활 기술훈련, 탈시설 프로그램, 체험홈 연수 등

○ 총사업비 : 62,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입소대상자 발굴·확대

기대효과

○ 자립생활 체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I -1-10. 농아인협회 사회적응프로그램(일반인 수화교실) 참여지원**

사업의 필요성

○ 일반인들에 대한 수화교육을 통해 농아인과 일반인 간의 사회통합 기반 마련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농아인협회 제주시지회
- 사업내용 : 청인(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사회적응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보조금 신청접수 및 교부

기대효과

○ 수화 교육을 통한 농아인과 비장애인간의 사회 통합 기반 마련 및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

### I-1-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상생활 및 대인 관계 기법, 사회성 훈련 등 사회 적응력 향상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비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사업량 : 5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I-1-12. 지체장애인 사회학습훈련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지체장애인에게 사회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 사업내용 : 타지역의 장애인 복지체험을 통한 정책제안의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0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3월 사회학습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보조금 신청접수 및 교부

기대효과

- 지체장애인의 사회학습 훈련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도모

I-1-1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행동·놀이, 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바우처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량 : 360명
- 총사업비 : 501,307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계속 지원

I-1-14. 장애 유형별 재활서비스사업

사업의 필요성

- 장애 유형별 재활서비스 사업 지원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리 제공 및 사회 활동 참여율 향상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서귀포시 6개 장애인 단체
- 지원내용 :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1,34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 유형별 재활서비스 사업 지속 추진 및 사회활동 참여율 향상

**I-1-15.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중증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자립생활을 촉진하여 사회참여 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2항, 제8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62-3(서흥동)
- 수행기관 :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성완)
- 지원내용 : 연극·사진·기타·노래·낚시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 문화예술,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속 추진

**I-1-16. 장애인체험교실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증진 사업 추진으로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 「모자보건법」

**사업개요**

- 대 상 : 전 지역주민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속 추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지방정부 주도 방식의 사업 기획 수행

### I-1-17.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장애학생에게 방학동안 다양한 문화체험 및 예체능 활동 지원으로 학부모에게는 사회활동 참여를 증대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의 기회 제공
-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공연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함께 어울려 서로 존중하는 태도와 실천의지 함양

#### 사업개요

- 대상 : 장애학생 학생 40명(제주시 20명, 서귀포시 20명) 및 초·중학교 20개교
- 운영 내용
  - 다양한 문화체험, 특기적성 활동을 통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계절학교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의 악기교육과 합주를 통하여 문화·예술활동 기회 제공(음악캠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비 : 55,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모 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평가 : 2018년 12월

#### 기대효과

- 장애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
-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 문화·예술공연을 통하여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 학생들이 “나도 할 수 있다!” 는 자긍심 향상

### I-1-18.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장애학생 및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사업개요

- 대 상 : 장애학생을 둔 가족(부모, 형제자매)
- 운영 내용
  - 장애학생 및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25회기 운영
  - 장애학생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생 및 중학생 수준별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부모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성격유형별 자녀 바로알기, 자녀 양육 스트레스 대처 방안 등
  - 형제자매 결속 프로그램 운영
  - 장애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학생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공모 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장애학생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 2018년 3월 ~ 12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평가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학생 가족의 삶의 질 향상

**I-2-1. 생애주기별, 대상별 평생학습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장애유형별, 개인수요별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20조의2(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사업개요

- 사업명 :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운영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사업량 :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공모 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전체 100,000천원 중 일부)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 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 : 2018년 2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평가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도모

### I-2-2. 새날도서관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서 대출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 운영으로 장애인의 여가활동 기회 제공 및 정보 활용 접근성 강화로 삶의 질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 2

사업개요

- 건명 : 새날도서관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회장 양용석)
- 총사업비 : 26,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을 위한 도서 무료배달 및 도서 구매대행 서비스 운영 강화

기대효과

- 장애인의 독서문화 확대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으로 복지증진 효과 기대

### I-2-3. 비정규학교 성인문해교육지원

#### 사업의 필요성

-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건 명 :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
- 대 상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3,02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8년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기대효과

- 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생애능력 향상

### I-2-4. 비정규학교(제주장애인야간학교) 중증장애인이동서비스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중증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이동지원을 통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건 명 :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 사 업 량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9,16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8년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기대효과**

- 장애인의 생활범위 확대로 활발한 평생학습 참여와 개인의 궁극적 자립 실현

**I-2-5.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가족치료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장애특성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맞춤형 예방상담과 교육을 제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족 전체 상담과 치료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제17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가족 치료프로그램(개별·집단상담, 예방교육등)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가족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신청 접수 및 지원 : 2018년 1월 ~ 2월

**기대효과**

-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맞는 맞춤형 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 2. [차별화] 학습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 II. 차별화 학습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의의** 장애인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차별화된 평생학습 지원시스템 강화

**방향** 장애인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지역산업과 연계한 평생학습의 확대, 대학의 장애인 친화적 평생교육 지원

**중점** 장애인 정보제공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구축, 지역수요 대응 장애인의 인적 자원개발 및 평생직업교육 기반 강화, 장애인 친화적 교육여건 개선 지원

**내용**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지원, 시각장애인 점역교정 및 서비스제공사업,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 구입,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사업, 신장장애인협회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안마사 교육사업 운영,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장애인 자활 유공자 시상,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선진지 벤치마킹,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육 사업 지원 등

**효과** 장애인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학습형 평생교육의 지원 활성화

## II-1-1.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지원(5개소)

### 사업의 필요성

- 정보화소의 계층인 장애인등에 대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업량 : 5개소(2,50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10,476천원(국비 50%, 도비 50%)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사업공고 및 사업기관 선정 협약체결 : 2018년 2월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실시 : 2018년 3월 ~ 12월

### 기대효과

- 장애인 체감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사회활동 동참 기회 부여
-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제공으로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 II-1-2. 장애인 점역교정 및 서비스제공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시각장애인의 문자생활(점역교정, 점자출판, 소리도서 제작·보급 등)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 등 역량강화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 사업개요

- 건 명 : 시각장애인 점역교정 및 서비스 제공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 수행주체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예홍)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들의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사지원 사업 지속 추진

**기대효과**

- 장애인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

**II-1-3.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 구입**

**사업의 필요성**

- 수요가 많은 음성도서를 추가 구입하여 열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욕구, 지적욕구 충족 등 정보 습득능력 강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사업개요**

- 건 명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 구입 지원
- 위 치 : 제주시 동광로 31, 6층(이도1동)
- 수행기관 : 제주도문화정보접자도서관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이버접자도서관 서비스 향상 및 정보협력 전산망 구축
- 자료의 형태를 디지털화하여 정보화시대에 대응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성도서(CD) 추가 확보로 접자도서관 운영 활성화

**II-1-4.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사업**

**사업의 필요성**

- 정보화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 능력 및 생산적 정보 활용능력 향상 지원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강사로 지원(5명)

복지관명	관장	소재지	강사	운영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윤보철	제주시 516로 3120	1명	사회복지법인춘강 (이동한)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김필수	제주시 광양4길 32	1명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총연합회(부형종)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임태봉	서귀포시 인정오름로24	1명	사회복지법인춘강 (이동한)
제주시각장애인 복지관	양예홍	제주시 아복로 433	1명	사회복지법인삼다 (양예홍)
제주도농아 복지관	문성은	제주시 우령서로 16길 19	1명	사회복지법인농애원 (오원국)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
- 수행주체 :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들의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사지원 사업 지속 추진

기대효과

- 장애인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

II-1-5.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각장애인의 사회·문화·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자립의지 고취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 위 치 : 제주시 동광로 31, 6층(이도1동)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점자명함 및 점자도서 제작, 정보화 교육, 대출·열람서비스, 학습 지원 및 점역센터 운영, 사이버점자도서관 운영 등
- 총사업비 : 247,773천원

**향후 추진계획**

- 시각장애인의 교육·문화·사회활동 지원 및 점자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속 추진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 맞춤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II-1-6.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기존 차량의 노후화 및 시각장애 특성상 정보접근성에 한계가 있고 이동에 제한이 있어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점자도서 보급 및 도서관 이용의 편의 제공 등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 차량구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 수행주체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예홍)

**향후 추진계획**

- 이동도서관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업 추진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도서 및 이용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II-1-7.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시각장애로 인하여 경험의 제약과 각종 활자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 직업과 관련 서적 제작 및 보급
- 시각장애인 전문도서 보급으로 장애인 교육과 재활 및 일생생활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지원사업
- 위 치 : 제주시 동광로 31(제주문화정보점자도서관)
- 사업량 : 시각장애인용 점자·음성 도서 40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주문화정보점자도서관
  - 점자(점역)출력 : 206,213권(12,106부)
- 제주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 대체도서 119종, 8,163권 제작 보급

기대효과

- 편성사유로 「도서관법」 제44조에 따라 지식·정보의 격차 해소를 위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제작 및 발간사업 예산편성 및 효율적 집행

## II-1-8. 시각장애인 제주점자도서관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대출 및 점자번역출력, 점자 기록물 관리 등으로 정보욕구 충족 및 사회참여 확대 증진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시지회
- 사업내용 : 점자도서대출, 점자번역 등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6,16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월, 6월 시각장애인에게 최상의 정보제공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의 정보욕구 충족 및 사회활동 활성화

## II-2-1. 안마사 교육사업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시각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여 안마사 직종분야에서 직업인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인으로 양성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

### 사업개요

- 건 명 : 안마사 교육운영 사업
- 위 치 : 제주시 서사로 149-1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90,000천원
- 수행주체 : (사)대한안마사협회제주지부(지부장 김두홍)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도 입소생 모집

### 기대효과

- 안마업의 인식전환 및 치료안마의 비전 제시,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정적 소득 유지 및 자립생활 영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II-2-2.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과 단체의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대응방안과 자립능력 배양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공모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 총사업비 : 4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사회적응력 강화 및 종사자의 역량을 높힐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장애인 및 단체종사자의 역량교육을 통해 자립능력 배양 및 역량강화

**II-2-3. 제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함양 연수**

**사업의 필요성**

- 외국의 선진화된 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전문성 향상 및 직업재활시설의 발전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 사 업 량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선진지 해외연수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시행주체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사업내용 : 우수 선진시설 견학 등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선진시설 견학계획 수립 및 교부금 교부 : 2017년 3월

**기대효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양양 및 직업재활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임금향상 도모

**II-2-4.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육 사업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장애아동의 언어·심리 및 특수 조기교육을 원하고 있으나 치료교사 및 공간의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대기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사 지원(10명)
  -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4명),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2명),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2명),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1명), 제주도농아복지관(1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20,640천원
- 수행주체 : 장애인복지관(5개소)

향후 추진계획

- 장애아동의 문제점 완화 및 장애 부모의 일상생활 보장 등을 위하여 지속 추진

기대효과

- 정서·행동·언어 등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동의 자기표현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II-2-5.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장애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단체에서 직장체험 연수의 기회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연수기관 :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사업량 : 동계 및 하계방학 취업연수(연 2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학생 2018년 동계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수립

기대효과

- 일반인보다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학생들에게 직업탐색 및 취업현장 체험기회 제공
- 취업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 육성 도모

II-2-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상담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사후관리 직무조정 혹은 컨설팅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자립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상담지원
- 위 치 : 탐라장애인복지관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부형중)
- 사업내용

사업명	내용	비고
직업상담	방문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신규 및 재 상담	
사업체 개발 및 관리	기업체 정보수집, 취업 가능한 업체 홍보, 사업체 정보분석 및 관리	
취업알선	구직자 취업가능성 탐색 및 취업 전 교육,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지원	
취업 후 적응지도	개별 직업 능력, 건강, 근로 상 문제점 등 근로자 점검 및 적응지도	
교육사업	장애인 근로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근로기준법 교육 실시	
홍보사업	도내 관공서 및 사업체에 대해 안내문, 리플렛 배포를 통한 홍보	
네트워크사업	도내 5개 직업재활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직업재활사업 전개	

- 총사업비 : 74,1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직업상담, 사업체 개발 및 관리 : 연중
- 직업재활 네트워크 사업 평가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

기대효과

-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맞춤 상담을 통한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도
- 업체 홍보 및 개발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개선

II-2-7. 지체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사업의 필요성

- 19년 동안 전국 지체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을 개최하여 장애여성의 권익과 인권, 문화·예술교류 증진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지체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 위 치 : 탐라장애인복지관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수행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부형중)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 지체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추진으로 여성장애인 지도자 양성

기대효과

- 여성장애인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재조명하여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II-2-8.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신설에 따라 기존 지도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유예기간(2018년까지)을 설정함
- 연 1회 실시하는 필기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권역별 연수기관으로 선정된 4개 대학교(용인대, 원광대, 대구대, 백석대)에서 90시간의 연수교육과 실기고사를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함
- 이에 따라 본회의 서비스팀장 및 지도자들은 도내에서 연수교육이 불가함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장애인체육 환경 및 지도대상자의 맞춤형지도에 따라

다양한 지도방법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지도자 역량강화 요구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조례」 제23조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 위 치 : 제주시 복지로 3길 1-10
- 사 업 량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3,5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2월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계획 수립
- 2018년 11월(예정) : 백석대학교 교육 실시

기대효과

-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양질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 및 기량향상에 기여
- 장애인 생활체육 인구의 확대 및 활성화 도모

## II-2-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 (보호 고용,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사 업 량 : 6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964,343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취업훈련 및 취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속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 취업훈련 및 취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 및 자활·자립을 도모

II-2-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어울림터, 평화의 마을, 에코소랑)

사업의 필요성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재활도모를 위한 서비스 추진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 촉진조례」 제7조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에코소랑, 평화의 마을, 어울림터(3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직업재활시설 3개소 100명의 근로·훈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3. [특성화]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풀뿌리 평생학습

#### III. 특성화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풀뿌리 평생학습



**의의** 지역과 학습생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시스템의 조기 안착 및 확대

**방향** 활발한 평생학습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 평생학습의 미래가치 창출 지원

**중점**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관련 기관(단체)특화 및 지역사회 이해 교육, 장애인의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지역 특화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내용** 도 장애인부모회 운영 지원, 도 농아인협회 운영 지원, 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 지원,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전국지체장애인대회참가 지원, 제20회 영·호남, 제주지역 농아인 지도자대회 참가, 신장장애인들의 지역 문화역사 탐방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청각장애인의 지역문화역사탐방 지원,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교육지원 등

**효과**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을 통한 생활융합 서비스의 창출, 평생학습 활성화로 장애인의 역량 강화

### Ⅲ-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운영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단체의 장애인 복지사업을 통한 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사업개요

- 건 명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운영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2,040천원
- 수행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박영재)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 지원

#### 기대효과

-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도모

### Ⅲ-1-2. 제주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 운영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제주지역 농아인(청각장애인)의 권익보호를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농아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단체 활동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사업개요

- 건 명 :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운영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2,040천원
- 수행주체 :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박춘근)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도모

Ⅲ-1-3. 제주특별자치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신체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의 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단체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사)제주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2,040천원
- 수행주체 : (사)제주신체장애인복지회(회장 한정효)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도모

Ⅲ-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조정역할 및 사회통합 등 장애인단체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운영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7,400천원
- 수행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부형중)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도모

**Ⅲ-1-5. 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지적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적발달 장애인 및 가족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2,040천원
- 수행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문상익)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도모

**Ⅲ-1-6.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지체장애인들의 자립 도모 등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2,160천원
- 수행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부형중)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도모

### Ⅲ-1-7.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장애 당사자의 예술적 잠재력과 소통능력을 인큐베이팅하고, 문화예술과 접목한 발달장애인의 대안적 교육시스템 도입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7조

사업개요

- 건 명 :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1,000천원
- 수행주체 : 공모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단체 및 복지관

향후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의 예술교육을 통한 소통 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지속 추진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자존감 향상 및 사회 일원으로서의 성장 도모

### Ⅲ-1-8.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체험 확대사업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문화·예술 체험 및 참여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 환경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및 제81조(비용보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체험 확대 사업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수행주체 : 공모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 향후 추진계획

-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의 소통 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 등을 위하여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보장 기회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존감 고취

### Ⅲ-1-9.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운영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도내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뇌병변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사업개요

- 건 명 :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운영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2,040천원(자체재원 100%)
- 수행주체 :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회장 천선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도모

Ⅲ-1-10.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장애인의 자기계발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장애인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운영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2,040천원
- 수행주체 :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회장 양용석)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도모

Ⅲ-1-11.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도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운영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2,040천원
- 수행주체 :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도모

**Ⅲ-1-12. 한국시각장애인협회제주도지부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제주도지부 운영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2,040천원
- 수행주체 :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제주도지부(지부장 양예홍)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도모

**Ⅲ-1-13.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신장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신장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운영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2,040천원
- 수행주체 :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회장 김우찬)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도모

Ⅲ-1-14. 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부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 사업 등을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 필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부 운영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2,040천원
- 수행주체 :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부(지부장 김부찬)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도모

### Ⅲ-1-15.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운영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척수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필요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사업개요

- 건 명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운영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2,160천원
- 수행주체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양문숙)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 지원

#### 기대효과

-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도모

### Ⅲ-1-16. 장애인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향유 기회가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실정임
- 장애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장려 및 문화적 권리 증진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5조의 2, 「문화기본법」 제4조~제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7조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1식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350,000천원
- 주 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향후 추진계획

- 2017 사업 결과 공유 워크숍 개최 : 12월 중
- 2018 운영계획 수립, 공모 및 사업 선정 : 2018년 1월 ~ 2월
- 사업 추진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장애유형별 문화예술교육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험 및 향유 욕구 해소

### Ⅲ-1-17. 장애인 문화예술, 여가, 체육 등 교류사업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율 향상
- 비장애인과 수화 및 농문화 교류를 통하여 수화 보급률 향상에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2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서귀포시 6개 장애인 단체
- 지원내용 :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 교류사업 지원
- 사업량 : 6개 분야 장애인 문화·예술·여가·체육 등 교류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5,8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문화·예술·여가·체육 등 교육사업 지원

### Ⅲ-1-18. 장애인단체 체육활동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단체 주관 행사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단순 복지나 고용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회의 한 주체로서 인식 확대 및 사회활동 참여율 향상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2

####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서귀포시 6개 장애인 단체
- 지원내용 : 장애인단체주관 체육 행사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8,2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단체 체육활동 사업비 지원 추진

### Ⅲ-1-19. 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 운영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장애학생에게 주말동안 다양한 문화체험 및 예체능 활동 지원으로 학부모에게는 사회활동 참여를 증대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의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대상: 장애학생 50명(제주시 30명, 서귀포시 20명)
- 운영 내용
  - 다양한 문화체험, 특기적성 활동을 통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주말학교 프로그램 운영
  - 장애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공모 계획 수립 : 2018년 1월

-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 2018년 3월 ~ 12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평가 : 2018년 12월

기대효과

- 장애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

### Ⅲ-2-1. 수화언어 개발·보급 및 서비스 제공사업

사업의 필요성

- 수화언어 개발·보급 및 서비스제공으로 수어 사용과 수어 표준화 및 신조 수어의 신속하고 정확한 보급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장애로 받는 고통을 최소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수화언어 개발·보급 및 서비스 제공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 수행주체 :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

향후 추진계획

- 수화개발·보급 및 서비스 제공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 추진

기대효과

-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이용 용이 등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Ⅲ-2-2.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구현사업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활동과 참여를 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사업(교육)과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삶의 질 제고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구현사업
- 위 치 : 수행기관 공모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공모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단체 및 복지관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 시행자 선정 공모 절차 진행 후 사업비 교부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Ⅲ-2-3.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사업의 필요성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3급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를 신청하여 활동지원등급(1~4급)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총사업비 : 9,232,929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홍보 및 지속 추진

기대효과

- 활동지원 서비스 추진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 Ⅲ-2-4. 장애인운전면허취득교육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취업 등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정도별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제 공동)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취득 희망자
  - ※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및 생계·의료수급자 중 5~6급 지체·뇌병변·청각 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로 제외  
( ' 16. 07. 01. 시행)
- 사업내용 :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1·2종 보통 500천원, 대형 650천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7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운전면허 취득한 장애인에게 교육비 수시 지원

#### 기대효과

-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Ⅲ-2-5.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청각·언어장애인 자막입력 영상물 보급 및 정보화 교육, 수화교육을 통하여 자체 역량 강화
-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및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능력개발 및 사회적응 유도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 2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서귀포시 6개 장애인 단체
- 지원내용 :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3,95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역량강화사업 지원 추진

## 4. [공고화]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평생학습

### IV. 공고화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평생학습



**의의** 장애인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평생학습 체계구축

**방향** 상생지향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개선 및 투자에 따른 체계적 관리 실시

**중점** 홍보사업 확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기관(단체) 협력사업, 지역(마을)과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홍보물 제작,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제주지역 노인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문화행사 및 직업재활의 날 행사지원, 장애인 연합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합 프로그램 지원 등

**효과** 상생·협력기반의 장애인 지원거버넌스 및 평생교육 투자 확대 제도화 기반 추진

#### IV-1-1.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민의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최소화하고 취약·소외계층들에게 양질의 재활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 재활 의료서비스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실현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위 치 : 서귀포시 동문로 1(구 서귀여중)
- 사업내용 : 조기사회복귀프로그램, 방문재활지원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장애아동재활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8,375천원(국비 102,700, 도비 25,675)
-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향후 추진계획

- 입원환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조기사회복귀프로그램의 공급
- 권역을 포괄하는 재활의료교육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비장애인, 지역주민을 위한 재활인식개선 사업 실시
- 미충족 재활영역의 소아 공공재활사업 원내 실시

##### 기대효과

-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단축 및 조기사회복귀 도모, 권역내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의 2차 장애 발생 예방, 재활의료 사각지대 감소

#### IV-1-2.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편의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사업개요

- 사업명 :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축진단 운영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홍보
- 시행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 총사업비 : 40,099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촉구 및 확대 위해 시민축진단 운영사업 지원

기대효과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및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 IV-1-3.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 특수시책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의 신청, 이용, 비용지급, 정산 등을 전자화하여 사회서비스 운영 효율화 및 행정시의 행정업무 처리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사업개요

- 사업량 : 700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사회보장정보원
- 총사업비 : 14,000천원
- 사업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사업의 신청, 이용, 비용지급, 정산 등 전자바우처 운영에 따른 위탁업무비
- \* 사회보장정보원 시도추가지원사업 인력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예탁금 규모, 이용자 수 증감비율에 따라 위탁업무비 배분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전자바우처 업무위탁 체결

기대효과

-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업무 효율화 도모

IV-1-4.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장애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전환하는 시기에 직업재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애청소년의 자립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0조의2(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운영
- 사 업 량 : 1개소(도 위탁)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9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수탁협약 체결 : 2017년 11월 ~

기대효과

- 적절한 진로 및 취업 지도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 제공과 장애복지 증진

IV-1-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읍·면·동 단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 2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수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고관용)
- 총사업비 : 43,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자원 활용 및 원활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 사업추진

**기대효과**

-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효과 기대

**IV-1-6.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체육의 확산에 기여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배치를 통한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 여건 조성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조례」 제23조

**사업개요**

- 단 체 명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3길 1-10, 3F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88,92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특수학급에 지도자 배치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배치를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지도

**기대효과**

- 재가 및 중증장애인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체육서비스제공
-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 체육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 제공

#### IV-1-7.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실태를 전수조사 (5년주기)하여 정책반영 및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 접근성 강화 도모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

##### 사업개요

- 사업량 : 제주시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대상 2,916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15,661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원 교육 및 전수조사 실시

##### 기대효과

-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이용접근 용이

#### IV-1-8. 장애인 인식개선 및 정보 제공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지역사회 조성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민원상담, 각종 정보제공 등 민원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5조(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 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2

#####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서귀포시 6개 장애인 단체
- 지원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비, 장애인 종합민원실 등 운영비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90,8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및 정보제공사업 지속 추진

**IV-1-9.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서귀포시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1,418개소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5,238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원 교육 및 전수조사 실시

**IV-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문화행사 및 직업재활의 날 행사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간 문화체험 행사 통해 시설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립의지를 고취하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 도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사업개요**

- 건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문화행사 및 직업재활의 날 행사지원
- 사업량 : 근로장애인 문화행사 및 직업재활의 날 행사
- 사업기간 : 2018년 9월 ~ 12월
- 시행주체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사업내용 : 근로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행사 운영 및 생산품 전시
- 총사업비 : 10,8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사업계획 수립 및 행사 추진 : 2018년 3월 ~ 12월

**기대효과**

-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유대 강화 및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 개선

**IV-2-2. 장애인 연합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이 생활체육을 통하여 체력 및 삶의 활력 증진 도모
- 여러 장애 유형간의 대회 활동을 통한 교류 활성화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장애인 연합 체육 프로그램
- 사업량 : 장애인 연합 체육 프로그램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7월 사업자 공모
- 2018년 8월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기대효과**

- 장애인들의 체력 및 삶의 활력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

**IV-2-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합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 알찬서비스 기회 제공 및 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친밀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비 지원
- ※ 사업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3개소 연합프로그램
- 사업량 : 연합 프로그램 1식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3월 교부내시 및 교부

기대효과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연합 행사 지원을 통한 시설 간 교류 활성화

**【부록 2】**

**관련 법령**

<참고 1> 평생교육법

<참고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참고 3>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참고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참고 1>

## 평생교육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60호, 2016.5.29,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5조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5. 29>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일 : 2017.5.30.]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29.>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7.5.30.]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 2017.5.30.]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 2017.5.30.]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12.30>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 9의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3.12.30]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중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5.29.>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 2014. 7. 1] 제23조

##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6.5.29.]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삭제 <2013. 5. 22>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7.5.30.] 제26조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5.8>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12.30>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 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한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14.1.28>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 제8장 보 칙

**제42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 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 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제42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27.]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6.5.29>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제목개정 2013.5.22]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2016.2.3>

**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5.3.27.]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5.3.27, 2016.2.3>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1의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부 칙 <법률 제8676호, 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제5항과 제34조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제5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2조제4항을 적용한다.

**제3조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도교육감의 평생교육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8호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부터 수행하여 온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지정·운영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를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데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조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31조제4항에 따라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과정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전환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7조 (설립준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 당시의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권리·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권리·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과 관련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권리·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의 직원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원하는 때에는 종전의 소속 기관에서 퇴직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신규 임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11조 (사회교육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른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본다.

**제13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각종학교를"을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로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실기교사란 제1호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2>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 칙 <법률 제9641호, 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법률 제10915호, 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 칙 <법률 제11770호, 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교부·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2130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2339호, 2014.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3228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3248호, 2015.3.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945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법률 제14160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참고 2>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7.5.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50호, 2017.5.1,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
3. 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사업
5. 도민 취·창업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향상교육사업
6. 도민의 소양개발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인문교양교육사업
7. 도민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사업
8. 도민의 문화예술적 창의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9.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 제10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운영을 위해 개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 평생학습관의 방역, 시설공사 등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평생학습관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대하여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사용)**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서비스)**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이하 “보육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대상 영유아를 인도 받음으로써 허가 통보에 같음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보육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장 문해 및 인성교육

**제15조(문해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국적·성별·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저학력자의 문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문해교육 교원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의 문자해독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프로그램 사업
2. 문해행사 개최 사업
3. 문해교육시설의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제16조(문해교육센터)**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9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따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인성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인성을 바로 세우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사업
2. 인성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성교육정책 등에 관한 정책발굴사업

② 도지사는 인성교육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인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장 보 칙

**제18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19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으로부터 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3. 여성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6.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료는 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교육 수강료는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반환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요건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850호, 2017.5.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읍·면에 설치된 행복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센터로 본다.
-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

<별표 1>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제1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제주시평생학습관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건입동 533번지)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 (서귀동 321-10번지)	

<별표 2>

**보육위탁료(제14조제4항 관련)**

보육위탁료

구 분	금 액	비 고
2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5,000원	
4시간 초과 8시간(1일) 이내의 보육서비스	12,000원	

※ 적용기준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간식비, 기저귀대 등은 실비 수준으로 보육 위탁료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3>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9조제2항 관련)**

□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금 액	비 고
강 당	교육행사, 공연, 발표 등	2시간 이내	25,000	
강의실 등	회의, 교육, 세미나 등	2시간 이내	15,000	

※ 2시간 초과 시 매 1시간마다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

1. 공연 등의 준비시간, 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2.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3.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교육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교육 과정별	1명 (1개월)	10,000	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b>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b>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시설구분	
참가예상인원		사 용 자	
면 제 사 유		사 용 료	
<p>「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p> <p>  년          월          일</p> <p>  신청인 주소</p> <p>  성명  (인)</p> <p>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p>			

----- (절취선) -----  
-

<b>사 용 허 가 서</b>			
사 용 기 간		시설구분	
사 용 목 적		사 용 자	
<p>「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p> <p>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b></p>			

<참고 3>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1.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42호, 2017.11.15,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평생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장학금에 관한 사업과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프로그램 개발·연구·조사 및 평가
5. 장애인·이주민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사업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자금의 구분)** ① 진흥원의 장학사업을 위한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운용한다.

1. 국제화장학계정
2. 인재육성장학계정
3. 소암장학계정

② 진흥원의 평생교육사업을 위한 계정은 평생교육사업계정으로 운용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중복지원의 방지)** ①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결과 다른 장학지원금과 합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대학생 및 대학원생만 해당한다)에는 지원받은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반환 기준 및 절차 등은 진흥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장학생의 선발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 대상은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학생 선발 기준 등은 진흥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진흥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5.]

**제12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11.15.>]

부 칙 <제1942호, 2017.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중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4>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16.6.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31호, 2016.6.2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 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631호, 2016.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구진 및 참여기관]

<b>총괄관리</b>	이 안 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b>연구책임</b>	홍 정 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략기획부장
<b>제주특별 자치도</b>	양 원 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장
	이 성 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담당 사무관
	현 성 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담당 주무관
<b>제주시</b>	강 승 범	제주시 자치행정과장
	홍 은 영	제주시 자치행정과 평생학습담당
<b>서귀포시</b>	이 연 수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장
	현 미 희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평생학습담당
<b>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b>	윤 태 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장 안 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 사무관
<b>연구보조</b>	김 동 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략기획부

---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

---

**발행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발행일** 2018년 4월 27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과)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연동)  
Tel) 064-710-3821 Fax) 064-710-7439  
Home Page : [www.jeju.go.kr](http://www.jeju.go.kr)

---